

#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내 마음건강 확인하고 동료들과 커피 한 잔!  
참여율이 가장 높은 기관에는 커피차가 찾아갑니다!

2024. 09. 23.(월) ~ 10. 20.(일)

**검사내용** 교정공무원의 마음건강 및 마음자원 확인  
※ 교정 공무원 정신건강 평가척도-II (MHA-CO-II)

**소요시간** 약 15분 (총 80문항)

**참여방법**



**온라인(모바일/웹) 참여**

- 1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로 접속하여 참여
- 2 <http://eap.co.kr/Gateway/Default.aspx?bcode=kcs> PC 이용 시, 위 URL 입력 후 접속하여 참여



※ 검사완료 후 결과 확인이 바로 가능한 개인별보고서 제공

▲ QR 코드

**참여혜택**



**커피쿠폰**  
(총 1,000명)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증정



**커피차가 간다!**  
(2개소)

참여율이 가장 높은 2개 기관 선정, 커피차 이벤트 진행

**문의** ☎ 02-6952-2720, (주)휴노 운영담당자

※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검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성별 등의 기본 인적 사항과 응답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기관 내 스트레스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분석 용도로만 사용되며,  
휴대폰 번호는 커피쿠폰 발송 후 파기됩니다.

ORRECTIONS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교정 논문**

교도소 수용자의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 사회적지지로 조절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교정 리포트**

교정공무원의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와 동료관계의 매개효과

**교정 백과**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관련 딜레마와 시사점

10

Vol.581. 2024. OCTOBER

## COVER STORY

10월 28일은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재소자를 처벌한다는 관점보다는 재소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길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관점이 중요해지면서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도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월간 <교정>은 지금처럼 늘 교정 관련 종사자분들의 곁에 있겠습니다.



### 04 역사와 오늘

100년 역사를 넘어 교정의 혁신적 미래로  
대구교도소

### 10 교정의 공간

의료 처우에 진심과 기술을 더하다  
대구교도소 의료과

### 14 외부 칼럼

번아웃 직전 마음의 경고  
'토스트아웃'



### 16 교정 포커스

전근대 한국형형사(5·마지막회)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 50 교정 논문

교도소 수용자의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 사회적지지로 조절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신성광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 교사

### 교정 리포트

72 교정공무원의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와 동료관계의 매개효과  
김슬기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료

### 98 칼럼

기록의 의미  
정미리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위



### 102 교정 판례

코로나19 국가배상 판례 연구  
김태환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공익법무관

### 116 교정 백과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관련  
딜레마와 시사점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136 교정 NEWS

### 145 모범 공무원

### 146 독자마당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4년 10월 15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http://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http://www.youtube.com/@kcs_TV)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http://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 100년 역사를 넘어 교정의 혁신적 미래로

## 대구교도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곳곳하게 교정교화의 역사를 이어 온 대구교도소는 2023년 11월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며 교정의 혁신적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초가을을 맞이한 대구교도소는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첨단 기술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이끄는 선진 교정 시스템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 교정 행정 효율성을 높인 첨단 시스템

대구교도소를 두루 살펴보면 교정 행정의 미래를 암시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2024년 4월 교정시설 최초로 도입한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현재 대다수 교정시설은 지문 인식 출입 시스템을 활용 중인데, 때때로 출입 시간이 늘어나고 긴급 출동 시 대응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구교도소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인식률을 자랑하는 안면인식 출입 시스템을 들었다. 실제로 직원이 출입을 위해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자, 인식과 통문 개방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신축 이전으로 부지가 2배 이상 커진 만큼 기동순찰팀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도 도입됐다. 바로 전동휠 기동장비다.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한결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전동휠 기동장비 덕분에 기동순찰팀은 긴급 현장에 더욱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동하는 데 필요한 힘을 아낌으로써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부가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게 기동순찰팀의 설명이다.

### 진일보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대구교도소

대구교도소는 1908년 대구감옥으로 개칭한 뒤 1961년 대구교도소로 기관명을 변경했으며, 1971년 달성군 화원읍 이전 후 5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 이후 도시 확장에 따라 인근 지역이 개발되고 시설이 노후화되자 신축 이전을 결정했으며, 2023년 11월 달성군 하빈면에 새롭게 터를 잡았다. 신축된 대구교도소는 기존 대비 2배 이상 커진 8만여 평의 드넓은 부지를 자랑하며, 이에 따라 수용 거실 수와 독거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수용자 처우의 질을 한층 끌어올렸다.

대구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도시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대구교도소에는 신속 정확한 의료 대응이 필요한 수용자가 다수 머물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가 생활하는 노인 수용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 수용자의 생활 편의와 낙상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복도, 거실 내 화장실 등에 안전바를 설치했다. 아울러 건강실버제조, 미술치료 등 노인 수용자 맞춤형 처우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시행 중이다.



### 모두에게 도움 되는 선진적 수용자 처우

대구교도소는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수용자의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자치수용동을 운영 중이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일과 후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수용자들은 자유롭게 자기계발, 취미생활을 함으로써 출소 후를 대비함과 동시에 자신감과 자립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한편 자치수용동 운영은 교정 질서 확립에도 도움을 준다. 성실한 생활을 통해 모범 수용자로 분류되면 자치수용 처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처우 향상을 위해 혈액투석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대구교도소 수용자 처우의 자랑거리다. 현재 다수의 수용자들이 대구교도소에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혈액투석실 운영에 따라 대구교도소 직원들은 수용자가 외부 진료기관에 방문해 혈액 투석을 받을 때 발생하는 계호 업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경감된 업무 부담은 여타 업무 역량 향상과 직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 지역사회와의 미래 지향적 동행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는 이제 교정기관의 필수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대구교도소는 이 방면에서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정문의 좌우 공터를 활용해 조성한 공원과 운동장, 정문 안쪽의 연무관과 부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민 복지 향상과 교정기관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단자 직원들이 사범이 되어 지역민들에게 유도, 주짓수, 태권도를 가르치는 무도교실도 주 1~2회씩 꾸준히 운영하며 직원과 주민의 실질적 친밀감 향상도 도모한다. 또한 지역 특산품인 참외와 토마토를 저렴하게 판매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우수 먹거리 보급에 앞장서는 직거래 장터 운영, 다양한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대구희망지킴이 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대구 소재 교정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24년 5월 개청식을 개최해 신축 이전을 널리 알린 대구교도소는 여전히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교도작업 개방작업장과 대체복무 생활관의 성공적 신축에 힘쓰고 있으며, 직원 및 수용자 처우 개선과 시설 보완에도 꾸준히 나설 계획이다. 교정의 미래를 향한 대구교도소의 힘찬 발걸음은 현재진행형이다.





## 의료 처우에 진심과 기술을 더하다

### 대구교도소 의료과

수십 명이 수천 명의 건강을 돌봐야 하다 보니, 교도소 의료과의 업무는 많은 노고와 헌신을 필요로 한다. 이토록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음에도 대구교도소 의료과 직원들은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아픈 수용자를 돌보고 있으며, 의료 처우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첨단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 강한 사명감으로 사수하는 수용자 건강

2023년 11월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한 대구교도소는 한층 커진 규모에 따라 수용자가 함께 늘어났으며, 이제는 명실공히 대형 교정기관으로 거듭났다. 충분히 자랑스러운 변화지만, 한편으로는 수용자 처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 안에는 의료 처우도 포함돼 있다.

노형균 과장을 포함한 22명의 직원이 소속된 의료과는 2,700명을 넘어선 대구교도소 수용자의 건강을 두루 돌보고 있다. 소수의 직원이 수많은 수용자를

진료하기에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대구교도소 의료 처우와 진료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야 말겠다는 사명감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노형균 과장의 이야기다.

“대구교도소는 노인 수용자가 많고, 다른 지방 대비 충실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구에 있다 보니 만성질환 수용자 수도 타 교정기관에 비해 많습니다. 수용자 투약률도 매우 높은 편인데요. 이에 따라 의료과는 수용자 투약 관리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지런한 발품**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어 몸속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시키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은 반드시 혈액 투석을 시행해야 한다. 보통 일주일에 2~3회 혈액 투석을 진행하는데, 교정기관 내에 혈액투석실이 없다면 외부 기관에 방문해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 이는 몸이 안 좋은 수용자와 해당 수용자를 케어해야 하는 직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교정본부는 전국 일부의 교정기관에 혈액투석실을 마련했다. 대구교도소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부임한 노형균 과장은 보통 공중보건 의가 담당하는 순회진료를 직접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가 굳이 발품을 파는 이유는 분명하다.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과장이 직접 수용자들을 찾아다녀야 대구교도소 수용자 전체의 건강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과의 모든 직원이 적극적으로

수용자들에게 다가섭니다. 부임한 지 세 달이 채 되지 않은 저는 그 헌신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따름이죠. 이 자리를 빌려 뜨거운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수용자들을 돌보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적극적 업무 수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다**

대구교도소 의료과 직원들의 진심 어린 노고는 훈훈한 미담을 연이어 만들어 내고 있다. 작년 한 수용자의 아버지가 간경화 말기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수용자가 간을 기증하겠다고 나섰다.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은 사안이었지만, 의료과 직원들은 아버지를 향한 수용자의 효심을 외면하지 않았다. 수용자와 함께 수술이 이뤄질 서울과 대구를 여러 차례 오가며 각종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나아가 간 이식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몇 달 전 심정지 상태의 수용자를 살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수용자가 심장이 멈춘 상태로 발견됐는데,

우리 과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골든타임을 사수했습니다. 덕분에 응급실로 이송된 해당 수용자는 극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지난 8월에는 직원 5명이 이 공로를 인정받아 하트 세이버로 선정됐는데요. 충분히 당황스러울 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환자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직원들 덕분에 우리 과를 향한 수용자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졌다고 봅니다.”

**남다른 전문성으로 만들어 갈 ‘첨단 의료 현장’**

현재 대구교도소 의료과는 예정돼 있는 전 수용자 대상 외부 기관 건강검진,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등 주요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을 시 병이 교도소 전체로 번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음압수용동을 구축하려 한다.

“제가 부임하던 시점에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을 고민하던 중 우리 소가 음압기 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음압수용동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용자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더 건강한 대구교도소를 만들겠습니다.”  
노형균 과장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동시에 대학교 전자공학부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쳤던 의료 인공지능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그는 이런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당뇨망막병증을 막는 인공지능 판독기, 당뇨병 수용자들을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거실 내 TV를 활용한 정신질환 수용자용 음성 상담 챗봇 등 다양한 구상을 여건이 되는 대로 실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를 필두로 한 대구교도소 의료과가 앞으로 만들어 갈 ‘첨단 의료 현장’이 사뭇 기대된다.



**Interview** 의료과 노형균 과장



**“의료 처우는 또 하나의 교정교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용자 교정교화와 의료 처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의료 처우는 교정교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몸이 아픈 수용자는 교정교화하기가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제대로 된 의료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자체로 교정교화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의료 처우를 통해 교정교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픈 수용자와 마주합시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번아웃 직전 마음의 경고 '토스트아웃'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는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꽤 많다. 이는 누구나 흔하게 느끼는 증상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번아웃 이전 단계인 '토스트아웃' 증상일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글 송유진 문화칼럼리스트



## 같은 말정도 속은 지쳐 있는 상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토스트아웃(toast-out)'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나 토스트아웃 왔어!"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토스트아웃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심각한 피로와 무기력에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토스트를 오랜 시간 구워 새까맣게 타기 직전 속까지 노릇하게 구워진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지만, 완전히 타지는 않은 조금 지친 상태를 말한다.

토스트아웃은 '번아웃(burn-out)'에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번아웃에 대해 알아야 한다. 번아웃 증후군, 일명 번아웃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무기력증, 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증상을 의미한다. 번아웃은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이므로 무엇을 하더라도 흥미와 의욕을 잃고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번아웃을 질병은 아니지만 직업 관련 증상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주목하기도 했다. 이처럼 번아웃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과 긴 회복 시간이 필요하지만, 토스트아웃은 아직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기 전 단계이므로 얼마간의 휴식과 에너지원 충족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SNS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변형 밈

최근 2030 직장인들 사이에서 토스트아웃이 이슈가 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다양한 토스트아웃 변형 밈이 유행하고 있다. '버터토스트아웃'은 줄음이 물려와 낮잠

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로 버터가 녹아내리듯 몸과 정신이 녹아내릴 것 같은 피로감을 표현하는 증상, '양상추토스트아웃'은 체력이 떨어져 흐물흐물해진 상태로 마치 시들어버린 양상추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어 더 이상 활기를 찾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도 잔내 나는 하루를 보내 디톡스가 필요한 상태로 마치 소금에 절여진 햄처럼 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햄토스트아웃', 밤샘 업무나 학업에 몰두한 후 결국 모든 것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로 뇌에 과부하가 걸려 이틀 낯이면 다 잊어버리는 증상을 의미하는 '공갈빵아웃' 등이 있다.

## 젊은 세대의 '갓생'에서 비롯된 토스트아웃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9~34세 청년이 속한 약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번아웃을 겪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33.9%에 달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성과주의에 지친 젊은 이들은 쉽게 번아웃과 토스트아웃 상태가 된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인해 운동, 독서, 여행, 공부, 요리 등에 몰두하며 자신의 토스트아웃 상태를 극복하려고 한다.

젊은 세대의 시대적 트렌드인 '갓생(God生)', 즉 신 같은 존재처럼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사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토스트아웃을 해결해 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높은 상태라고 생각되면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활동으로 극복하려다가 거기서도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토스트아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토스트아웃 상태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의욕이 없더라도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현실을 살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더라도 내면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이므로 번아웃 상태가 되기 전에 토스트아웃의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들 또한 토스트아웃 상태를 무시하면 결국 번아웃으로 전환되고, 그 후엔 더 심각한 증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토스트아웃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토스트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매일 하는 일에 의미와 재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다면 쌓아두지 않고 바로 털어놓고 해소하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밖에도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안정,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 등이 토스트아웃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전근대 한국행형사(5·마지막회)



김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 목차

- 제1편 상고사(상고시대부터  
삼국통일시대까지)
- 제2편 중고사(고려시대)
- 제3편 근세사(조선시대)
- 제4편 근대전기(구한국정부시대)

## 2. 형집행방법

### 가. 사형

#### 1) 참형(斬刑)

1894년 참형 폐지령이 나오고 1896년에 공포한 「형률명례(刑律名例)」 중에서 다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참형은 일단 자취가 끊어지기에 이르렀지만 1900년에 이르러 일시적 필요에 따라 참형(斬刑)을 부활하였다. 그 후 1905년 「형법대전」을 제정하기까지는 형률상 참형은 존속하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시 참형 집행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참형은 황실범과 국사범만에 한정되었고 보통범죄에 대해서는 참형은 행해지지 아니하였다. 듣는 바에 따르면 참형이 폐지된 형법대전 제정 이후에도 오랫동안 실시된 과습에 의해 참형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집행방법도 종전과 같았다. 또한 참형집행 장소는 조선시대 말에 이르러 감옥 구내에서 밀행하게 되고나서는 경성에서는 종로에 있는 감옥 구내 동남쪽 구석의 한 구획을 사치장(仕置場)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매우 많은 처형을 한 것 같다. 외벽 안쪽 벽돌면에 혈장(血漿)이 흘러진 생생한 낭적(浪跡)이 여기저기 스며들어 남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때 느낀 바로는 최근까지 참형집행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형법대전 제정 후에도 참형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설은 사실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 2) 교형(絞刑)

종전에는 교형은 옥외에서 집행하는 경우,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여기에 들보를 걸친 후 줄을 매달았고, 또 옥내에서 하는 경우는 대들보에 줄을 내리든가 또는 방의 벽에 구멍을 뚫고 여기로 교승을 통과시키고 옆방에서 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매우 간단하게 무조작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서정혁신 후부터는 옥무(獄務)가 점차 진보를 알림에 따라 1904년경까지 경성에서의 교형은 집행방법이 현저하게 변하였다. 즉 종로감옥에서는 작은 공간과 같은 건물을 특설한 교형장으로 하여 천정에 옆으로 가로지른 들보에 철제 우물도르레를 매달고 여기에 교승을 걸고, 바닥 판자 밑을 약 90cm 가량을 아래로 파내고 그곳에 줄을 감는 기계를 설치하고, 행형집행자가 이것을 회전하여 교승을 위로 감아 올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하였다. 그러나 설비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줄 감는 기계가 공회전을 하여 수형자의 다리가 지상에 닿거나 또는 추락하게 된 적도 있었다. 또한 완전하게 집행을 완료할 생각이었으나 의외로 교승을 풀고 끝낸 후 소생하여, 당황하여 다시

고승(藁繩)<sup>1)</sup>으로 머리를 묶어 다시 죽이는 것과 같은 일도 가끔 있었다. 그래도 옛날과는 달리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밀행하게 된 것은 개량된 셈이다. 지방 감옥에서는 교형장으로 특설된 설비를 가진 곳은 1, 2개소 밖에 없었으나 그것은 매우 유치한 장치로 불완전하였다. 다른 지방에서는 한 곳도 그 설비를 가진 곳은 없었고 결국 죽이는 것까지 끝내면 그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집행방법과 설비의 여하와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이 신제도 실시 후 감옥의 신개축 계획이 점차 진보를 본 합병 무렵까지는 공소원 소재지 감옥만 완전한 교형장의 설비를 갖추었다.

### 나. 체형(體刑)

1896년 「형률명례」를 제정하여 형벌의 종류를 사, 유, 도, 태의 4종으로 개정하였을 때 이전에 장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체형은 태(笞)만 있었다. 태형은 종전에는 10대에서 50대였고 60대 내지 100대는 장형이었던 것을 장형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태형의 범위를 확장하여 10대에서 100대로 하고 10등급으로 구별하였다. 1905년 「형법대전」을 제정하였으나 태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 다만, 새롭게 태(笞)의 제식, 형량(刑量) 및 수속(收贖)에 관한 사항과 집행방법에 대해 규정이 제정되었다.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부녀에 대해서는 행형 중 입은 옷의 탈리(脫離)를 막기 위해 물에 적신 단의(單衣)<sup>2)</sup>를 입게하였으나, 간통죄를 범한 부녀에 대해서는 옷을 벗겨서 집행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태형(笞刑)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만 과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리고 집행은 종전부터의 관례에 따라 죄인을 태형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몸통과 양다리의 첫 번째 관절 부분의 두 곳을 대판(臺板)과 함께 줄로 묶고 그 후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노출시키고 태(笞)의 수를 소리내어 계산하면서<sup>3)</sup> 때리는 것은 보통의 예로 하고 있었다. 아울러 죄수가 재범 이상이고 또한 정상(情狀)도 무거운 때는 형대(刑臺)에서 내려 직접 땅위에 엎드리게 하고 때렸다. 또한 수형자가 백정(白丁)인 경우에도 대(臺)에 두지 않고 땅위에 넘어뜨리고 이를 집행하였다. 이들은 특종부락민으로 형의 집행상까지도 낮추어서 차별적으로 행형을 하였다.



「형법대전」의 제정 이후 태형(笞刑)은 집행방법에 대해 점점 통제를 가지게 되었고 하더라도 그 무렵에는 재판권이 행정관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관청에서나 태형(笞刑)을 선고할 수도 있고 또 그 집행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형구(刑具)나 집행방법도 무통제하였고, 장(杖)과 같은 것은 이미 폐지되어버린 형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더구나 주장(朱杖), 곤장(棍杖), 신장(訊杖), 형장(刑杖) 등 예로부터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모양 등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졌다. 또한 태(笞)와 같은 것은 법정 형구였으므로 물론 관청이 이것을 준비해 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부러지거나 훼손되어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수형자의 부담으로 하여 제공받았다. 그래서 수형자는 자신이 맞을 태(笞)를 자기가 만들어 관청에 가지고 가서, 이것으로 두드려 맞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실로 무자비한 사업(仕業)을 한 것이었다. 태(笞)의 형상이나 품질도 한층 각기 다르게 되었고 그리고 약하게 되었으며 한사람의 태형(笞刑)을 집행하는 데도 수십 개가 부러지거나 훼손이 되어 많은 예비 태(笞)가 필요했다고 한다. 또한 태형의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예사롭지 아니한 손대중이 있어서 집행자에 대한 뇌물의 유무 또는 뇌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관대하고 엄함, 강하고 약함의 차이가 있었다. 위와 같이 폐해는 자연히 일반으로 확산되어 감옥에까지도 미치고 있었다고 한다.

종전의 태형(笞刑)의 실상은 이와 같았지만 1908년 사법제도 개혁 후에는 재판권이

1) (역자주) 고승(藁繩) 마른 줄

2) (역자주) 단의(單衣) 홑옷(역자주) 단의(單衣) 홑옷

3) 계산반(計算盤)을 설비한 적도 있었다.

사법관의 손으로 넘겨졌고, 집행권 역시 완전히 감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이후 비로소 「형법대전」에 규정된 바대로 일정한 형구(刑具)로써 일정한 방법에 따라 매우 엄숙하게 시행하게 되게 되었으며 옛날과 같은 폐해는 완전히 그 흔적이 없어지게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대전」에 의한 태형제도는 병합 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조선인에 한해 적용되었지만, 1912년 3월 제령 제13호로 새롭게 「태형령(笞刑令)」이 제정된 결과 폐하여 없어졌다.

#### 다. 유형(流刑)

유형은 고려형법 이후 3천리, 2천 5백리, 2천리의 세 종류로 하고 죄의 경중에 따라 이를 과하는 것을 정해졌으나 실제로는 유배지를 지정하고 그곳에 유배하였다. 그리고 유배지는 섬지방도 있고, 육지도 있으며 또한 근거리와 원거리가 있어 결국 서울 이외의 곳은 어느 곳이라도 유배지로 지정할 수 있었다. 1895년에 이르러 「유형(流刑)의 등급을 나눔과 가감(加減)의 예」를 제정한 결과, 비로소 유형제도에 대변화를 가져왔다. 즉 유형은 유배지까지의 거리의 원근, 교통의 편리함과 불편함, 유인도 및 무인도의 구별 등에 따라 경중을 나누는 예로부터의 예를 형기제로 바꾸어 1등급 종신, 2등급 15년, 3등급 10년으로 개정하고 동시에 유형은 국사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 또한 유배지는 많게는 섬지방을 지정하였고 대체로 제주도, 지도, 진도, 추자도, 완도, 고금도, 철도 등에 압송하여 넘겼다. 1896년에 이르러 제정된 「형률명례」에 따라 유형의 범위를 보다 더 확장하여 종신, 15년, 10년, 7년, 5년, 3년, 2년 반, 2년, 1년 반, 1년의 10등급으로 개정하였고, 1905년에 이르러 「형법대전」의 제정에 따라 형제에 근본적인 개정을 하면서도 유형에 대해서는 변경은 없었다. 다만 집행방법에 관해 약간의 새로운 규정이 두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한 변경의 중요한 점은 유형수는 원칙으로는 섬지방에 압송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해 지방의 감옥에 수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1908년에 이르러 형법대전을 대개정할 때 ‘유형수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섬지방 또는 육지의 감옥에 구금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이것은 유형수를 섬지방에 보내는 것은 실행 상에 불편도 있고, 또 섬 주민에게도 큰 폐를 끼치는 등 여러 가지 폐해도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내 수감의 방침을 취한 이유이고, 그 이후 유형수는 한 사람도 섬지방에 보내어 방치해 둔 일이 없어졌으며, 모두 본토 내 감옥에 수감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섬지방에 유배되어 있었던 구 유형수의 남은 사람은 1910년 합병시 「은사령(恩赦令)」을 실시함에 따라 전부 미리



유배지로부터 철수하여 이들을 가장 가까운 감옥에 구금하였다. 그때부터 각 섬지방에는 완전히 유형(流刑) 잔존자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어서 정치범 전부에 대하여 대사(大赦)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옥내에서도 유형수는 완전히 그 모습이 사라졌다.

유형수가 섬지방에 보내진 때부터 그 이후 귀양살이 중의 생활상태에 대해서는 이를 볼 수 있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를 알 수 없지만 구한말 유형(流刑) 처분을 받고 완도에 유배되어 2년간 섬에 있다가 은전을 입고 귀환한 사람의 실화는 최근의 유형의 실상을 아는 데에 다소 참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를 수록하였다.

#### 전 유형수 정철화(鄭哲和, 1878~1943)의 유형에 관한 실화<sup>4)</sup>

(전략) 다음 해인 1909년 6월 2일에 이르러 나의 죄가 결정되어, 내란죄라고 하는 죄명이 붙여져서 평리원(平理院)에서 유(流)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은 6월 8일로서 확정되었지만 재판일로부터 11일째에 완도에 유배되었다. 더욱이 유배지로

4) 이 사람은 1908년 군대해산시에 일어났던 폭도의 수괴자 중 한 사람이다.

보내는 일에는 종로감옥 감방에서 나와 호송자인 순검(巡檢)의 손에 인도되었다. 그때 함께 보낸 사람은 20명이었다. 이들이 전부 공범자는 아니었지만, 압송 형편 상 예에 따라 유형자를 묶어 보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유형가는 것을 누구로부터 알았는지 일찍이 가족 모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으며, 남대문 역에는 많은 견송인(見送人)이 나와 있었다. 또한 나의 아내도 종복(從僕) 2명을 데리고 나와 있었고, 자신도 함께 완도로 간다고 하며 기차를 같이 타고 인천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으로부터는 ‘타야우깡’이라고 불리는 배에 올랐다. 가족도 역시 배를 같이 탔지만 목포에 도착하여 하선하고 다시 조선배로 완도로 보내졌다. 가족은 배를 같이 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포에 머물렀다가 다음 편 배를 기다려서 완도로 건너오기로 하였다.

우리들이 탄 배는 먼저 진도에 기항하여, 이곳에서 4명의 유형수를 하선시키고 부두에 마중과 있던 순검(巡檢)에게 인도하고 출항하였으며 목포를 출발하고 나서 2일째에 완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하선하였고 나머지 소수의 사람은 다시 추자도로 보내졌다. 유배하는 섬들은 법부(法部)에서 지정한 것으로 감옥이나 경찰에서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배가 완도에 도착한다고 미리 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순검(巡檢)이 수취(受取)하기 위해 마중나와 있었다. 호송 순검(巡檢)은 우리들을 섬의 순검(巡檢)에게 인도하고 즉시 떠나갔다.

우리들은 순검(巡檢)에게 인솔되어 먼저 섬의 군청에 출두하였는 바, 군수가 나와서 정성스럽고 간곡한 말을 우리들에게 해 주었다. 이것은 군수가 우리들 일동은 국사범인(國事犯人)이고 보통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마음 속에 동정을 가지고 있어서 암전한 언어로 맞이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군수의 인사가 끝나자 우리들이 거주해야 할 면(面)이 지정되었다. 섬은 법무대신이 지정하고, 면(面)은 군수가 지정한다. 그래서 각 면(面)에서 면(面)의 관리들이 우리들을 인수하러 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인도되었다. 우리들에게 지정된 면(面)은 완도에서 강 하나 사이인 고금도(古今島)로 그 섬에는 남면(南面)과 농상면(農桑面)의 두 개 면이 있었는데, 나 외에 5명 총 6명에 대해서는 남면이 지정되었고 농상면에는 다른 7명이 배치되어, 결국 완도에는 총 13명이 두어진 셈이다.

유배자 중 금전을 소지한 사람은 금방 집을 사서 거주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살았지만, 금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일시 면장의 집에 묶으면서 밥을 얻어먹고 지내면서 세를 내고, 금전이 모이고 나서 집을 사거나 건축하거나 또는

봉공인(奉公人)<sup>5)</sup>이 되어 자활하였다. 유배자는 섬에 있으면서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았고, 또 군수나 경찰관 등도 공연하게 감독하러 오는 것같은 일도 없었다. 아울러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일은 조금도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유배자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여 농업을 하는 자, 어업을 하는 자, 해산물을 장사하는 자 등이 있지만, 그중에 교육을 받은 자는 섬사람의 희망에 응하여 서당을 열고 섬 자체에게 학문을 가르쳐 생계를 하고 있는 자도 있었고, 또한 금전을 가진 자는 금대업(金貸業)을 경영하고 있는 자도 있었다.

나는 가족이 함께였고 또한 돈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집 한 채를 샀다. 그 집은 최근까지 오랫동안 유형당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집이었다. 나는 그 집에 살면서 김, 그 밖의 해산물상을 경영하면서 나와 함께 유형에 처해져 온 사람들을 고용하여 가업을 돕도록 하였으며 모두 편안하게 살았다. 섬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들 유형인들을 환영하였으며 싫어서 꺼리는 듯한 분위기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들을 환영하는 것은 유형인에게는 섬에 불편함을 끼치는 자가 없고, 오히려 유형인이 오기 때문에 섬의 상매(商賣)가 번창할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학문을 가르치고 그 밖에 섬을 위하는 자가 있는 가운데 대체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많았고, 특히 비록 유형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변(政變)으로 인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사면이 됨과 동시에 대신(大臣)이 되어 조정에 서는 사람도 있어 존경할 만한 사람도 많기 때문이었다.

또한 유배되어 섬에 살더라도 본토로 건너가는 것은 매우 쉬웠고, 항상 배편도 있고 또 도망가 버리는 일도 가능하지만, 도주하면 참(斬)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섬 관리의 허가만 받으면, 언제라도 육지의 어느 곳이나 건너갈 수가 있었다. 다만, 경성에만은 들어갈 수 없었다. 가령 유형(流刑)이 종신이었다도 때때로 대사(大赦)가 있어 귀환을 맞이하는 날도 있는 가운데 유형수는 일반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때가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으로 도망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우리들은 이 섬에 자리잡고 나서 2년여가 되었을 무렵 조선이 병합되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유형인 중에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섬의 순검(巡檢) 쪽에 알아보니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하여 그대로 있었으나, 1910년 8월 21일에 돌연 순검

5) (역사주) 나라나 사회를 위해 힘쓰는 사람

이 와서, 광주지방법판소의 검사국으로부터 호출이 있어, 지금 같이 출발해야 하니 서둘러 준비를 하라고 서둘러대서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지만 가족에게 작별을 고할 겨를도 없이 배에 올랐다.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은 11명이었다. 최초에는 13명이었으나 2명은 죽었다.

그날 목포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은 광주에 도착하여 바로 광주감옥에 수용되었다. 그때 여러 섬으로부터 모여진 유형수가 약 70명을 헤아렸고, 모두가 내란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수용된 후 5일째 되는 날 대사(大赦)가 시행되었다. 그것은 한일병합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때 생각하지도 않은 은사를 입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때문에 감옥에서 석방된 것은 아래 정도로 기쁘다고도 생각되지 않았다. 그것은 유배의 몸이라도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책의 생각도 없었고, 처자와도 동거하였으며 상업도 상당히 호황이었으며, 섬지방 사람들도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어 생활상으로는 아무런 부자유도 없이 차츰차츰 섬에 대한 친근감도 깊어져 왔고 또한 유형(流刑)에는 조만간 은사를 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이래저래 정신상으로도 신체상으로도 아무런 고통도 없이, 오히려 매우 창기(暢氣)에 생활하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완도로 돌아가 1년 정도 그곳에서 생활을 한 후, 가족을 데리고 그 섬을 떠났다.

많은 유형수는 그 유배지에서 지나치게 방사(放肆)<sup>6)</sup>하면서 잘난체하고 뽐내며 건방질 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은 그 섬 전체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섬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형수가 오는 것을 귀찮아 하거나 또는 이를 싫어서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여 앞에 기록한 정철화의 실화와는 크게 달랐다. 이는 그 시대, 장소 및 유형자의 인물 등이 다름에 의해서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것으로, 어떤 때에는 이것을 기피한 적도 있었다면 또 어떤 때에는 털끝만큼도 개의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즉 유형수 대 섬사람의 관계는 그때그때 변화가 있었던 것 같지만, 옛날부터 오랫동안 걸쳐 섬사람에게 약속되어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이를 깊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실상이었던 것 같다.

## 라. 자유형

자유형으로는 종래 도형이 있었을 뿐이다. 도형은 1895년에 이르러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의 제정에 따라 징역으로 바꾸고, 형기는 종신 이하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이를 8종류로 하고, 각 옥내에서 정역(定役)에 종사하도록 하였지만, 1896년에 이르러 「형률명례(刑律名例)」의 제정에 따라 징역을 다시 역형(役刑)으로 개칭하고, 형기는 종신 이하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19등급으로 나눈다고 정하였다. 1905년 제정된 「형법대전」에서도 여전히 역형(役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형기는 종신 이하 1년 이상의 범위에서 10등급으로 나누었고, 형기간 동안 감옥에 수감하여 복역하게 한다고 정하였고, 또한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금옥형(禁獄刑)을 만들고 형기는 10개월 이하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10등급으로 구별하였으며 달리 정역에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역형은 정역에 복역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수형자 가운데 소수의 자에 대해 취사부 및 청소부 등과 같이 감옥 내 잡일에 사역하는 데 그쳤고, 다른 대부분의 죄수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일을 과한 사실은 없고 하루하루 빈둥빈둥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업에 복역을 하기에 이른 것은 1908년 신제도 실시 이후의 일이었다.

## 3. 형구(刑具)

법정의 형구는 「대명률」과 「경국대전」에서 정하는 태, 장, 곤, 가(枷), 유(杻), 쇠항(鎖項), 철삭(鐵索), 쇠족(鎖足) 외에 「육전조례(六典條例)」에서 정하는 행형도자(行刑刀子)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위 가운데 가(枷), 유(杻), 쇠항(鎖項), 철삭(鐵索), 쇠족(鎖足)의 다섯 종류는 순수한 형구가 아니라 주로 본형에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본형의 형벌 위엄의 효력을 한층 더 증대시키려고 하는 한편 검속(檢束)을 도울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1905년 「형법대전」이 제정되고 앞에 기술한 형구는 일단 전부 폐지되었으며 형구로는 태(笞)만 존치하고 형식에 대해서는 소형조(小荊條)로 만들고 긴돌레 길이 3척 5촌, 대두경(大頭徑) 2분 7리, 소두경(小頭徑) 1분 7리로 정하였다. 그리고 종전에 형구로 불리고 있었던 가(枷), 유(杻), 철삭(鐵索) 외에 새롭게 질(桎, 족쇄), 추(箠), 혁편(革鞭)의 세 종류를 늘리고 이를

6) (역자주) 방사(放肆)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행동

옥구로 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옥구로 한 것은 (1) 가(枷),<sup>7)</sup> (2) 유(杻),<sup>8)</sup> (3) 질(桎, 족쇄),<sup>9)</sup> (4) 철삭(鐵索),<sup>10)</sup> (5) 추(箠),<sup>11)</sup> (6) 혁편(革鞭)<sup>12)</sup> 등 6종류 가운데 가(枷)와 질(桎)은 중죄이면서 완쾌강한(頑悖強悍)하여 도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철삭(鐵索)은 역형(役刑)에 처한 자에게, 유(杻)는 수금(囚禁) 중에 있는 자 또는 사로잡을 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계구로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추(箠)와 편(鞭)<sup>13)</sup>은 신문(訊問)할 때 저뢰추위(抵賴推諉)하고 사실을 털어놓지 않는 자에 대해 사용하는 고문용구이고, 어느 것도 형구로 볼 수 없었다. 따라서 형구 중에서 이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결국 형구는 태(笞)만 남게되었다.

### 감옥규칙(1894년 11월 제정)

- 제1조 감옥을 분리해 기결감, 미결감의 2종류로 한다.
- 제2조 감옥은 내부(內部)대신의 관할로 하고 경무사(警務使)가 관리한다.
- 제3조 재판관과 검사는 때때로 감옥을 순시한다.
- 제4조 간수장은 감방을 시찰하고 물건을 사열(査閱)하고 죄수의 탈옥이 없게 한다.
- 제5조 ① 신입감자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 또는 경무서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사열(査閱)한다.  
② 미결자 중 공범인이 있는 때는 감방을 달리한다.
- 제6조 대동 유아는 3세까지 허가할 수 있다.

7) 가(枷) 목에 채우는 것으로 긴둘레 길이 5척 5촌, 두랄(頭濶, 머리 넓은 쪽) 1척 5촌, 무게 20척으로, 실물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것을 사용하는 데에는 목을 삽입시키고 옆에서 나무못을 박고 아래에서 잠그는 것이다.  
8) 유(杻) 손을 채우는 것으로 긴둘레 길이 1척 6촌, 두께 1촌으로 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예는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실물을 본 적도 없으며 종로의 구감옥에서는 유(杻)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마승(麻繩, 삼노끈)으로 양손을 묶고 다시 이것을 단단하게 복부에 결박해 두었다. 그때에는 손을 사용하여 밥을 먹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개와 같이 머리를 드리우고 직접 입을 대고 먹었다고 한다.  
9) 질(桎, 족쇄) 발을 묶는 것이다. 본 형구는 「형법대전」에서 처음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실제에서는 '착꼬' 또는 '착고(着庫)'라 부르고 중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본 형구의 쇠로 만든 것은 철착고(鐵着庫), 나무로 만든 것은 목착고(木着庫)라 불렀다. 또 그 형상은 대체로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모양의 것으로 좌우에서 서로 어긋나게 죄수의 왼발 또는 오른발을 한 개씩 꽂아 넣고, 빼냄과 꽂아 넣음을 할 수 없도록 아래에서 채웠다. 본 형구는 뒷간을 가는 경우 외에 그밖에는 주야로 이를 사용한채 두었다. 그리고 본 형구는 감옥의 중앙에 길게 양목(梁木, 들보)을 옆으로 비스듬히 두고 여러 명에게 함께 사용하였다.  
10) 철삭(鐵索) 가슴과 등골뼈를 결박하여 잠그는 것이다. 본 형구는 철제의 연쇄이고 사슬쇄(絲瑟鎖)라는 명칭도 있었다.  
11) 추(箠) 태(笞)의 작은 것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구이다.  
12) 혁편(革鞭) 정강이를 때리는 형구이다.  
13) (역자주) 편(鞭) 가죽 채찍

- 제7조 신입감자가 있을 때는 명적표에 상세히 기록하고 신체와 의복을 검사한다.
- 제8조 감방에 들어갈 때 물품은 간수장이 일일이 정밀하게 검사한다.
- 제9조 간독(看讀)서적은 수신(修身)과 영업 상 필요한 것에 한한다.
- 제10조 압퇴(押牢)로 하여금 재감인의 행장을 기록하게 하고, 때때로 구신(具申)하게 한다.
- 제11조 방면(放免)은 만기 다음 날 오전 10시를 지나고 나서 한다.
- 제12조 형사자(刑死者), 사망자가 있는 때는 친족에게 통지하고 재화나 화물(貨物)<sup>14)</sup>을 교부한다.
- 제13조 ① 감옥 근방에 화재가 있어 이재(罹災)의 우려가 있는 때는 재감인을 다른 곳으로 옮겨 피재(避災)시켜야 한다.  
② 수화풍진(水火風震) 그밖에 격심한 뜻하지 않은 변재(變災)<sup>15)</sup>이 있을 때 재감인을 다른 곳으로 압송(押送)하고 급할 때는 요범의옥(要犯疑獄)에 관계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일체 해방시킬 수 있다.
- 제14조 재감인이 매일 아침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는 각자 방을 청소한 후 식사를 하게 한다.
- 제15조 기결수의 옥의(獄衣)는 대여한다.
- 제16조 미결수의 옥의(獄衣)는 자변(自辨)<sup>16)</sup>으로 하고 와구(臥具)<sup>17)</sup>는 대여한다.
- 제17조 재감인의 식량 및 잡비는 1식(食) 평균 2전 1분 3리로 하고, 기결수는 역업(役業)에 종사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지급한다.
- 제18조 감방에 항상 비치하는 기구는 아래와 같다.  
저수기(貯水器), 음기(飲器) 목제  
번기 목제 대소(大小) 2개  
타호(唾壺)<sup>18)</sup> 목제  
소추(所箒)<sup>19)</sup>
- 제19조 재감인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병상의 경중을 고려하여 그 감방 또는 다른

14) (역자주) 화물(貨物) 물품.  
15) (역자주) 변재(變災) 재앙.  
16) (역자주) 자변(自辨) 스스로 비용을 부담함.  
17) (역자주) 와구(臥具) 침구.  
18) (역자주) 타호(唾壺) 침벨는 그릇.  
19) (역자주) 소추(所箒) 작은 빗자루.

별방(別房)서 의료한다.  
 제20조 각 감방에 아래의 사항을 게시하고 문자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읽어서 들려준다.  
 (생략)  
 제21조 기결수의 취역(就役)방법 및 재감인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본 규칙 제17조에서 ‘역업에 종사하는 등등’이라고 하고, 또 제21조에서 ‘기결수의 취역(就役)방법 등등’이라고 하여 노역에 복역시키는 것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다음 해 발표된 「징역처단례」에 따라 도형을 폐지하고, 강제복역을 실질로 하는 징역제를 채용하는 것을 예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규칙은 행형법규로서는 매우 불비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성에 있는 감옥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의 감옥의 일은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아니하는 결점이 있는 외에 시세의 진보는 옥무에 대해서도 역시 그 개선을 촉진하기에 이르렀고, 또 그 무렵 일본에서 조약개정 실시 준비로 열심히 옥무쇄신 개선을 도모한 것이 조선 행형제도 자극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감옥규칙의 개정의 논의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1899년에 이르러 다시 근본적인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개정에서는 본 규칙에 해당하는 감옥규칙에 이에 그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감옥세칙」까지도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아래와 같다.

**감옥규칙(1899년 칙령 제3호)**

- 제1조 감옥은 내부(內部)대신이 총할하고, 경무사와 각 그 부의 관찰사로 하여금 관내의 감옥을 관리하게 한다.
- 제2조 ① 감옥을 나누어서 미결감, 기결감의 2종류로 정한다.  
 ② 미결감은 재판소 및 경찰서에서 신문 중에 있는 자를 구류하는 곳으로 하고, 기결감은 형역(刑役)에 처한 자를 구금하는 곳으로 정한다.
- 제3조 감옥서장은 항상 요원(僚員)을 계칙(戒勅)하여 죄수를 학대하지 않게 하며, 간수장 및 순검(巡檢)을 지위하고, 주야는 물론 감옥 내외를 시찰하고, 물건을 사열(査閱)하여 죄수가 탈옥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4조 재판관과 검사는 때때로 재판소에 속하는 감옥을 순시한다.
- 제5조 ① 새로 입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감옥서장은 먼저 입감자에 대한 판사와

- 검사와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된 문서를 사열(査閱)하여 수령하고, 그 수수(收受)하는 증명을 인치자에게 교부한다.
- ② 당해 신입감자 중 공범인이 있는 때는 감방을 달리 하고 설화(說話)<sup>20)</sup> 및 통성(通聲)을 금하고 법정에 인치할 때는 함께 갈 수 없도록 한다.
- 제6조 입감의 부녀가 유아를 휴대한다고 청하는 때는 이를 허가한다.
- 제7조 ① 새로이 입감하는 자가 있는 때는 감옥서장은 간수장으로 하여금 명적표에 그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고 신체와 의복 등을 수검(搜檢)하고 이기(利器) 및 물건을 은닉 협대(狹帶)의 유무를 상세히 검사하도록 한다.  
 ② 입감자가 휴대한 재화와 물건은 감옥서장이 점검하여 영치하고 장부에 상세히 기재하여 판결 후 즉시 출납한다.
- 제8조 범죄를 한 부녀자의 감방은 따로 설치하여 옥원(獄員)과 죄수가 공용 외에는 입방 또는 사사로이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한다.
- 제9조 기결 미결을 불문하고 재감인의 성명, 죄범(罪犯) 및 입감(入監), 판결, 형기, 연월일을 장부에 상세히 기재한다.
- 제10조 ① 수인을 재판소 및 다른 곳으로 압송하는 때는 남녀를 분리한다.  
 ② 당시 사정에 따라 계구를 사용하고 그 계구는 수감과 족쇄로 제한한다.
- 제11조 형기가 만한(滿限)된 자가 있는 때는 하루 전에 재판소에 통보하고, 해방은 만기 다음날 오전 10시를 넘기지 아니한다.
- 제12조 수화풍진(水火風震) 등 비상(非常)의 뜻하지 않은 변재(變災)를 당하여 감옥 둘레내에 피재(避災)<sup>21)</sup>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감옥서장은 그 형세를 헤아려 재감하는 수인을 다른 곳으로 압송하여 재앙을 피하게 하고, 만약 압송할 여유가 없을 때는 경죄에 한 해 일시해방을 할 수 있다.
- 제13조 정역에 복역하는 수인의 작업은 각 수인의 체력에 따라 부과하고 그 과정의 표준은 내부대신의 인가를 받는다.
- 제14조 정역에 복역하는 수인에게는 현역(現役) 100일 경과한 후에 각 공전(工錢)을 요정(料定)하고 이를 10으로 나누어 그 2분을 중죄수에게 급여하고, 그 3분을 경죄인에게 급여하며, 기타는 감옥비용에 공한다.
- 제15조 전 조에 따라 죄수에게 급여하는 공전은 만기방면할 때에 지급한다. 다만,

20) (역자주) 설화(說話) 이야기.  
 21) (역자주) 피재(避災) 재해를 피함.

형기내 사망한 때에는 친족에게 내어주고, 만약 형기 내에 도주한 자는 관에 몰 수하여 감옥비용에 충당한다.

제16조 아래에 기재한 날은 복역을 면하게 한다.

1월 1일 및 2일

개국기원절(開國紀元節) : 조선왕조 태조 개국기념일

흥경절(興慶節) : 고종즉위일, 음력 12월 13일,

만수성절(萬壽聖節) : 고종황제 탄신일

천추경절(千秋慶節) : 황태자 탄신일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 : 고종이 황제위에 오른 날

12월 31일

부모의 상을 당한 자는 3일간

제17조 기결수의 의류와 침구는 대여하고 식량은 하루 동화(銅貨)<sup>22)</sup> 8전씩 정하여 급여한다.

제18조 ① 미결수의 의복은 자변으로 하고, 침구는 대여하고 중죄 또는 의뢰할 자가 없는 의복과 음식을 자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당해 재판관은 감옥서장에 게 통지하고 주급(週給)한다.

② 서장은 때때로 옥수의 정황을 사열(査閱)하여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 해당 재판소에 신고하고 지시를 기다려 시행한다.

제19조 이 규칙을 시행하는 세칙은 내부대신이 법무대신과 타의(妥議) 정한다.

제20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감옥세칙(1899년 내부령 제11호)

#### 제1장 통규(通規)

제1조 각 감방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게시하고 만약 문자를 모르는 자가 있는 때는 입감시에 송전(誦傳)하도록 한다.

1. 재감인은 항시 명령을 정중하게 지켜야 한다.
2. 매일 아침 방내를 청소하고 상용하는 모든 기구를 청결히 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창과 벽과 물건을 오손하거나 또는 깨끗한 그릇에 침을 뱉거나 또는 받아놓

은 물을 남용하는 것을 금한다.

4. 감옥 외로 나가는 때는 길 위에서 같이 가는 자와 교담하거나 행인과 말을 주고받는 것을 금한다.

5.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감방에 두거나 혹은 승부를 다투거나 도박과 유사한 못된 장난을 하거나 또는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을 오욕(汚辱)하거나 또는 외설적 행동을 금한다.

6. 허가되지 않는 옷과 음식 및 다른 물건을 수여하거나 대차(貸借)하는 것을 금한다.

7. 감방에 이상한 일이 있으면 주야를 불구하고 간수소(看守所)에 알려야 한다.

제2조 재감수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각 감방을 청결하게 청소한 후 식사를 한다. 다만, 위의 항 여러 조에 고의로 위반하는 자와 고의로 위반하는 자를 알리지 아니한 자는 그 정상을 헤아려 상당한 처분을 실시한다.

#### 제2장 급여

제3조 감방에 항상 두는 기구는 아래와 같다.

1. 저수기(貯水器) 및 음기(飲器) 목제
2. 변기 목제 대소 2개.  
다만, 감방에 축청(廁圀)<sup>23)</sup>이 설치된 곳은 이 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타호(唾壺) 목제
4. 소추(所簞)

#### 제3장 위생 및 사망

제4조 감옥은 항상 청소하여 청결하도록 하는 것을 요한다. 그 가운데에 특히 축청 및 변기는 횡수를 정하여 청소하여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한다.

제5조 의류, 침구, 잡구 그 밖의 물품은 때때로 끓는 물에 한탁(瀚濯)하고 쇄폭(洒暴, 화기에 쬐여)하여 좋지 않은 냄새를 제거하고 총해(虫害)를 막도록 한다.

제6조 미결수 및 정역에 복역하지 않는 기결수는 매일 1시간 내에 감방 밖에서 운동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7조 재감인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병실로 옮겨서 치료하고 그 예방을 엄밀하게 하며 만약 수인 중에 전염병이 있을 때는 즉시 격리실에 옮기고 그 소독을 실시하고 증상과 감염하는 하는 형상을 상세하게 모두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역자주) 동화(銅貨) 동전.

23) (역자주) 축청(廁圀) 화장실.



제8조 수인이 사망한 때에는 감옥서장은 의사와 입회하여 검시(檢視)하고, 신속하게 친족에게 통지하며, 그 유해는 친족 또는 친구의 요청을 이전에 신청한 자에게 내어준다. 만약 사후 24시간 이내에 그 인수를 요청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가매장(假埋葬)한다. 다만, 신문 중에 사망한 자가 있을 때는 당해 관(官)에게 통지한다.

제9조 수인(囚人)의 유해는 가장(假葬)한 후에라도 인도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는 허가한다.

제10조 수인이 사망하여 감옥서에 영치시킨 화물이 있을 때는 친족에게 내어주고 형사자(刑死者)의 화물도 역시 같이 처리한다.

제4장 접견 및 자공품

제11조 수인을 접견하려고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는 감옥서장이 성명과 신분과 직업 및 연유를 상세히 하고 의심할 만한 형적(形跡)이 없는 자에 한해 입회한 후에 허가해야 한다. 접견하는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사형집행 전 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압송하는 수인에게는 특별히 1시간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중죄의 미결수를 접견하려고 신청하는 자는 당해 재판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접견을 허가받은 자가 만약 접견을 신청한 취지에 위반되는 담화를 하거나 또는 자모(姿貌),<sup>24)</sup> 형상 등으로 서로 통하는 형적(形跡)이 있는 때는 즉시 정지해야 한다.

제14조 수인을 접견하는 시한은 집무시간 중에 한한다.

제15조 수인이 서적을 보려고 신청하는 때는 수신(修身)과 영업상에 필요한 것에 한해 허가한다.

제16조 비록 기결·미결수라 할지라도 친족과 친구로부터 서적(전항의 종류에 한한다.), 용지, 침구, 음식물을 증송(增送)하는 것을 신청하는 때는 허가하고, 음식물은 술 및 담배를 제외하고 감옥 내에서 끓이거나 삶는 종류로써 하루 3회씩, 1인 1식하는 양에 한한다.

제17조 모든 자공품(自供品)은 간수장이 입회하고 간수가 검사하여 독기(毒氣), 주기(酒氣) 또는 포장물 그 밖에 통모하는 매개의 유무를 상세히 검사해야 한다.

제18조 재감인 중 범한 죄의 경중(輕重)을 논하는 옷과 이불 혹은 음식물 등의 일로 말미암아 본가 친척에게 통지하는 것을 청하는 때는 순시하는 순검(巡檢)에

게 촉탁한다.

제19조 위의 항목의 경우에 수탁하는 순검(巡檢)은 사유 혹은 편지를 서장(署長)에게 바치어 조사하고, 발송하는 것도 당해 재감인 및 순검과 위탁하는 자의 성명 및 사유를 장부에 기재하고, 회보가 오는 때에도 역시 일일이 조검(照檢)하여 허가를 받아 들여오고, 옷·이불과 금전은 재감인에게 교부한 후 영수표를 온 사람에게 토부(討付)하고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제20조 재감인 중 의복 혹은 전재(錢財) 등의 일로 편지 왕래는 서장이 뜯어서 조사한 후 허가하고 사사로운 부탁은 엄금한다.

제5장 상여

제21조 ① 감옥서장은 항상 재감인의 행장을 기록하고 법부에 갖추어 보고하여 상여해야 한다.

② 상여를 받는 자를 표시하는 데에 적색포(赤色布)로써 곡철(曲尺) 사방 3촌의 상표(賞表)를 제작하여 급여하고, 상의 왼쪽 소매의 어깨와 팔 사이의 정면에 꿰매어 부치게 한다.

③ 상표(賞表)는 상여할 때에 급여하고 꿰매어 부치게 한다.

제22조 상표(賞表)는 특사, 은전을 신청하는 빙거(憑據)<sup>25)</sup>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상표(賞表)를 가진 자는 아래와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의류 및 잡구는 좋은 물품을 대여한다.
2. 감방을 구별하고, 보통의 수인과 특별히 다르게 한다.
3. 목욕하는 때는 보통의 수인보다 먼저 하게 한다.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매월 2회 자기 공전(工錢)으로 음식물을 구매할 수 있고 그 금액은 1회 5전 이하로 한다.
5. 상표(賞表) 2개 이상을 가지는 자는 작업의 노동이 약간 가벼운 것을 부과하고, 또한 반찬의 분수(分數)를 증가한다.
6. 상표(賞表) 3개 이상을 가지는 자는 앞 4호와 5호의 분수(分數)를 적당하게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

제24조 수인이 아래에 기재한 소행을 한 때는 법부에 갖추어 보고하여 상당한 상전(賞典)을 신청한다.

1. 재감인이 도주하려고 한 경우 또는 죄를 범하려고 한 자를 밀고하는 때

24) (역자주) 자모(姿貌) 얼굴 모양.

25) (역자주) 빙거(憑據) 증거.

- 2.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거나 또는 도주자를 잡은 때
- 3. 감옥에 관련된 수화풍재(水火風災)를 방어한 때

제6장 징벌

제25조 재감인이 불법의 행위를 하는 때는 순시하는 순검이 잘 타일러 훈계하고,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엄중히 금하고, 일직(一直) 완강히 거부할 경우에는 감옥 서장에게 신고하여 징첩(懲戢)한다.

제26조 위 항의 경우에 재감인을 징첩(懲戢)하는 때는 물론 어떤 죄수의 범한 죄의 경중을 가려서 착가(着枷) 또는 착쇄(着鎖)할 수 있고, 그 사정을 즉시 각 당해 재판소에 갖추어 보고하고 청하여 조사한다.

제27조 이 규칙은 국문으로 번역 등사하여 감방 내에 부착한다.

위 2차 개정의 감옥규칙 및 감옥세칙은 제1차 감옥규칙과 대비하면 내용은 매우 충실하고, 취업 중 새롭게 작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점과 상우 및 징벌제도를 정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외에 급양, 위생, 통신, 접견 및 차입 등에 관한 규정도 본칙, 세칙을 통해 대체로 망라되어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교화에 관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커다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결점이다.

1894년에 제1차 감옥규칙을 제정했을 때에 징역표 및 보통징역표를 제정발포하였



다. 이 징역표는 수형자 개과(改過)<sup>26)</sup>의 붕아(萌芽)와 그 축진을 목적으로 하는 바의 일종의 계급처우법이라고도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징역표(생략)

<보통징역표>

	역한(役限)	1등	2등	3등	4등	5등	
		계구무	편태(片鈇)	양태(兩鈇)	경쇄(輕鎖)	중쇄(重鎖)	
상인(常人)	도(徒)	1년	45일	45일	70일	100일	100일
		1년반	90일	30일	170일	150일	100일
		2년	120일	100일	200일	200일	100일
		2년반	150일	200일	220일	230일	100일
		3년	반년	반년	1년	260일	100일
	준유(準流)	5년	1년	반년	1년반	1년 260일	100일
		7년	2년	반년	1년반	2년 260일	100일
		10년	3년	1년	2년	3년 260일	100일
	징역	중신	중신	7년	2년	5년 260일	100일

※ 5등의 기한이 지나면 곧 4등으로 진급하고, 4등의 기한이 지나면 곧 3등으로 진급한다. 이에 준하여 1등의 기한이 지나면 이에 방면을 할 수 있다. 이 법을 만든 까닭은 죄수를 징치(懲治)하고, 이로써 회심개과(悔心改過)하도록 하는 데 있다.

	역한(役限)	1등	2등 상급	3등 중급	4등 하급	5등
		계구무	좌동	편태(片鈇)	양태(兩鈇)	중쇄(重鎖)
특수(特殊)	도(徒)	1년	45일	250일		100일
		1년반	90일	350일		100일
		2년	120일	1년 140일		100일
		2년반	150일	1년 290일		100일
		3년	반년	2년 80일		100일
	준유(準流)	5년	1년	3년 260일		100일
		7년	2년	4년 260일		100일
		10년	3년	6년 260일		100일
	징역	중신	중신	14년 260일		100일

※ 공예(工藝)에 면밀한 자는 5등급의 기한이 지나면 곧 그 예능(藝能)에 따라서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어 당연히 상인(常人) 징역 4등급, 3등급, 2등급의 일수를 합하여 기한으로 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비록 하급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역시 1등급으로 뛰어넘어 진급하고, 이에 다른 능력이 특수(特遇)하여 공예(工藝)를 권유하는 까닭이다.

26) (역자주) 개과(改過)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경(輕)징역표〉

	역한(役限)	1등	2등	3등	4등	
		계구무	편태(片鈇)	양태(兩鈇)	경쇄(輕鎖)	
노유 (老幼)	도(徒)	1년	45일	45일	70일	200일
		1년반	90일	30일	170일	250일
		2년	120일	100일	200일	300일
		2년반	150일	200일	220일	330일
		3년	반년	반년	1년	360일
	준유 (準流)	5년	1년	반년	1년반	2년
		7년	2년	반년	1년반	2년
		10년	3년	1년	2년	4년
	징역	종신	종신	7년	2년	6년

※ 노유(老幼) 약질(弱質)은 집역장수(執役壯囚)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써 시작부터 끝까지 偏長 경역(輕役)을 집행하는 것은 늙은이와 어린이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푼 까닭이다.

	역한(役限)	1등	2등	3등	4등	
		계구무	동	동	동	
부녀 (婦女)	도(徒)	1년	75일	285일		
		1년반	140일	1년 40일		
		2년	200일	1년 160일		
		2년반	230일	1년 310일		
		3년	260일	2년 100일		
	준유 (準流)	5년	1년반	3년반		
		7년	2년반	4년반		
		10년	4년	6년		
	징역	종신	종신	10년		

※ 부녀(婦女)의 체질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구를 할 수 없고, 1등급에 진급하면 수예(殊藝)징역의 2·3·4등급을 통산하여 하나의 기한으로 하는 예이다. 또 그 기한을 줄이는 까닭은 부녀자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푼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본 징역표는 수형자를 보통자, 특수기예를 가진자, 노유자 및 부녀의 4종으로 구별하고 또한 각 항에 대해 5등으로 나누어 각 등의 형기의 길고 짧음에 따라 기간을 붙이고 그 경과에 따라 점차 진급시키는 한편 검속(檢束)상 고통을 완화하고, 1등에 진급하면 무계구가 되며 마지막으로 방면할 수 있다. 그리고 본표의 취지는 수형자를 연령별, 성별로 분류하고 나아가 계급적으로 처우하는 것에 따라 행형의 적실(適實)을 기하는 동시에 개과향상을 촉진하며, 또 공예를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복과 위하로 행형의 참된 사명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한발 나아 행형의 효과에 따라 수형자의 천선갱생을 기대하는 사상을 낳고 그 결과로 본 제도와 같은 설정을 보기에 이른 것은 실로 급격한 진보와 같이 보인다. 일본에서는 약 23년전인 1872년에 명칭과 내용이 어느 정도 이와 동일한 처우법이 제정·발포되었지만, 당시 일본 국정(國情)은 이를 실행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 해인 1873년에 이르러서는 태정관(太政官)은 형편상 당해 제도는 당분간 시행은 지켜본다는 취지를 시달하고 이를 폐지해 버렸다. 이는 원래 중국의 고안으로 성립한 것과 같으며 조선은 일본을 모방했는지, 중국을 모방했는지, 어쨌든 모방한 것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처우법의 실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무런 기록도 없고 전혀 불명하기 때문에 살펴보면 아마 실시를 보기에 이르지 못하고 공문(空文)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달리 폐지한 형적(形跡)도 없었지만 어느 사이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또한 위 징역표 중에 기재하고 있는 태(鈇), 중쇄(重鎖) 및 경쇄(輕鎖)라 불리는 계구는 근거가 전혀 불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상으로도 그와 같은 계구를 마련한 적은 없었다. 요컨대 당해 표는 일본에서 제정한 것을 약간 손질하고 모방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조선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계구가 기재되어 나온 것 같다.

1896년에는 칙령으로 행형비 예산의 제도를 제정하여 반포하였다. 이 제도는 「지방 각 도의 죄수 식비, 피복비, 압뇌(押牢) 급료, 죄수 매장비 예산」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회계상 예산과는 달리 행형비의 표준을 일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것을 갱신한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각지에서의 행형을 정액(定額)에 따라 통제하는 것을 시도한 것이다. 예로부터 교통의 불편과 오랫동안에 걸친 인습 때문에 정령(政令)이 주도면밀하지 못하였고, 그 가운데 특히 행형에 대해서는 각지역이 각각이고 같지아니함을 피할 수 없음에 따라 문란으로 흘러도 이를 감독하는 일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이를 통제하려고 기도한 재미있는 시도였다. 아울러 행형비에는 위에 열거하는 식비, 피복비, 압뇌급료 및 매장비 외에 또한 옥구비, 의료비, 신탄유류비, 잡비 등과 같이 행형상 필요하여 빠질 수 없는 경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상을 빠뜨린 불비결점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행형통제를 시도한 것으로는 실적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였을 것이다.

**지방각도 죄수식비, 피복비, 압뇌급어**

**죄수매장비예산(1896년 12월 칙령)**

제1조 지방 13도와 제주목의 죄수식비 및 피복비와 압뇌급료와 인천, 동래, 덕원, 경흥 네 항구의 죄수피복비를 예산으로 하고, 아래 제1표와 제2표와 같다.

제1표 13도와 제주목의 죄수 식비와 압뇌급료

구분	매일 항계(恒計)	식비 일계	연(年)계	압뇌	연급(年給)	총액
(각도 내역을 생략하여 계산)	232명	6원96전	2,505원60전	23명	828원	3,333원60전

제2표 13도와 제주목, 인천, 동래, 덕원, 경흥, 네 항구의 죄수피복 및 제반 경비

구분	인수 일계	동복비	하복비	노립(蘆笠) 비	초혜(草鞋) 및 말비(鞵費) <sup>27)</sup>	사슬 및 쇄비	총액
(각도 내역을 생략하여 계산)	159명	318원	318원	31원80전	828원	159원	869원73전

제2조 지방 13도와 제주목과 인천, 동래, 덕원, 경흥 네 항구 죄수 중에 만약 사망한 자가 부양 가족이 없어서 수매(收埋)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장비 금 1인당 3원 내로 임시 지출한다.

위 예산제도는 언제까지 계속하였지와 또 그 실적은 어떠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기록 등을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다.

1905년 제정된 형법대전 가운데 행형에 관한 규정을 골라내면 아래와 같다.

**형법대전 발초**

- 1. 형은 선고 후에 소정의 신소(申訴) 기한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다(제158조).
- 1. 대사(大祀), 중사(中祀), 국기(國忌), 경절일(慶節日)에는 형의 집행을 금한다(제159조).
- 1. 사형의 집행은 선고 후 법무대신에게 상주를 하여 재가를 얻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제102조).
- 1. 사형에 처해야 할 수형자가 임신한 때는 분만 후 100일을 기다리는 것을 요한다(제103조).
- 1. 사형은 비운 후 아직 맑지 않아 축축한 때, 밤이 아직 밝지 않은 때는 집행해서는 아니된다(제105조).
- 1. 유형(流刑)은 섬 지방으로 압송하여 넘긴다. 다만, 도주·탈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의 감옥에 수금(囚禁)한다(제95조).

27) (역자 주) 노립(蘆笠)은 갈삿갓, 초혜(草鞋)는 짚신, 말비(鞵費)는 버선비임.

- 1. 유형(流刑)에 처해진 자에 대해 그 가족이 따라가는 것을 원하는 때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14조).
- 1. 역형(役刑)은 감옥에 수금(囚禁)하여 역(役)에 복역하게 한다(제96조).
- 1. 역형(役刑)은 부녀, 60세 이상 15세 이하인 남자에게는 통상 정역(定役)을 면해 주고 그 체력에 상당하는 역(役)에 복역하게 한다(제111조).
- 1. 금옥(禁獄)은 감옥에 수금하는 것만으로 하고 역(役)에 복역하도록 하지 않는다(제97조).
- 1. 태형(笞刑)은 소형조(小荊條)로써 불기를 친다(제98조).
- 1. 태형(笞刑)은 부녀자에 대해서는 간죄(姦罪)의 자에게는 옷을 벗기고 집행하고, 그 밖의 죄인에게는 홑옷 위에 집행한다(제110조).
- 1. 첫째, 공죄(公罪)<sup>28)</sup>를 범한 자의 형은 일반적으로 수속(收贖)할 수 있다(제178조). 둘째, 노유(老幼), 폐질(廢疾)<sup>29)</sup> 부녀의 범죄는 반란죄와 살인죄 이외에는 수속(收贖)할 수 있다(제179조). 셋째, 사죄(私罪)에 있어서는 특정의 중대 범죄 이외에 자로 유형(流刑), 역형(役刑) 각 15년 이하의 형은 수속(收贖)할 수 있다(제180조). 환산법은 태형(笞刑)은 1대를 3전 5리, 금옥(禁獄) 및 유(流)·역형(役刑)은 1일을 1양(兩) 4전으로 정한다(제182조).
- 1. 행형용 옥구(獄具)로는 6종류를 둔다. 즉 가(枷), 유(杻), 질(桎), 철삭(鐵索), 추(釜)와 편(鞭)이다(제100조).
- 1. 보방(保放)제도를 둔다. 하나, 즉 금옥(禁獄) 이하의 수형자가 병의 기운이 위독할 때 또는 부모 상을 당했을 때는 보증인을 세워두고 보방할 수 있다(제185조). 둘, 유형(流刑) 또는 역형(役刑)의 수형자는 특정의 범죄를 제외한 자에 한 해 신병(身病) 또는 친상(親喪)의 경우에만 입보보방(立保保放)할 수 있다(제186조). 셋, 부녀 또는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남자와 폐질인(廢疾人)의 유(流)·역(役) 10년 이하는 한겨울과 한여름에 보방할 수 있다(제187조). 넷, 보방의 기한은 병자에 대해서는 위험기를 벗어날 때까지, 한겨울과 한여름은 30일 이하, 친상에 대해서는 10일로 정한다(제24조).

28) (역자주) 공죄(公罪) 공익을 해한 죄.  
29) (역자주) 폐질(廢疾) 고칠 수 없는 병.

다섯, 보방기한이 경과한 때는 당연히 감옥으로 복귀하여 나머지 형기의 집행을 받아야 한다. 만약 도타(逃躲)<sup>30)</sup>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 형에 대응한다(제188조).

형법대전은 1908년 신제도 실시 시 대개정이 실시되었으며 그중에서 행형에 관한 부분은 (1) 유형(流刑)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는 필요가 있는 경우 내지(內地)의 옥(獄)에 수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2) 수속(收贖)에 대해서는 허가 범위를 축소하고 동시에 속전(贖錢) 액수를 개정하고, (3) 보방(保放)제도를 폐지하고, (4) 새로이 가방(假放)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사형 또는 태형(笞刑)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장래 제정되어야 할 행형법의 범위에 넣어야 하는 규정 및 현대 행형에서도 적합하지 아니한 가(枷), 유(杻), 질(桎), 철삭(鐵索), 추(箠), 편(鞭)과 같은 옥구(獄具) 및 그 사용 처분에 관한 규정과 같은 것, 그 밖에 형사절차법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판의 집행, 형집행정지에 관한 규정과 같은 것도 이를 삭제했기 때문에 개정 「형법대전」에는 행형에 관한 규정은 거의 이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행형법 제정은 요원한 장래에 속하였고 또 현재 현재의 감옥규칙은 오늘날에는 시세(時勢)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형에 대해서는 지금 준거해야 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빙용(聘用)에 의해 착임(着任)한 많은 일본인 사육관(司獄官)들이 현재의 법규에 관계없이 개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이를 개정하여, 새로운 시대의 행형기관의 출현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설비조차 불완전하였으나 행형의 방법과 실질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감옥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까지 개선의 실적을 보기에 이르렀다.

### 5. 신제도실시 후 행형적 설비

1907년 8월부터 1910년까지 신제도 실시 후의 감옥사무는 초빙일본인 관리의 노력에 의해 급속하게 개선의 걸음을 진행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전면적으로 면목을 갱신하기에 이르렀으나 그중 특히 현저한 것은 가방제도 창설, 작업, 위생, 교화, 영치 및 명적 등 시설의 쇄신확장이었다. 이러한 행형적 제 시설에 그 개요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30) (역자주) 도타(逃躲) 도망하여 피신.

### 가. 가방제도 실시

「형법대전」에 수형자가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을 촉구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행형상의 큰 결함이라고도 해야 하는 것으로 1908년 「형법대전」 개정 시에 새롭게 가방제도를 창설하였다. 본 제도는 수형자 가운데 개선(改悛)의 모습이 현저한 자에 대해 임시로 석방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본 제도에 대해 「형법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나, 3년 이상의 유(流)·역형(役刑)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는 그 형기의 2분의 1 이상, 종신형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을 경과하고 개선의 모양이 있는 때는 법부대신은 가방을 허가할 수 있다(제185조).  
 하나, 법부대신은 언제라도 가방을 격소(繳消)할 수 있다(제186조).  
 하나, 가방이 격소되는 일 없이 형기를 경과한 때는 집행을 면한다. 종신형에 대해 가방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는 역시 같다(제187조).

본 제도를 일본의 가출옥제도와 비교하면 자격에 있어서 형기 3년 이상의 자에 해당하는 것<sup>31)</sup>, 또한 경과기간에 있어서 형기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요하는 것<sup>32)</sup>의 두 가지 점에서 수형자에게 불리하였지만 종신형에 대하여 가방 후 10년을 경과하는 때는 잔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전이 있는 것은 수형자에 대해 갱생의 희망을 야기하도록 하는 데에 매우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이와 같은 특전이 없는 일본의 가출옥제도에 비해 훨씬 훌륭한 것이다.

또한 가방의 취소에 대해 일본과 같이 법률상에서 취소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법무대신에게 일임하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취소되는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자로 하여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하기에 이를 우려가 있더라도 이를 명령으로 정하여 시행규칙의 규정에 맡긴 것은 법의 취지이다. 그리고 가방제도는 사법권 위임시 칙령 제238호로 「한국인의 사법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제4조에 '가출옥에 관한 규정은 한국 법규에 의해 처형된 자

31) 일본에는 이 제한이 없다.

32) 일본에는 형기 3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에게 또한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본 형법에 의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 특례는 소멸되어 갔다.

#### 나. 작업

조선시대 형법전의 모범에 해당하는 「대명률」에는 도(徒)는 죄인을 가두어 관(官)에 있게 하고 소금을 달이고, 철을 달구고 일단<sup>33)</sup> 힘을 이용하는 힘든 일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당시 중국에서는 그러한 역(役)에 복역하는 데는 감옥 내에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도장(徒場)에 배치하고 그곳에서 복역하도록 하였지만, 조선에서는 관에 죄인을 가두어 복역시켰다고 한 일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도(徒)에 처해야 하는 자는 노비에 편입시켜 사역하고 이를 정역(定役)으로 하였다고 하는 설도 있었고, 또 도(徒)에 처해진 자는 유형(流刑)과 마찬가지로 형기 동안 먼 지방에 유배하였기 때문에 도배수(徒配囚)<sup>34)</sup>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명칭도 있었다고 하는 설도 있으며, 도역(徒役)이란 감옥에 죄인을 가두어 두고 형기간 동안 형구를 사용하여 속박하는 두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역(役)에는 반드시 생산적 노동에 복

역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논자(論者)도 있어, 어떠한 설이 옳다고 해야하는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도형수(徒刑囚)에 대해 옥내에서 정해진 노동을 과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과역(科役)으로 형벌 집행의 요건이라고 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1895년 4월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를 제정하여 보통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과하고 감옥 내에서 정역에 취업하게 한다고 정한 것이 즉 징역형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일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제정된 경무청(警務廳) 관제 중에 규정한 감옥의 주관 사항 중에 '재감인의 작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이 신설된 점에서 보더라도, 감옥의 작업은 점차 이 무렵부터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단지 이상한 것은 징역처단례 공포 전의 해 즉 1894년 11월에 처음 제정된 「감옥규칙」 제17조 식량에 관한 규정 중에 '기결수에 대해서는 역업(力業)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하여 급여한다.'라고 하고, 또 제21조에 '기결수 취업방법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감옥작업은 징역형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징역처단례의 제정 발표(發布)를 예상하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2차 감옥규칙 개정에서는 작업에 관해서 대부분 상세하게 규정되기에 이르러 작업의 부과방법, 급여공전의 산정 방법 및 면역일에 대한 규정 등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전의 감옥 규칙에서부터 과한 사실은 없었다. 다만 재감자가 식량을 자공(自供)하기 위해 자신의 소지금 또는 압뢰(押牢)로부터 빌린 돈으로 소품(素品)인 짚을 사서 감방 내에서 짚신(鞋)을 만들어 이를 순검(巡檢) 또는 압뢰(押牢)에 맡겨 팔거나 또는 순검(巡檢) 등의 계호 하에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고 왔던 실례(實例)가 있었다. 그 후 1905년 「형법대전」의 제정에 따라 역형(役刑)은 다시 역형(役刑)과 금옥형(禁獄刑)의 두 종류로 나누어졌고, 금옥형(禁獄刑)은 정역을 부과하지 않고 역형에는 정역에 복역을 시킨다는 취지를 법문상으로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감옥에서는 과역(課役)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장 그 밖에 취업상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구시대 그대로였지만 다만 청소부, 취사부와 같이 감옥의 잡용(雜用)<sup>35)</sup>에 사역하는 것을 이를 작업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사역수(使役囚)에게는 공전(工錢)을 급여한 사실은 없었고, 단지 점심밥<sup>36)</sup> 대신으로 아

33) 일체의 뜻

34) (역자주) 도배수(徒配囚) 도형에 처한 뒤 유배보냄

35) (역자주) 잡용(雜用) 자질구레한 일.

36) 시는 아침, 저녁 두 끼이고, 점심밥은 급여하지 않았다.

침밥을 한 가마솥 밑의 누른 밥을 씻은 물을 지급할 뿐이었다. 경무고문(警務顧問) 마루야마 시게토시(丸山重俊)가 경찰 쇠신에 착수할 무렵 감옥사무는 경무청의 관할에 있었던 관계상 수행자는 정역에 종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시가지의 위생(衛生)인부와 같은 일에 이용되게 되었고 매일 28명 가량을 순검(巡檢) 계호 하에 출역 시키게 되었지만, 이에 또 따로 공전(工錢)을 지급한 일은 없었다. 그 무렵의 일이지만 인부로서 감옥 외로 출역하는 수행자 중에는 감방 내에 있을 때 쉼을 만들어 이를 모아두었다가 인부로 외역하는 때에 가지고 나가서 시중 상점에 이르러 돈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 때문에 그중에는 종종 주막에 들어가 막걸리를 마 음껏 마시고 만취하여 저녁 무렵 감옥으로 돌아올 때는 짐차에 실려져 같은 수감자가 끌고 돌아왔다고 하는 실례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계호 순검이 너그럽이 보 고도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수도에 해당하는 경성에서조차 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서는 추측하 여 알 수 있다. 이것이 1908년 감옥관제 실시에 따라 각지방에 전속 이하 직원이 배 치되게 되고 나서는 전 조선에 발빠르게 작업 실시의 실마리에 나서 준비에 착수하 였으나 공장과 그밖에 작업상 필요한 설비가 전무한 가운데 작업비 예산 역시 매우 근소하여 진척의 의미와 같은 역량이 없었다. 이에 공여의 일책을 안출하여 공장은 임시의 가설물로 하여 대응하고, 작업은 관의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수부작 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먼저 경성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즉 공장은 둥글고 큰 나무로 네 기둥을 세우고 이에 철조망을 둘러치는 것을 이용하고 작업은 카고시마 현(鹿兒島縣)의 사람, 쿠키타(久木田) 씨의 수부(受負)에 의해 고공(藁工)<sup>37)</sup> 을 개시 하였다. 이것이 실로 수부작업의 효시였다.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차 각지의 감옥에서도 여러 차례 개시되었으나 각 감 옥의 수행자 전부에 대해 작업을 과할 수 있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 요하였다. 1909년 감옥사무가 위탁된 후부터는 완전히 일본 감옥의 예에 따라 실시 하게 되었고, 동시에 수행자의 취업률도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그 다음해 즉 한일합 방에 의해 조선총독부 감옥관제가 실시되고 나서 수개월 후인 1910년도 말에 집계 된 취업연인원은 74만3천명 정도였기 때문에 1일평균취업자는 2천여명에 해당하여 모든 재감자의 약 3분의 1은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전총액은 35,041원으로 1인 1일 평균 작업고는 4전7리였다.

37) (역자주) 고공(藁工) 짚으로 만든 수공품.



#### 다. 위생(衛生)

옛날 옥내의 의료시설로는 이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의사를 둔 예도 있었다. 최근에도 「육전조례」 중에서 ‘수급된 죄인 가운데 병독자가 있으면 월령(月令)으로 하여 모양과 증상을 갖추어 형조에 보고하지 말고 보방하고, 중죄라면 즉시 상당한 약물로서 구료하라. 등등’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의 길은 열려있었 지만, 직접 치료 이외 옥내의 일반위생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임하였다. 그래서 옥내의 불위생상태는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만약 하루 아침 에 전염병 등이 침입하는 일이 있는 때는 순식간에 창궐이 극에 달하여 사망자가 속 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때를 만나 방역의 방법도 없고 또한 그것을 종식시키 는 전망도 마련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중병자는 이들을 보방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또는 비상 해방과 같은 조치를 취한 적도 있었다. 본래부터 위생사상 등이 아직 발 달되지 아니한 시대에는 당연하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 최근 즉 1908년 감옥관제 실 시 무렵까지는 옛날 그대로의 위생상태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경성 종로감옥의 감옥의로 최초로 취임한 다카토 만지(高頭萬治)<sup>38)</sup> 의 취

38) 그가 의사로서 취임한 것은 신제실시 시행전에 감옥이 아직 경무청 소속의 무렵이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의 무에 일본인으로 종사한 효시였다.



임 당시 목격한 이야기에 의하면 동 감옥에는 세탁, 목욕<sup>39)</sup>, 이발 등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변기 설비가 있는 곳은 여수(女囚)실 하나뿐이었고, 남감(男監)에는 내옥과 외옥에 공동화장실 각 한 곳의 설비는 있었지만 언제부터가 크게 부서져 있어 전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방 앞 배수구에 방뇨방변을 하였으며, 정제된 오물은 비가 오기를 기다려 흘러버리기까지 청소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또 취사장 등에도 음식물에 무리지어 있는 푸른 파리는 수백수천 마리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식기에 가득 채워져 참먹으로 보일 정도였으며, 어느 곳에서 어느 곳까지도 그 불결한 점은 실로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감옥 내에는 코를 막을 수 밖에 없는 듯한 취기(臭氣)에 방치되었고, 석충(蝨蟲)<sup>40)</sup>은 기둥과 벽의 틈 사이는 말할 것도 없었으며 계구나 목침(木枕) 속에서까지 서식하였고 재감인이나 역인도 모두 이에 괴로워하였다. 또 환자가 있어도 치료를 하지 않았고, 감염병자에 대한 격리소독 방법도 없었으며, 병사자나 형사자(刑死者)가 있는 때는 즉시 그 시체를 고(藪) 또는 '거적'에 싸고 그 위로 새끼줄로 묶고, 성 밖으로 운반하여 땅속에 묻고 돌아오면 그날 밤에는 개인지 무엇인지가 와서 그 시체를 파내어 간다고 하는 실상이었으며, 여러 일에 대해 전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의 감옥에 있어서는 어떠하였을가는 실로 상상에 맡긴다. 그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급성감염병 이외 열사병(熱射病)이나 괴혈병(壞血病)이 계속 일어나, 연이어서 사망자가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고가 잇달아 법무 대신에게 올라왔다. 당시 재감자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때마침 그 무렵의 일이지만, 각지의 감옥에는 거의 유행처럼 반옥(反獄), 파옥(破獄) 등이 빈발하여, 하루하루 불온한 상세(狀勢)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지만, 주된 원인은 재감자가 고백한 바에 따르면 불위생상태에서 오는 고충(苦衷)을 벗어나려고 폭거(暴舉), 도주를 감행하여 만일의 요행을 바라고 나간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태도 신감옥관계 실시 후에는 각 감옥에 감옥의(監獄醫)를 배치하고 열심히 보건시설의 개선에 대응하였기 때문에 얼마 안되어 그러한 상태를 일신하기에 이르렀다.

#### 라. 교화(教化)

옛날의 행형은 보복과 징계가 목적으로 중점을 위하(威嚇)에 두어 왔고, 범인의 교화 등은 전혀 안중에 없었다. 따라서 행형적 시설 중에도 아무런 교화적 작용을 가지는 것은 없었지만 제1차 감옥규칙 제정시 당해 규칙 속에 처음으로 서적간독(書籍看讀)허가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점차 교화적 시설의 일부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해 규칙의 입안에 있어서 틀을 일본의 감옥칙(監獄則)에 따랐던 것에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 단지 서적간독(書籍看讀)제도만을 채용하고 교회제도(教誨制度)를 채용하지 않았던 것은 어떠한 이유에 의한 것일까? 이는 생각건대 조선시대에 불교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려를 비하하는 풍습이 생겨있었고 당시 그러한 경향이 있었던 점에서 교회제도(教誨制度)를 채용하지 아니한 것 같다. 신감옥관계 중에 전옥(典獄) 이하 간수, 여감 취체(取締)에 이르기까지 조직상 필요한 직원은 모두 이를 두었으나 오직 교회사(教誨師)만은 직원 중에서 제외하고 이를 두지아니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예산중에 촉탁(囑託)교회사를 두는 경비는 계상(計上)하였기 때문에 각 감옥에는 촉탁교회사를 채용하여 사실상 재감자 교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종로감옥에는 감옥관계 실시전 아직 경무청 소관시대 무렵부터 촉탁교회사를 두고, 오오타니파(大谷派) 혼간지(本願寺)의 승려 오또하 모또요시(音羽玄哲)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즉 교회제도의 기원이었다. 이어서 통감부 감옥관계에 이르러, 처음으로 관계 중에 전임 교회사를 두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완전히 일본과 같은 교회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39) 목욕탕 설비는 있었다.

40) (역지주) 석충(蝨蟲) 독벌레



### 마. 영치(領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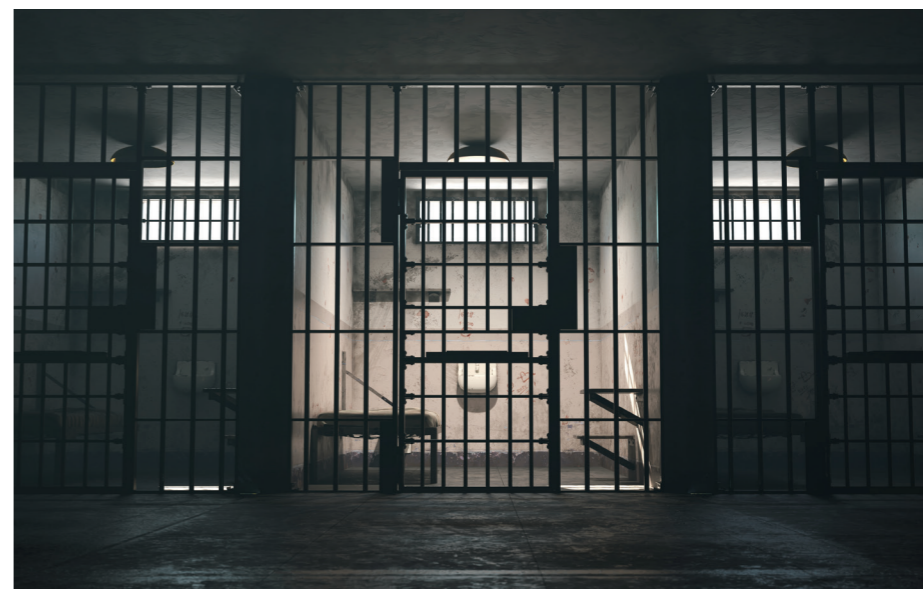
입감자가 휴대하는 재화와 물건을 영치하는 제도는 제2차 개정감옥규칙에서 처음으로 규정을 하기 이르렀지만 실제로는 조금도 실행되지 아니하고 특히 금전에 대해서는 거의 공연하게 옥내에서 소지가 허가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종종 폐해가 발생하여 옥내의 풍기는 극도로 문란하였다. 즉 역인과 고참수로부터의 주구(誅求)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또 대차와 증뢰의 폐해도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 흡연, 음주 등의 악풍이 만연하기에 이르렀고, 이렇게 해서 소지한 금전을 소진하면 역인(役人)<sup>41)</sup>을 끼워 은밀하게 자택으로부터 금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일도 행해져 왔다.

이와 같이 금전을 소지하게 두는 것은 실로 옥내의 온갖 해로운 일의 원천인 까닭에 금전소지를 엄금하는 것은 옥무개선의 선결문제여서 법무당국은 수많은 긴급제도가 필요한 법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앞서 「영치금처리규정」을 제정공포하고 재감자 소지의 금전은 전부 반드시 영치보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의류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도 영치가 필요하여도 금전 정도에는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정은 잠시 후일로 미루어졌다. 이와 같이 금전만을 강제영치한 결과 오랜 폐풍도 여기서 하루아침에 그 근절을 볼 수 있었고 동시에 다른 부분의 개선 실시에도 적지 아니한 편익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 바. 명적(名籍)

구금행형의 확실을 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방식을 정한 것은 없었고, 단지 죄인 명적이라 불리는 명부와 같은 것이 1권 비치되어 있었을 뿐으로 재감자의 신분관계나 행형 경과도 현재 구금되어 있는 인원과 형기만료일 조차도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아니할 정도였다.

그리고 형기만료일은 간수의 수첩에 쓰여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기일이 도래하여도 석방하지 않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기한이 경과해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석방하였다고 하는 것 같은 일도 가끔 있었다. 그래서 전술한 금전 영치의 일에 이어서 실시된 것은 명적사무의 개선이었다. 즉 재감자 신분장부, 입출감부, 방면역부, 재감인명부 등과 같은 주요한 장부를 마련하고 양식 및 취급 예를 일정하게 하



였다. 해당 장부는 소위 구금 및 행형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양식 및 취급방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전 감옥의 업무 및 행형방식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바에서 각 감옥사무는 당해 장부실시 후 서서히 하나의 모습으로 그 면목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상은 신제도 실시 후 행형적 시설이 개선된 것 중, 중요한 사항을 열거한데 지나지 아니한다. 만약 각 감옥 전옥의 권한 내에서 실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실로 낱낱이 들어 말할 겨를이 없다. 그중 계호가 강화된 것, 풍기(風紀)가 바로잡힌 것, 청결이 빈틈없이 된 것 등은 단기간에 격세를 느끼기에 이를 정도로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한 마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시 한국정부의 재정상태, 그 밖의 관계상 물질적 방면의 신설 개수는 단지 곤란하였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는 개선의 흔적을 본 것은 적다. 구태의연한 것 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 전술한 것과 같이 면목을 개선한 점은 매우 많았다. 가능한 한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선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혼시는 각 전옥으로 하여 옥무의 개선수행 상 각별한 궁리와 고려를 추진하도록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앞에서 열거한 작업부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사방을 철조망으로 둘러친 새장과 비슷한 공장을 생각해 내어, 특별한 설비비도 필요로 하지 않고 작업실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에 이르는 등 생각하면 당시 전옥 이하 감옥직원의 노고는 실로 견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41) (역주) 역인(役人) 관아에 소속되어 물건운반과 심부름을 하는 사람.

# 교도소 수용자의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 사회적지지로 조절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신성광

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과 교사

## 목차

- I. 서론
- II. 연구방법 및 내용
- III. 연구결과
- IV. 결과

## 요약

**연구 목적:**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계선 성격특성 및 공격성과의 상관 그리고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사회적지지가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2024년 수도권에 위치한 A교도소의 성인남자 수용자 29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실시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첫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둘째,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의 관계를 사회적지지가 조절하였다. 셋째,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이러한 결과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담 현장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으로 인해 공격성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정서조절곤란 혹은 사회적지지를 포함한 개입을 실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핵심어 : 수용자, 경계선 성격특성, 정서조절곤란, 사회적지지, 공격성, 조절된 매개효과

## I. 서론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은 대부분 반사회적 성격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 품행장애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이 보이는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핵심적인 기저의 공통병리는 바로 공격성으로 알려져 있다(Eckhardt & Deffenbacher, 1995). 공격성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자극적인 행동이나 타인이나 소재를 해치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김무길, 1980; 김효정, 1999).

경계선 성격특성은 공격성 증가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이다(정다연, 임종민, 곽호완, 장문선, 이종환, 2019). 경계선 성격특성은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소인 혹은 성격적 취약성으로 이해된다(Clark, Livesley, & Morey, 1997). 따라서 경계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계선 성격장애를 진단받을 만큼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정동과 대인관계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적 결과를 보인다(Trull, 1995). 경계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은 정서 조절에서의 어려움을 주요 특징으로 가지며, 충동적으로 공격성을 나타낸다(Gardner et al., 2012). 선행연구에서 70% 이상의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된 결과(Newhill et



al., 2009) 및 경계선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신체적, 심리적, 성적 공격 행동과 높은 상관을 나타낸 결과(Sansone et al., 2012) 등을 고려하면 경계선 성격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공격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Linehan(1993)은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서조절곤란이란 정확한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강도가 높은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정서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Arntz et al., 2005). 경계선 성격특성이 높은 이들은 정서적으로 더 쉽게 흥분하며, 그 흥분은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게 한다(Wagner & Linehan, 1999). 정서조절곤란과 경계선 성격특성 사이의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을 보이는 개인은 정서적 고통을 조절하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으며(Strosahl et al., 1992),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이들의 정서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저 요인 중 하나로 정서조절기술의 결여가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다(Chapman et al., 2006). 또한, Glenn과 Klonsky(2009)는 충동 통제의 어려움과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제한적 접근이 정서조절곤란의 하위 유형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에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위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조절곤란은 두 가지 경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oberton et al., 2012). 첫째,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충동적인 행동으로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며, 둘째,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회피하거나 억제하다가 정신적인 긴장이 증가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이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정서를 조절하지 못할 때 내재화된 정서 문제 외에도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Eisenberg et al., 2000). Schwartz & Proctor(2000)는 또래 간 괴롭힘이나 정서조절 능력, 그리고 공격성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희경 외, 2013).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서조절곤란의 요인들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경계선 성격특성, 정서조절곤란, 공격성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들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은 서로 일정한 발달 경로에 상호연쇄적으로 내포될 가능성을 나타내며, 결국 정서조절곤란을 포함하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효과에 따른



개인차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매개효과가 작용하는 ‘과정’과 더불어, 조절효과가 작용하는 ‘개인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와 특정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살피고, 이런 상호작용이 공격성을 감소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주목하였다.

사회적지지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남연주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지지는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유용하며,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 이와 관련하여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지지를 인간이 대인관계를 통해 얻는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심리적 안정과 적응,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이르는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영자(1995)는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ubow & Ullman(1989)은 청소년기에 부모의 지지가 공격성의 수준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황재은·김장희, 2015; Larsen & Dehle, 2007), 가정폭력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에도 사회적지지가 공격적 행동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임이 제시되었다(김나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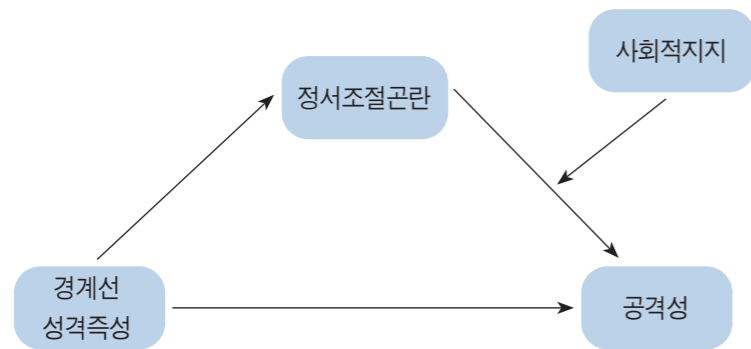
이런 결과를 따르면, 특정 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사회적지지가 완충작용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제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사회적지지가 수행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회적지지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종합하면, 경계선 성격특성은 일반성인 및 아동의 이상행동 원인과 같은 부분에 한정적으로 중점을 두던 선행 연구들의 방향에서 최근 더 나아가 공격성과의 관계, 즉 공격성을 초래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계선 성격특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 있어 이러한 경로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하지만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Fossati et al., 2013; Glenn & Klonsky, 2009; Wagner & Linehan, 1999),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한다는 결과(Eisenberg et al., 2000; Sullivan et al., 2010). 그리고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Gardner et al., 2012; Newhill et al., 2009) 등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정서조절곤란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을 매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감정적 매개변인으로 상정된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적지지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Folkman & Lazarus, 1987; Holohan et al., 1997; Kobak & Screey, 1988; Lazarus & Folkman, 1984) 및 사회적지지가 공격성에 대해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완충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통해서 사회적지지가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사이의 관련성을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계함으로써 이런 관계들을 개념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을, 종속변인으로 공격성을 설정하고,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정서조절곤란이 이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계하였으며(그림 1), 이런 모형이 타당한 개념화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구 가설이다.

- 연구 가설 1.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할 것이다.
- 연구 가설 2. 사회적지지가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 연구 가설 3.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지지의 수준에 의존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 II. 연구방법 및 내용

###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A 교도소의 성인 남자 수용자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자기보고식 형식의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수용동을 방문하여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시행 및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참가자들에 한해서 작성되었고,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때 중지의



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수용자의 이후 처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동의에 체크를 하고 설문작성을 시작하였고 설문 분량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분량이었다. 회수된 설문 총 305부 중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11부를 제외하고 294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자가 294명(100.0%)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85세 이하의 연령 범위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평균 연령은 45.43세(표준편차 14.90세)였다. 학력은 중졸 13.6%, 고졸 59.5%, 전문대졸 6.8%, 대학교졸 18.7%, 대학원이상 졸 1.4%로 고졸이 가장 많았고, 대학교졸, 중졸 순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 1)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PAI)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특성의 측정을 위해 Morey가 개발한 PAI(personality assesment inventory)(Morey,1991)를 홍상환과 김영환(1998)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 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불안정성(BOR-A), 정체감 문제(BOR-I), 부정적 대인관계(BOR-N), 자해(BOR-S)의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합이 클수록 경계선 성격특성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 2) 정서조절곤란 척도(DERS)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란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Gratz & Roemer(2004)에 의해 개발된 정서조절곤란 척도(DER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를 조용래(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 다. 또한, 6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충동통제곤란과 정서에 대한 주의와 지각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 목표지향행동 수행의 어려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3) 사회적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



(1985)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지지 척도의 각 문항을 김연수(1995)가 수정 및 보완하여 제작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구체적으로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지각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98로 나타났다.

#### 4) 공격성 척도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 & Perry(1992)가 개발한 Aggression Questionnaire을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3.0 프로그램 및 SPSS Macro PROCESS를 활용하여 수집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변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PROCESS 4번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PROCESS 14번 모형을 통해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 사이에서의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 III. 연구결과

우선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와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계선 성격특성은 정서조절곤란 및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각각 순서대로  $r = .801, p < .01$ ;  $r = .751, p < .01$ ), 사회적지지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472, p < .01$ ). 아울러, 정서조절곤란은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r = .690, p < .01$ ), 사회적지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479, p < .01$ ).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394, p < .01$ ). 이에 더해,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왜도 및 첨도 또한 제시하였다(표 1). 변수들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 분포를 충족한다고 가정하기에, 표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은 리커트 단위로 환산하여 변수별 수준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경계선 성격특성은 1.0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수준이 3.53으로 가장 높았다.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 (N = 294)

목표 및 개요	1	2	3	4
1. 경계선성격특성	-			
2. 정서조절곤란	.801**	-		
3. 사회적지지	-.472**	-.479**	-	
4. 공격성	.751**	.690**	-.394**	-
평균	1.06	2.16	3.53	2.17
표준편차	0.93	1.16	1.15	1.23
첨도	0.12	-0.57	-0.50	0.16
왜도	0.42	0.30	-0.28	0.81

\* $p < .05$ , \*\* $p < .01$ , \*\*\* $p < .001$ .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을 경유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표 2). 첫째,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경계선 성격특성을 예측변인으로, 정서조절곤란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계수는  $\beta = 0.801$  ( $p < .001$ )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예측변인으로 경계선 성격특성을, 종속변인에 공격성을 설정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계수는  $\beta = 0.751$  ( $p < .001$ )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을 때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beta = 0.554$ ,  $p < .001$ ). 넷째, 경계선 성격특성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beta = 0.247$ ,  $p < .001$ ). 다음으로,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 사이에서의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표 3).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추정치는 .326으로 나타난 바, 이는 경계선 성격특성의 원점수가 1점 상승될 때 정서조절곤란을 거쳐서 공격성의 원점수가 .326점 상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불어, 간접효과 비표준화 추정치 95% 신뢰구간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이 .137과 .520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함을 시사한다.

〈표 2〉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N = 294)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beta$	t	F
1	경계선 성격특성	정서조절곤란	1.396	0.061	0.801	22.836***	521.499***
2	경계선 성격특성	공격성	1.238	0.064	0.751	19.455***	378.497***
3	경계선 성격특성	공격성	0.912	0.104	0.554	8.799***	206.269***
	정서조절곤란		0.233	0.059	0.247	3.923***	206.269***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N = 294)

변수	Effect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간접효과	.326	.099	.137	.520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다음으로,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Aiken et al., 1991)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2단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원점수가 0점인 경우,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조건부효과가 유의하였다( $B = 0.626$ ,  $p < .001$ ). 한편, 정서조절곤란의 원점수가 0점일 때, 사회적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조건부효과도 유의하였다( $B = -0.066$ ,  $p < .01$ ). 정서조절곤란과 사회적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냈다( $B = -0.006$ ,  $p < .001$ ). 이는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지지의 상이한 수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조절효과를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예측변인별 비표준화 회귀계수 및 상수를 활용하여 원점수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회적지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각각 사회적지지의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을 나타내었다(그림 1). 그 결과,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정적 기운기가 상대적으로 점점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는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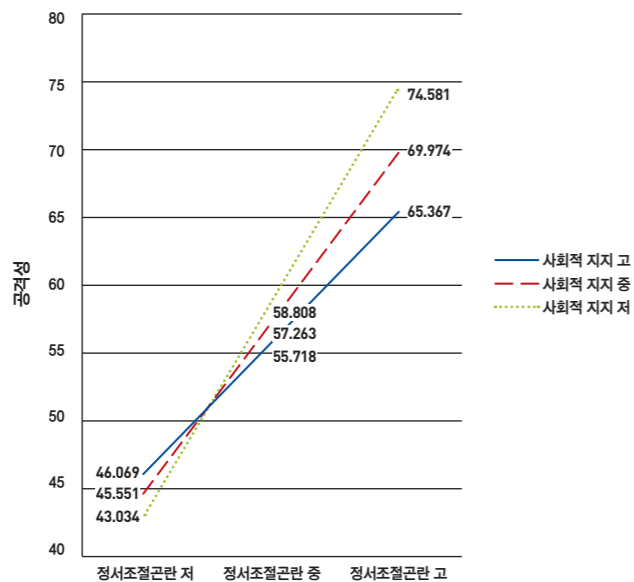
〈표 4〉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공격성에 대한 회귀분석 (N = 294)

	독립변수	B	S.E.	$\beta$	t	R <sup>2</sup>	F
1 단계	(상수)	58.726	0.809		72.584***	0.478	135.136***
	정서조절곤란	0.615	0.045	0.651	13.536***		
	사회적지지	-0.067	0.039	-0.082	-1.708**		
2 단계	(상수)	57.264	0.882		64.955***	0.501	98.883***
	정서조절곤란	0.626	0.045	0.662	14.048***		
	사회적지지	-0.066	0.038	-0.080	-1.711**		
	정서조절곤란 × 사회적지지	-0.006	0.002	-0.156	-3.763***		

\*p < .05, \*\*p < .01, \*\*\*p < .0015

다음으로, 어떤 조건에서의 사회적지지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사회적지지의 어느 영역에서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및 유의하지 않은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상호작용 탐색’이라고 하며, 그 중 단순기울기 분석으로 알려진 특정값 선택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ikent et al. (1991)의 제안에 따라 조절변인의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SD)를 사용하여 평균에서 1 SD 아래와 평균, 그리고 평균에서 1 SD 위에 있는 점수를 보여주는 세 조건에서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지지가 조절하는 효과는 평균에서 1 SD 아래 점수인 조건과 평균 및 평균에서 1 SD 위에 있는 점수의 조건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5).

〈그림 1〉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표 5〉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 (N = 294)

	사회적지지	B	S.E.	t
저수준(M-1SD)	64.878	0.776	0.062	12.572***
중수준(M)	88.340	0.626	0.045	14.048***
고수준(M+1SD)	111.802	0.475	0.058	8.190***

\*p < .05, \*\*p < .01, \*\*\*p < .001.

PROCESS Model 14번 모형 분석을 통해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신뢰구간에서의 하한값이 -.013, 상한값이 -.004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표 6). 추가로, 사회적지지의 상이한 수준에 의해서 각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7).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의 원점수를 사용하여 세 조건, 즉 평균에서 1 SD 아래, 평균, 평균에서 1 SD 위에 있는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에 따른 정서조절곤란에 의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을 경유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사회적지지가 평균에서 1 SD 아래 점수인 조건에서 유의했으며(Effect = 0.537, 95% 신뢰구간: 0.326 ~ 0.766), 사회적지지가 평균 점수인 조건에서도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했다(Effect = 0.340, 95% 신뢰구간: 0.153 ~ 0.535). 반면, 사회적지지가 평균에서 1 SD 위에 있는 점수



인 조건에서는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Effect = 0.144, 95% 신뢰구간: -0.078 ~ 0.359).

〈표 6〉 조절된 매개 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유의성 검증 (N = 294)

변수	INDEX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Boot S.E.	LLCI	ULCI
사회적지지	-.008	.002	-.013	-.004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표 7〉 사회적지지의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N = 294)

	사회적지지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저수준(M-1SD)	64.878	0.537	0.112	0.326	0.766
중수준(M)	88.340	0.340	0.097	0.153	0.535
고수준(M+1SD)	111.802	0.144	0.111	-0.078	0.359

주. Bootstrap 표본은 10,000번 추출하였음. Boot S.E. = 부트스트랩 방법에 의해 산출된 표준오차; LLCI, ULCI =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및 상한값

#### IV. 결과

본 연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성격특성은 정서조절곤란 및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사회적지지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적지지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공격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와 공격성도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70% 이상이 타인에 대해 공격성을 갖는다는 결과(Newhill et al., 2009)와 사회적지지가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결과(남연주 외, 2022)와도 맥을 같이 하며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연구결과들(Sullivan et al., 2010)도 이와 유사하다.

둘째, 정서조절곤란에 따른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더니, 정서조절곤란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며(Fossati et al., 2013; Glenn & Klonsky, 2009; Wagner & Linehan, 1999),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 증가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Eisenberg et al., 2000; Sullivan et al., 2010)와 같은 맥락이다. 즉, 경계선 성격특성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며 정서조절곤란 관련

어려움이 성인의 공격성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 사이를 사회적지지가 유의하게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특정변인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연구결과(황재은·김장희, 2015; Larsen & Dehle, 2007)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통해서 구체적인 조절효과를 확인해보면,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갈수록)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조절곤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상이함을 의미한다.

넷째,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을 경유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사회적지지에 의해 의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곤란이 함께 증가하고, 결국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이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 사이의 일반적인 경로이나, 이러한 경로가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사회적지지의 수준에 의해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간접효과가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낮으며, 평균이고, 평균보다 1 표준편차 높은 사회적지지의 모든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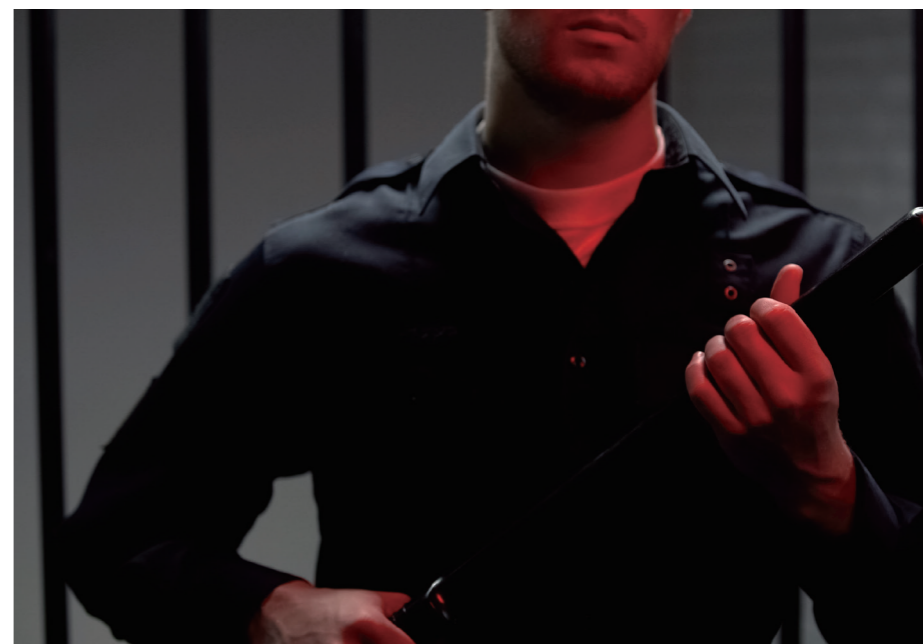


지지가 증가할수록 간접효과의 절대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지지의 거의 모든 구간에서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간접효과의 강도가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연구대상이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될수록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공격성으로 향하게 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높은 경계선 성격특성 경향성을 가진 성인의 공격성 증가 기제, 즉 경계선 성격특성 성향으로 인해 정서조절곤란이 상승하면서 결국 공격성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공격성에 대한 일반적 과정임을 나타낸다. 그와 동시에 사회적지지의 강화가 공격성이 증가하는 과정이 지연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런 과정에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개인차 변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격성으로 인해 불편감을 호소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경계선 성격특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여기서 기인하는 정서조절곤란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보다 향상할 수 있는 개입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하는 것으로 공격성으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는 것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교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안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교도소라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제한된 환경아래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연구로서, 그 대상에 특수성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 이후 수용자에 대한 연구에도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수용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이러한 범죄자들이 보이는 주요한 문제들에 공통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심리적 특성인 공격성이 발현되는 주요한 경로 중 일부를 규명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특성을 규명한 바, 경계선 성격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공격성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격특성이 공격성으로 발달되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을 규명한 바, 심리교육이나 심리치료 장면에서 정서조절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공격성 감소에 유용한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정서조절곤란을 경유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고, 이런 간접효과가 사회적지지에 의해 조절한다는 것을 검증하



였다. 즉, 공격성으로 발달하게 되는 과정과 더불어, 이런 과정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도 함께 설명하는 모형을 설계 및 제시하면서 경계선 성격특성, 정서조절곤란, 공격성, 사회적지지와 같은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매개효과 연구를 통해서 변인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주로 중점을 두고 연구했던 선행 연구들의 범위를 넘어서, 이런 변인의 관련성이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인들에 대한 통합적인 통찰은 공격성을 감소하기 위해 치료에 있어, 보다 상승된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계선 성격특성을 경험한 교정시설에 집금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격성 또한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지지를 활용하여 이러한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의 사이의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공격성으로 향하게 되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 관련 경향을 지닌 수용자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가 되어 발단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경계선 성격특성과 공격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계선 성격특성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경계선 성격특성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변화되며, 이러한 변화가 끝내 공격성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인 의의와 치료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확인하고 연구 질의 개선을 위해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방법은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측정 도구 특성상 설문에 참여한 수용자들이 방어적으로 응답했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편향되어 보고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이나 평가 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1곳의 수용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수용자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체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연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모든 변인을 동시에 측정하는 횡단 설계로 진행되었다. 이는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설계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나예 (2019),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21, 35:1423-1434

김무길 (1980), “공격성 조절을 위한 상담형태에 관한 고찰”, 전북대논문집, 22:83-98.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정 (1999), “청소년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연주·유은식·김한샘·정선영·강근모 (2022),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사회적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9(1):1-28.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수균·권석만(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 Korean Journal Clinical Psychology, 21(2):487-501.

이영자 (1995),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희경·박미란·이지연(2013), “초등여학생의 우정관계 질투정서와 관계적 공격성에서 정서조절능력 과 애착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22(3):207-229.

정다연·임종민·곽호완·장문선·이중환(2019), “사회적배척 상황에 따른 경계선 성격장애 경향군의 공격성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647-667.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1015-1038.

홍상환·김영환(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259-271

황재은·김장희(2015),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진로성숙도, 학습동기 및 공격성의 구조적 관계”, 상담학연구, 16(6):385-408.

■ 외국문헌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 eds.). Washington, DC: Author.

Arntz, A., Klokman, J., & S. Sieswerda(2005), “An experimental test of the schema mode model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6(3):226-239.

Buss, A. H.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452

Chapman, A. L. Graetz, K. L. & Brown, M. Z.(2006). “Solving the puzzle of deliberate self-harm: The experiential avoidance model”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371-394.

Clark, L. A., Livesley, W. J., & Morey, L. (1997), “Special feature: Personality disorder

- assessment: The challeng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1(3):205-231.
- Cohen, S. & H. Hoberman(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99-125.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52-64.
- Eckhardt, C. I., & Deffenbacher, J. L. (1995). Diagnosis of anger disorders. In H. Kassinove (Ed.), *Anger disorders: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27-47. Taylor & Francis.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Shepard, S., Losoya, S., Murphy, B., Reiser, M. (2000).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from atten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71(5):1367-1382.
- Folkman, S., & Lazarus, R. S. (1987). Coping as a mediator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466-475.
- Fossati, A., Gratz, K. L., Maffei, C., & S. Borroni(2013), "Emotion dysregulation and impulsivity additively predic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Italian nonclinical adolescents", *Personality and mental health*, 7(4):320-333.
- Gardner KJ, Archer J, Jackson S. (2012). "Does maladaptive coping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Aggress Behav*, 38(5):403-413. doi:10.1002/ab.21437.
- Glenn, C. R. & Klonsky, E. D.(2009). "Emotion dysregulation as a core feature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order*, 23:20-28.
- Gratz, K. L., Conrad, S. D., & Roemer, L.(2004), "Risk factors for deliberate self-harm among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2:128-140
- Holahan, C. J., Moos, R. H., Holahan, C. K. & Brennan, P. L. (1997), "Social context,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An expanded model with cardiac pati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918-928.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135-146.
- Larsen, D., & Dehle, C.(2007), *Rural adolescents aggression and parental emotional support*. *Adolescence*, 165(42):125-4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 Linehan, M. M.(1993),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 Morey, L. C.(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Newhill CE, Eack SM, Mulvey EP. (2009), "Violent behavior in borderline personality." *J Pers Disord*, 23(6):541-554, doi:10.1521/pedi.2009.23.6.541
- Roberton, T. Daffern, M. & Bucks, R. S. (2012),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1):72-82.
- Sansone, R. A., Leung, J. S., & Wiederman, M. W. (2012), "Five forms of childhood trauma: Relationships with aggressive behavior in adulthood.", *The Primary Care Companion for CNS Disorders*, 14(5)
- Schwartz, D., & Proctor, L. J. (2000),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victimization, Paper presented at ISSBD XI V meeting in Beijing.
- Strosahl, K., Chiles, J. A., & Linehan, M.(1992), "Prediction of suicide intent in hospitalized parasuicides: Reasons for living, hopelessness, and depression." *Comprehensive sychiatry*, 33(6):366-373.
- Sullivan, T. N., Helms, S. W., Kliewer, W., & Goodman, K. L. (2010), "Associations between sadness and anger regulation coping, emotional expression, an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Development*, 19(1):30-51.
- Trull, T. J. (1995).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young adults: 1.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7(1): 33-41.
- Wagner, A. W. & M. M. Linehan(1999),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ability among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mplications for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3(4):329-344.

# 교정공무원의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직무스트레스와 동료관계의 매개효과



김슬기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로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공무원의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동료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 총 220명을 대상으로 조직몰입 척도, 성격5요인 척도, 직무스트레스 척도, 의사소통 척도, 대인관계 척도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성격5요인,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격5요인 중 친화성과 직무스트레스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외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직무스트레스는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직무스트레스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외향성과 개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료관계는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동료관계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 주제어 : 교정공무원, 조직몰입, 성격5요인, 직무스트레스, 동료관계

## 1. 서론

교정공무원은 법무부 산하 소속으로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와 더불어 재사회화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수용자들의 지도 및 감독, 교육, 교화,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공무원의 업무는 그 특수성만큼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은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등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광구, 김학성, 김영곤, 2012; 허경미, 박소은, 2009). 실제로 법무부의 조사 결과 교정공무원 2,056명 중 947명(46.3%)이 '이직에 대해 고민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329명(16.1%)이 '이직을 고민하고 실제로 준비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법무부, 2021).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교정공무원의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조직 내 업무 성과와 조직 구성원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변인으로는 조직몰입이 있다. 조직몰입이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 및 의지를 말한다(Jex & Britt,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몰입은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직무 만족 등을 예측했으며, 조직 내 이직률과 결근율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인수, 김광현, Darnold, 황종오, 유태용, 박영아, 박랑희, 2007; Cooper-Hakim & Viswesvaran, 2005). 교정공무원이 특수한 업무 환경으로 인한 높



은 이직률 및 낮은 직업 만족도,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정공무원이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며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조직몰입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에는 성격 요인이 있다. 성격특성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한 특성으로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으로 나타났다(John, Robins, & Pervin, 2010).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들 중 성격 5요인 이론은 가장 신뢰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다. 성격5요인 이론은 성격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인 다섯 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외 연구자들은 다양한 직종에서 조직 구성원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유태용, 이도형, 1997; 주호진, 장봉진, 명성준, 2017; Syed, Saeed, & Farrukh, 2015). 그 결과 성격5요인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태도 및 조직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이 되며 각 직종 별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성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arrukh, Ying, & Mansori, 2017). 호텔종사자, 교사, 승무원, 보육교사, 경찰 등 국내의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에 반해 현재까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없는 만큼 교정공무원의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와 동료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직업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자극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장세진, 고상백, 강동목,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손동국, 2005). 직무 역할의 모호함, 역할 갈등과 같은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조직몰입을 어렵게 만든다(김혜원, 유재은, 우정희, 2017; 박기관, 2008; 이상구, 이용규, 2007; 이환범, 이수창, 2006; Nart & Batur, 2014). 세계보건기구는 2007년 '교정시설 건강을 위한 WHO 가이드'를 발표하며 교정시설 근로자의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외상 후 스트레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교정공무원에게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윤옥경, 2023; 정혜경, 하영미, 박현주, 2014). 또한, 직장 동료관계는 업무 성과 및 개인의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성지영, 박원우, 윤석화, 2008). 동료관계가 원만할수록 업무 소진 및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감이 향상하고 이는 조직몰입으로 이어질 것이다(김미연, 김민정, 2022; 김창현, 2022; 이상구, 이용규, 2007). 교정공무원은 상사 및 동료뿐만 아니라 재소자와 그들의 가족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직업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적 유대감이 더욱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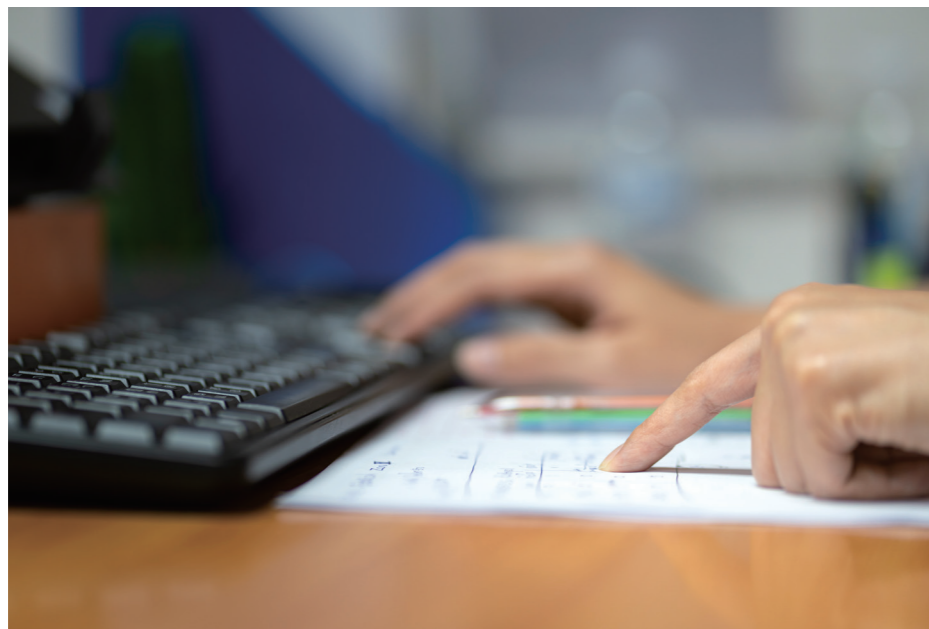
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격5요인과 조직몰입 사이에 직무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성격요인을 반영한 조직관리 및 조직문화 조성,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은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 소속으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교정본부는 크게 교정정책단과 보안정책단으로 구성된다.

교정정책단은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로 구성되며 보안정책단은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가 있다. 즉,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교육, 교화,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교정업무의 집행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들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계도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정공무원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은 다양한 사건 사고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교정통계연보 보고에 따르면 2013년 909건이었던 교정사고는 2018년 1,012건, 2022년 1,5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교정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총 1,527건 중 도주 미수 4건, 병사 45건, 자살 8건, 자살 미수 102건, 화재 4건, 수용자 간 폭행 789건,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 109건, 기타 466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형사입건 송치를 기준으로 파악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은 더 많은 교정사고를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정공무원은 직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재소자 및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고소 및 고발을 당해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2022년 교정공무원 피고소·고발 현황에 따르면 총 1061건 중 95.5%가 무혐의, 죄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수용자의 무분별한 교정공무원 고소 및 고발은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 환경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법무부의 2020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6,740명 중 38.2%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게임중독 5.3%, 알코올 중독 4.1%, 무능감 3.6%, 불안 3.4%, 공격성 3.2%, 우울 2.9%, 비인간화 2.2%, 외상후증후군 2%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법무부가 야간 근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신건강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에서도 가벼운 우울, 중등도 우울, 심한 우울 상태에 속하는 교정공무원이 295명(15.0%)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잠재적 우울 유병률인 6.7%보다 많은 수치를 보고했다.

이렇듯 교정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심리적 어려움은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높은 이직 희망으로 이어진다(윤옥경, 2023). 법무부의 조사 결과 교정공무원 2,056명 중 이직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은 767명(37.5%)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289명(62.5%)은 이직을 고민해 보거나 실제로 준비해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21). 실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교정공무원 의원면직률은 소방직 공무원과 경찰에 비해 2~4.5배 많았다(라광현, 이윤호, 2011). 조직 구성원의 이직 의도는 업무에 대한 집중력 저하, 서비스 질의 저하 등 부정적인 업무 수행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교정업무에 타격을 미칠 수 밖에 없다(김광구, 김학성, 김영곤, 2012; 손아람, 2009).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선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의 가치관과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직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을 가지고, 개인의 업무에 몰두하는 것을 말한다(Buchanan, 1974).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몰입이 높으면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및 몰입도가 높아진다(정윤희, 심원술, 2004). 이는 결근 및 이직률을 낮추며 높은 직무 수행 능력, 효능감, 직무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오인수, 김광현, Todd, 황종오, 유태용, 박영아, 박량희, 2007; Cooper-Hakim & Viswesvaran, 2005). 즉, 조직몰입은 조직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측면에도, 개인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향상해 준다는 점에서 개인의 측면에도 의미가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조직몰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종사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조직몰입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몰입은 연령, 직위, 월 급여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인근, 최재성, 2023; 장선옥, 권준영, 2023). 이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직무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며 조직에서 인정을 받아 직무에 대한 자긍심 및 동기부여가 생겨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근무 환경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위계적 조직 문화는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안전 관리 체계 및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 관리자의 의사소통 및 지지 등 긍정적 근무 환경이 조직몰입을 높였다(권오영, 2023; 유정화, 2023, 장선옥, 권준영, 2023).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김정석, 2023; 임혜원, 2023; 정다운, 김강일, 2022), 심리적 소진이 있다(장두현, 지정훈, 2023). 개인의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심리적 소진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밖에도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및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나리, 박은서, 신혜민, 장준선, 조영일, 2022; 김진경, 이민희, 2023; 홍진숙, 도미향, 2022).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업무상의 갈등, 업무의 모호성, 가족 간의 갈등이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gan, Lambert, Jenkins, & Wambold, 2006). 반면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의사결정의 참여, 직무자율성, 원활한 의사소통, 조직관리 신뢰 등으로 나타났다(Hogan, et al., 2006). 국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업무 특성 중에서는 역할 모호성과 적절한 상관감독 변수가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정이념 중에서는 처벌지향 교정이념보다 교



정교화지향 교정이념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묘연, 김형빈, 2023; 이창한, 2013). 교정공무원이 조직에 몰입한다는 것은 개인의 안정된 수입 및 고용의 안전성을 넘어 교정조직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 된다. 따라서 국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몰입에 대한 실증연구 더욱 필요하다.

## 3.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성격5요인

성격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 중 McCrae와 Costa(1987)에 의해 개발된 성격5요인 이론은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성격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이다(Costa & McCrae, 1992). 성격5요인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인은 성별과 인종, 연령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각 성격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경증은 일상생활의 적응 정도 및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으로 정서적 불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격이다(권석만, 2015). 외향성은 에너지가 외부 세계로 향해서 사교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열정, 사교, 자기주장, 활동성, 자극에 대한 추구,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높다(권석만, 2015). 개방성은 높은 호기심과 창의력, 상상력을 가지고 다양한 자극과 경험에 개방적인 태도



를 보이는 성격으로 다양한 지적 자극을 추구한다(Costa & McCrae, 1992). 친화성은 타인과 협동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협조적이며, 정중함, 인내심, 배려, 이타성과 관련된다(Costa & McCrae, 1992).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정도가 높아 강한 사회적 책임감과 성취 지향적인 성격특성을 말한다(Costa & McCrae, 1992).

연구자들은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격5요인을 통해 직장 내 적응 및 업무 효율성을 예측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국외 연구에 따르면 공립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성격5요인 중 성실성과 개방성이 조직몰입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외향성과 신경증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Syed, Saeed, & Farrukh, 2015). 여러 조직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격5요인 중 외향성과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신경증은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Panaccio & Vandenberghe, 2012). 국내에서도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신경성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원만, 장정호, 2018).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격5요인 중 신경성과 외향성, 친화성이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몰입에, 신경성과 외향성이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지속적 몰입에, 신경성이 조직몰입의 하위요인인 규범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효진, 장봉

진, 명성준, 2017).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직특성보다는 개인의 성격요인이 조직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다(이승현, 김승건, 최재녕, 2004). 이렇듯 각 직종 별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성격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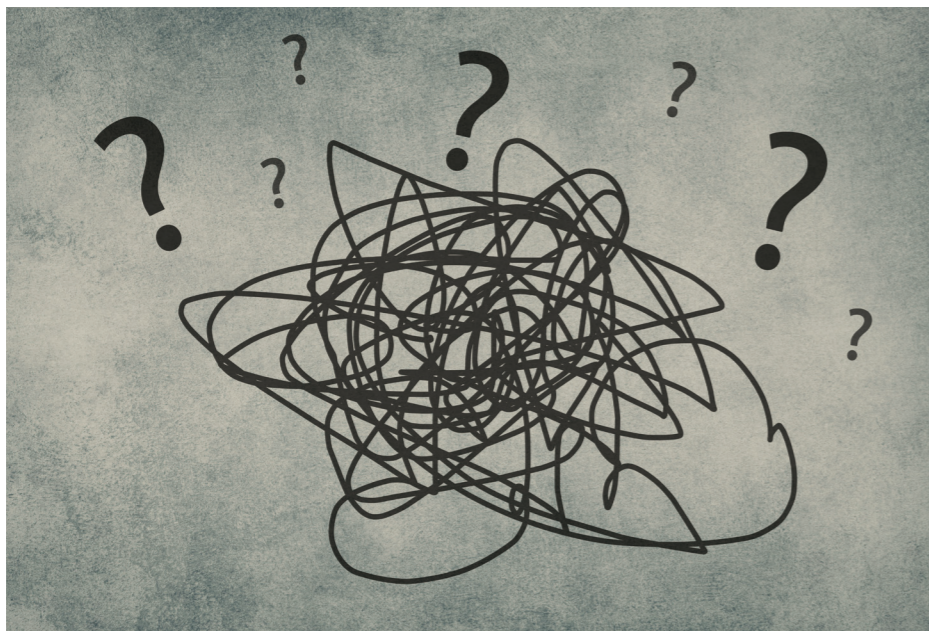
## 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직업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자극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장세진, 고상백, 강동목,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손동국, 2005). 직무스트레스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 간 불일치, 역할 과부하,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 직무 다양성 등의 요인과 관련된다(홍승만, 2000).

교정공무원은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근무하며 수용자들을 24시간 지도 감독 및 교정해야 하는 특수한 직업적 특성 때문에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øller, Gatherer, Juürgens, Stöver, & Nikogosian, 2007). 국내에서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서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50.86~64.5점으로, 소방공무원 44.68점, 사회복지 공무원 51.57점과 비교했을 때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김광훈, 박종익, 이수정, 장광호, 2017; 이준호, 2006; 정혜경, 하영미, 박현주, 2014). 또한 한국인 표본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중앙값이 48.5점인 것과 비교했을 때 교정공무원은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수용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교정공무원의 권익이 약화되어 수용자로부터 폭행, 진정, 고소 등 다양한 형태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박근영, 서광보, 2019).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스트레스는 직무소진을 심화시키며, 직무만족감 및 조직몰입을 떨어뜨리고, 이직 의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박기관, 2008; 정혜경, 하영미, 박현주, 2014; 정현선, 김형근, 2022).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명의식, 일의 의미, 스트레스 대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유재은, 우정희, 2017).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교정공무원의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성격5요인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양경찰구성원을 대상으로 성격5요인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성격5요인 중 친화성과 개방성이 높아질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신경증이 높아질수록 직무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선, 2018). 또한 항공사 객실 승무원





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신경증과 개방성이 높을수록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외향성이 높을수록 조직구조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했으며, 신경증이 높을수록 조직구조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유정화, 김형곤, 2016). 이렇듯 특정 성격이 직무 스트레스로 연결되기보다, 직무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동료관계

동료관계는 대인관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조직 내에서 두 사람 이상이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다(이형득, 한상철, 1995).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대인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Baumeister & Leary, 2017). 동료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업무 과정 중에 갈등 요소를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끝마칠 수 있게 도와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직 내 높은 의사소통 능력 및 의사소통 만족도는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고혜원, 이상호, 2020; 정상섭, 2011).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한 충의와 헌신, 정서적 유대감과 같은 긍정적 동료관계는 조직몰입 향상에 영향을 미쳤으며(박윤미, 전애은, 2020), 부정적 동료관계는 업무 소진으로 이어졌다(김미연, 김민정, 2022).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격과 대인관계 양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욱, 이기용, 2015; 배혜림, 남숙경, 2019). 대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5요인에 따른 관계증독을 살펴본 연구 결과 남녀 모두 신경증이 높을수록 관계증독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외향성과 성실성이 낮을수록 관계증독 성향이, 여학생의 경우 개방성이 낮을수록 관계증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혜림, 남숙경, 2019). 이렇듯 성격과 대인관계의 밀접한 관계는 신경증은 변덕이 심하고 환경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는 점, 외향성은 사교적이라는 점, 개방성은 호기심이 많다는 점, 친화성은 타인과 협동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 성실성은 유능감이 높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다는 성격5요인 개념으로도 대인관계 특성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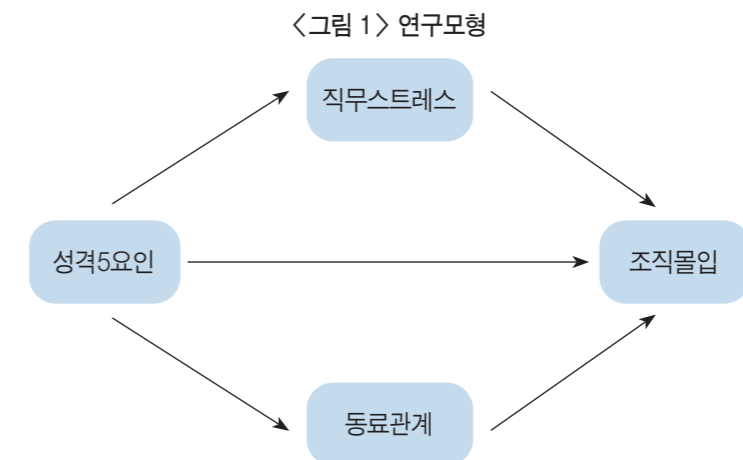
## III. 연구방법

### 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성격5요인, 직무스트레스, 동료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교정공무원의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교정공무원의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료관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의 교정공무원 총 2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누락 및 무작위 응답지를 제외한 총 199부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조직몰입 척도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Allen과 Meyer(1991)가 개발하고 김용운(2017)이 사용한 척도를 김기갑(2019)이 재분류한 것을 사용하였다. 조직몰입은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된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총점만을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1로 나타났다.

### 2) 성격5요인 척도

성격5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Goldberg(1999)가 개발한 IPIP(Internatio Personality Itempool)를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

위요인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5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성격특성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신경증 .89, 외향성 .90, 개방성 .77, 친화성 .79, 성실성 .75로 나타났다.

### 3) 직무스트레스 척도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장세진 등(2005)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직무요구(4문항), 직무자율성 결여(4문항), 직무불안정(2문항), 관계갈등(3문항), 조직체계(4문항), 보상부적절(3문항), 조직문화(4문항)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4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1로 나타났다.

### 4) 동료관계 척도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동료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의사소통 척도, 대인관계 척도의 합을 사용하였다. 의사소통 척도는 김완일, 최은숙(201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논리성(4문항), 정보교환(4문항), 정확성(4문항), 대인감수성(4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16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0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척도는 Lee와 Robbins(1995)이 개발하고 Lee 등(2001)이 개정한 척도를 전명임(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사회적 유대감 척도(Social Connectedness Scale-Revised: SCS-R)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사회적 유도(10문항), 사회적 비유대(10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사회적 비유대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다.

##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위해 먼저 교정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과정에서 문항의 이해 및 답변의 원활함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예비 조사 자료는 연구결과에 포함시켰다.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남부교도소, 안

양교도소,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임의 표집하여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는 조사자가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총 220명이 참여하였다. 질문지 응답에는 10~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응답에 대한 보상으로 커피 쿠폰이 제공되었다. 회수된 220부의 질문지 중 척도 응답이 1개 이상 누락된 질문지와 무작위로 응답한 질문지 21부는 제외하고 총 199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18명(9.0%), 남자 181명(91%)으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30~40세 미만이 85명(42.7%), 학력은 대학 졸업이 152명(76.4%), 혼인 여부는 기혼이 107명(53.8%)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의 직급은 8급 65명(32.7%), 7급 63명(31.7%), 9급 49명(24.6%), 6급 22명(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부서는 보안과가 74명(37.2%), 재직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55명(27.6%), 근무 형태는 사무직이 103명(51.9%), 야간근무 일수는 3일 미만이 123명(61.8%)으로 가장 많았다. 수용자와의 만남은 거의 없음이 45명(22.6%), 근무시간 1/4이 45명(22.6%) 순으로 나타났으며, 흥분한 수용자와의 직면 정도는 거의 없음이 88명(44.2%), 근무시간 1/4이 63명(3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199)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별	여자	18	9.0
	남자	181	91
연령	25세 미만	1	.5
	25세~30세 미만	17	8.5
	30세~40세 미만	85	42.7
	40세~50세 미만	64	32.2
	50세 이상	32	16.1
학력	고등학교 졸업	19	9.5
	전문대 졸업	17	8.5
	대학 졸업	152	76.4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1	5.5
혼인 여부	미혼	88	44.2
	기혼	107	53.8
	기타(별거, 이혼, 사별 등)	4	2.0

구분	내용	빈도(명)	백분율(%)
직급	9급	49	24.6
	8급	65	32.7
	7급	63	31.7
	6급	22	11.1
	5급 이상	0	0
근무부서	사회복지과	22	11.1
	분류심사과	8	4.0
	보안과	74	37.2
	출정과	15	7.5
	심리치료팀	4	2.0
	의료과	10	5.0
	특별사법 경찰팀	12	6.0
	총무과	26	13.1
	민원과	8	4.0
	직업 훈련과	2	1.0
	복지과	7	3.5
	수용 기록과	3	1.5
	교정본부	1	.5
사무과	1	.5	
무응답	6	3.0	
재직기간	3년 미만	40	20.1
	3년 이상~5년 미만	27	13.6
	5년 이상~10년 미만	55	27.6
	10년 이상~20년 미만	49	24.6
	20년 이상	28	14.1
근무 형태	보안 야근(4부제 근무) 일근	48	24.1
	보안과 현업(사동.공장.수용관리팀)	25	12.6
	보안과 비현업(사무직.행정업무)	22	11.1
	사무직(총무.분류.사회복지.출정.수용기록)	103	51.9
야간근무 일수	3일 미만	123	61.8
	3일~5일 미만	35	17.6
	5일~7일 미만	14	7.0
	7일~9일 미만	25	12.6
	9일 이상	2	1.0
수용자와의 만남	전혀 없음	11	5.5
	거의 없음	45	22.6
	근무시간 1/4	45	22.6
	근무시간 1/2	27	13.6
	근무시간 3/4	10	5.0
	대부분 근무시간	34	17.1
	근무시간 내내	26	13.1
무응답	1	.5	
흥분한 수용자와의 직면정도	전혀없음	24	12.1
	거의없음	88	44.2
	근무시간 1/4	63	31.7
	근무시간 1/2	11	5.5
	근무시간 3/4	4	2.0
	대부분 근무시간	6	3.0
	근무시간 내내	1	.5
	무응답	2	1.0

## 2.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주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1단계는 성격5요인의 하위요인을, 2단계는 직무스트레스와 동료관계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 $F = 18.67, p < .001$ )와 2단계( $F = 23.47, p < .001$ )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친화성만이 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beta = .30, p < .001$ ). 2단계에서는 친화성( $\beta = .22, p < .01$ )과 직무스트레스( $\beta = -.34, p < .001$ )가 직무몰입의 20%를 설명했다.

<표 2> 조직몰입에 대한 주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N = 199)

종속변인	독립변인	모형 1			모형 2		
		B	$\beta$	t	B	$\beta$	t
조직몰입	친화성	.36	.30	4.32***	.27	.22	3.27**
	직무스트레스				-.26	-.34	-5.01***
	F	18.67***			23.47***		
	R2	.09			.20		
	$\Delta R2$	.16			.19		

## 3. 교정공무원의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성격5요인 중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조직몰입 및 직무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외향성,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접근모형을 근거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회귀식의 공차한계는 .1 이상이었으며,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검증 결과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 교정공무원의 외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외향성이 매개변인인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beta = -.22, p < .01$ ), 2단계에서 외향성이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 $\beta = .18, p < .05$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직무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eta = -.37, p < .001$ ), 외

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검증 결과에서도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 = -.294, p < .001$ ). 즉, 교정공무원의 외향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완전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외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N = 199)

단계	변인	$\beta$	R2	$\Delta R2$	F
1 독립-매개	외향성→직무스트레스	-.22**	.05	.04	9.60**
2 독립-종속	외향성→조직몰입	.18*	.03	.03	6.38*
3 독립-종속	외향성→조직몰입	.10	.16	.15	18.40***
매개-종속	직무스트레스→조직몰입	-.37***	.16	.15	18.40***

2) 교정공무원의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친화성이 매개변인인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beta = -.27, p < .001$ ), 2단계에서 친화성이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 $\beta = .32, p < .001$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직무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eta = -.33, p < .001$ ),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 $\beta = .23, p < .01$ ). Sobel test 검증 결과에서도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 = 2.95, p < .001$ ). 즉, 교정공무원의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직무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N = 199)

단계	변인	$\beta$	R2	$\Delta R2$	F
1 독립-매개	친화성→직무스트레스	-.27***	.08	.07	15.88***
2 독립-종속	친화성→조직몰입	.32***	.11	.10	23.04***
3 독립-종속	친화성→조직몰입	.23**	.21	.20	25.66***
매개-종속	직무스트레스→조직몰입	-.33***	.21	.20	25.66***

## 4. 교정공무원의 성격 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료관계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성격 5요인 중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조직몰입 및 동료관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료관

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가지 접근모델을 근거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회귀식의 공차한계는 .1 이상이었으며, VIF는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검증 결과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 교정공무원의 외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료관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외향성이 매개변인인 동료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beta = .56, p < .001$ ), 2단계에서 외향성이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 $\beta = .18, p < .05$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동료관계가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eta = .37, p < .001$ ), 외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검증 결과에서도 동료관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 = 3.66, p < .001$ ). 즉, 교정공무원의 외향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동료관계를 통해 완전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외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료관계의 매개효과

(N = 199)

단계	변인	$\beta$	R2	$\Delta R2$	F
1 독립→매개	외향성→동료관계	.56***	.31	.31	86.92***
2 독립→종속	외향성→조직몰입	.18*	.03	.03	6.38*
3 독립→종속	외향성→조직몰입	-.03	.12	.12	13.54***
매개→종속	동료관계→조직몰입	.37***	.12	.12	13.54***

2) 교정공무원의 개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료관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개방성이 매개변인인 동료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beta = .42, p < .001$ ), 2단계에서 개방성이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 $\beta = .24, p < .01$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동료관계가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eta = .30, p < .001$ ), 개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검증 결과에서도 동료관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 = 3.59, p < .001$ ). 즉, 교정공무원의 개방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동료관계를 통해 완전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개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료관계의 매개효과

(N = 199)

단계	변인	$\beta$	R2	$\Delta R2$	F
1 독립→매개	개방성→동료관계	.42***	.18	.17	40.61***
2 독립→종속	개방성→조직몰입	.24**	.06	.05	11.95**
3 독립→종속	개방성→조직몰입	.13	.14	.13	15.30***
매개→종속	동료관계→조직몰입	.30***	.14	.13	15.30***

3) 교정공무원의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료관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친화성이 매개변인인 동료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beta = .59, p < .001$ ), 2단계에서 친화성이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 $\beta = .32, p < .001$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동료관계가 종속변인인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beta = .25, p < .01$ ),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 $\beta = .18, p < .05$ ). Sobel test 검증 결과에서도 동료관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 = 2.65, p < .001$ ). 즉, 교정공무원의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료관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료관계의 매개효과

(N = 199)

단계	변인	$\beta$	R2	$\Delta R2$	F
1 독립→매개	친화성→동료관계	.59***	.35	.34	102.21***
2 독립→종속	친화성→조직몰입	.32***	.11	.10	23.04***
3 독립→종속	친화성→조직몰입	.18*	.15	.14	17.16***
매개→종속	동료관계→조직몰입	.25**	.15	.14	17.16***

## V. 결론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격5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와 동료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성격5요인, 직무스트레스, 동료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성격5요인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친화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직무스트레스와 동료관계를 투입한 2단계에서는 친화성의 영향력이 유지

된 채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른 성격특성보다 신뢰, 솔직함, 이타심, 순응성, 겸양, 온유함으로 타인과 협조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친화성이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승현, 김승진, 최재녕(2004)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에서 친화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같다. 교정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봉사정신이 중요하므로 친화성 성격을 가진 교정공무원일수록 조직몰입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은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감 저하나 이직 의도, 직무탈진 등 업무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광현, 이윤호, 2011; 정혜경, 하영미, 박현주, 2014).

둘째,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외향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교정공무원의 외향성이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직무스트레스를 통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성격보다 외향성이 높은 교정공무원의 경우 조직몰입을 향상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한편 친화성은 조직몰입에 직접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직무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의 친화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직무스트레스가 높으면 조직몰입이 저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정공무원의 친화성은 수용자의 인권 및 인간중심적인 교화를 강조하는 조직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어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이창한, 2013),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을 방해하는 것이다. 성격요인은 조직 차원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스트레스 저하를 위한 근무환경 조정 및 심리 정서적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동료관계는 외향성, 개방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친화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즉, 교정공무원의 외향성과 개방성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동료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친화성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료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성격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를 연구한 안선경, 허경호(2004)의 연구에 따르면 외향성과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적절한 자기 노출 및 위트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개방성과 친



화성이 사회적 자본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정대용, 서장덕,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향성과 개방성, 외향성이 높은 교정공무원의 경우 조직 내 동료 및 상사, 재소자와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조직에 몰입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는 기존의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변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 사기 증진과 효과적인 업무 성과와 관련해 주요한 변인인 직무몰입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직종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몰입에 대한 성격5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성격요인 중 친화성이 가장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선 직무스트레스 저하 및 동료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많지 않은 학계의 상황에서 교정공무원의 처우와 복지 등의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3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남성 교정공무원에 편중되었다. 또한 소규모 편의표집으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과 성비를 고려해 표본집단의 대표성을 높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표본 수의 한계로 교정공무원의 인구나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할 후 조직몰입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

펴보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해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교정공무원의 성격5요인을 고려한 직무스트레스 저하 및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권석만, (2015), 현대 성격 심리학: 이론적 이해와 실천적 활용, 서울: 학지사.

권오영, (2023), 'MZ 세대 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33(3), pp.209-249.

김광구/김학성/김영근, (2012), '교정직 공무원의 이직의사에 관한 실증연구: 소진 (Burnout)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56(0), pp.93-133.

김광훈/박종익/이수정/장광호, (2017), '교정시설 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 신경정신의학, 56(1), pp.20-27.

김기갑, (2019),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따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나리/박은서/신혜민/장준선/조영일, (2022), '청년층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8(3), pp.21-36.

김미연/김민정, (2022), '보육교사의 성격5요인과 동료관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4), pp.819-831.

김용운, (2017),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과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민/고혜원/이상호, (2020), '조직 의사소통 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식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3(2), pp.189-210.

김정석, (2023), '정서지능과 정서적 조직몰입 간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6), pp.147-157.

김종선, (2018), '해양경찰구성원의 성격5요인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연구', 한국경찰연구, 17(2), pp.59-90.

김진경/이민희, (2023), '영유아교사의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조직몰입, 행복감,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8(6), pp.423-448.

김창현, (2022), '청소년수련시설 관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팀동료 교환관계 및 조직몰입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7), pp.843-862.

김현욱/이기용, (2015), '예비초등교사의 성격특성, 대인관계 특성, 교직적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pp.615-634.

김혜원/유재은/우정희, (2017), '직업군인의 소명 의식, 일의 의미,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한스트레스학회, 25(1), pp.30-36

남숙경/배혜림, (2019), '성별에 따른 성격 5 요인과 관계중독의 사이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2), pp.171-190

라광현/이윤호, (2011), '교정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5(1), pp.43-74.

박기관, (2008),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2(2), pp.171-202.

박윤미/전애은, (2020), '상사-부하 교환관계와 조직몰입의 관계에 있어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2), pp.69-82.

법무부, (2020), 교정공무원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분석,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법무부, (2021), 야간(교대)근무 교정공무원 심신건강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서원만/장정호, (2018),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성격 5 요인이 조직몰입과 서비스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레저연구, 30(3), pp.125-139.

성지영/박원우/윤석화, (2008), '개인-환경(조직, 상사, 동료) 적합성이 조직시민행동 및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성의 매개효과 검증', 인사조직연구, 16(2), pp.1-62.

손아람, (2009), '민간보육시설의 근무환경이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소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소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58, pp.81-101.

안선경/허경호, (2004), '개인의 성격과 의사소통 능력 간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8(2), pp.321-345.

오인근/최재성, (2004), '사회복지사의 직무특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분석: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간의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2), pp.91-117.

오인수/김광현, Darold, T. C., 황종오, 유태용, 박영아, 박랑희, (2007), '직무만족, 조직몰입, 성과, 이직의도 간의 관련성: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인사조직연구, 15(4), pp.43-86.

유정화, (2023), '항공사의 위계적 조직문화가 조직몰입, 조직몰입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Process Macro를 적용하여', 인문사회21, 14(1), pp.751-766.

유정화/김형근, (2016),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성격 5요인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근무기간을 조절효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4(3), pp.25-46

유태용/이기범,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pp.61-75.

유태용/이도형, (1997), '다양한 직군에서의 성격의 5요인과 직무수행간의 관계', 기업경영연구, 5(-), pp.69-94.

윤옥경, (2023), '교정사고와 폭력피해 경험이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정연구, 33(1), pp.3-28.

이상구/이용규, (2007),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유발원인과 결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직무특성, 역할혼돈, 동료관계와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1(2), pp.74-86.

이승현/김승건/최재녕, (2004), '조직특성과 개인성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16(4), pp.735-757.

이준호, (2023),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과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20(2), pp.231-254.

이창한, (2013), '교정공무원의 교정이념 지향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정연구, 60(0), pp.135-153.

이형득/한상철, (1995), 인간이해와 교육,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환범/이수창, (2006),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 3(2), pp.83-101.

임혜원, (2023), '국내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8(6), pp.1465-1478

장두현/지정훈, (2023), '헤어 디자이너의 심리적 소진이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9(4), pp.375-387.

장선욱/권준영, (2023),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임파워먼트 매



개효과', 대한치위생과학회지, 6(2), pp.37-50.

장세진/고상백/강동목/김성아/강명근/이철갑/손동국, (2005),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7(4), pp.297-317.

전명일/이희경, (2011),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1), pp.67-83.

정다운/김강일, (2022),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신규공무원과 기존공무원의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2), pp.460-477.

정대용/서장덕, (2015), '성격특성 요인과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자본 확보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0(6), pp.55-80.

정상섭, (2011), '학교조직 내 의사소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24(4), pp.351-374.

정윤호/심원술, (200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의 차이에 관한 연구', HRD 연구, 6(2), pp.95-126.

정현선/김형곤, (2022),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해석수준의 조절효과', 한국항공경영학회지, 20(2), pp.55-85.

정혜경/하영미/박현주, (2014),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2, pp.111-138.

주효진/장봉진/명성준, (2017),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격요인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한 실증 분석: A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7(3), pp.1-27.

최은숙/김완일, (2016), '병사의 의사소통능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3(12), 567-593.

허경미/박소은, (2009),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교정연구, 44(0), pp.87-116.

홍승만, (2000),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간 영향요인의 전략적 활용방안', 배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진숙/도미향, (2022), '간호사의 코칭역량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의 매개효과', 코칭연구, 15(2), pp.5-27.

■ 외국문헌

Baumeister, R. F., & Leary, M. R. (2017).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Interpersonal development*, 57-89.

Buchanan, B. (1974). 'Government managers, business executiv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39-347.

Cooper-Hakim, A. & Viswesvaran, C. (2005). 'The construct of work commitment: Testing an integrative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31(2), pp.241.

Farrukh, M., Ying, C. W., & Mansori, S. (2017). 'Organizational commitment: an empirical analysis of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Work-Applied Management*, 9(1), pp.18-34.

Hogan, N. L., Lambert, E. G., Jenkins, M., & Wambold, S. (2006). The impact of occupational stressors on correctional staff organizational commitment: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2(1), 44-62.

Jex, S. M., & Britt, T. W. (2014). 'Organizational psychology: A scientist-practitioner approach', John Wiley & Sons.

John, O. P., Robins, R. W., & Pervin, L. A. (Eds.). (2010).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Guilford Press.

Judge, T. A., Heller, D., & Mount, M. K. (2002).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3), pp.530.

Khiavi, F. F., Dashti, R., & Mokhtari, S. (2016). 'Association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ersonality traits of faculty members of Ahvaz Jundishapur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Electronic physician*, 8(3), pp.2129.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

McCrae, R. R., & Costa, P. T. (1992).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its relevance to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4), 343-359.

Meyer, J. P., & Allen, N. J. (1991).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1), 61-89.

Møller, L., Stöver, H., Jürgens, R., Gatherer, A., & Nikogosian, H. (2007). 'Health in prisons : a WHO guide to the essentials in prison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Distribution and Sales Geneva 27 CH-1211 Switzerland. 195.

Nart, S., & Batur, O. (2014).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job str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A study on Turkish primary teachers', *European journal of research on Education*, 2(2), pp.72-81.

Panaccio, A., & Vandenberghe, C. (2012).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ediating rol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e st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pp.647-658.

Syed, N., Saeed, A., & Farrukh, M. (2015). 'Organization commitment and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Theory recapitulation', *Journal of Asian Business Strategy*, 5(8), pp.183-190.

## 기록의 의미



정미리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위

분류센터에서 정밀분류심사는 수용생활기록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먼저 기본적인 신상을 확인하고 나면 범죄기록과 수용생활 중 징벌은 없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지 찬찬히 살펴본다. 그렇게 다양한 내용의 기록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내가 만날 수형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점차 그려진다. 그렇게 분류센터에서 각종 기록을 살펴볼 때 각 기관의 분류심사과(분류실)도 함께 바쁘게 움직이는데, 심리검사를 사전 실시하여 판결문 등과 함께 분류센터로 송부하고, 면담 일정을 상의해 당일 면담 과정까지 지원한다.

그렇게 도착한 자료들을 읽고,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직접 면담이다. 면담 중 기록된 부분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더 질문한다. 또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상태도 확인하면서 앞으로 원만한 수형생활을 할 수 있을지, 출소 후 재범가능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해 나간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예측을 위해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아 온 방식을 살피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말이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던가? 정밀분류심사 면담 중 만난 수형자는 하나같이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날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마음의 소리가 함께 따라오지만, 일단 내 마음의 소리는 줄이고 말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본다. 언어보다 비언어가 주는 정보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다 마음의 소리가 견딜 수 없이 커지는 날이면, 나는 수형자의 하소연은 잘라내고, 심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수형생활 중 마음가짐은 어떤지, 하고 싶은 작업은 있는지, 접견은 누가 오고 있는지,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면담을 마무리한다.

그렇게 먼저 수용생활기록부를 읽고, 직접 만나 면담을 마치고 나면 다음은 이를 통합하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기록과 면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수형자 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수형자의 경우, 기록은 타인에 의해서, 면담과 심리검사는 자기 보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크게 확인되는 것 같다. 여기서 나의 역할은 그 차이들을 살피며 목적과 의도가 있는 일치와 불일치를 찾고, 그러한 특성이 범행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는 교정기관에서 일하기 전 민간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했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면담하고 평가해 왔는데, 교정기관 내 평가와 면담은 정신병원이나 다른 민간기관에서의 평가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느낀다. 특히 수형자를 평가할 때는 기록과 관찰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실감하는 중이다. 많은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들이 그 평가 근거를 공식화된 기록에서 찾으라고 권고하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정밀분류심사를 위해 기록은 매우 중요한데, 나에게 기록은 개인적으로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내가 교정기관에서 일하기 전 상상한 교도관은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그 생각이 더 견고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바로 기록에 있다. 정밀분류심사를 하기 위해 살펴본 수용생활기록부에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수많은 교도관들의 수고가 묻어 있었다.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 필수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또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에 불과해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안전이라는 큰 숲을 이루는 작은 나무들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다. 앞으로 나는 아직은 미비하지만 안전한 숲의 쓸모 있는 나무 하나로 노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싶다.



# 코로나19 국가배상 판례 연구



김태환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공익법무관

## 목차

- I. 서론
- II. 원고 측 법률대리인 사건수임 경위
- III. 원고 측 주장
- IV. 피고 측 주장
- V. 법원의 판단
- VI. 결론

## I. 서론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발견·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는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을 때보다 현재는 그 심각성이 훨씬 낮아졌지만<sup>1)</sup> 아직까지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나 코로나19 관련된 국가배상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특성상 원고 측 청구 금액이 비교적 높은 특징이 있다.<sup>2)</sup> 또한 국가가 패소하는 선례를 남기면 별소로 제기된 다른 여러 사건에서도 향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따라서 교정본부는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며 헌법 제29조<sup>3)</sup>에 의하여 보장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자체를 막연히 힐난할 일은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코로나19 국가배상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 중 특히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여 수용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확산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냐가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교정시설은 여타 시설과 달리 다수의 인원이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강제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특성이 있어 전염병 확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신규 수용자의 지속적 입소, 예산상 제약, 수용자에 대한 강제 검사 등의 인권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1) 2023년 5월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되는 4급 감염병임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2) 코로나19 관련된 소송 진행 현황은 2024.7.29. 교정기획과 기준으로 10건 이상 진행 중이며 청구 금액이 보통 5천만 원 이상이며 5억 원 이상인 경우도 허다하다.  
3)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집단감염병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병할 소지가 매우 크다. 또한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용시설 내에서의 집단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처 및 보상에 대한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다.<sup>4)</sup>

그렇다면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집단감염병이 발병하였을 때 수용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적절한 수준의 대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실제 국가배상 판례를 분석하여 수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과연 교정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국가배상 청구 요건 중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정 기간 수용자들의 접견 및 편지 수수를 금지하였던 것과 수용자에게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 II. 원고 측 법률대리인 사건수임 경위

### 1. 사건수임 경위를 알아야 할 필요성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건에서 특히나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사건수임 경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경위에 따라서 판결문의 주문 및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국가배상 사건의 경우 현재 수용 중인 자들이나 과거 수용된 이력이 있는 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에 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 수용시설에서 지냈던 자들<sup>5)</sup>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으나 현재 수용 중인 자들이 어떠한 경위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교정시설에서 사건수임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sup>6)</sup> 그렇다면 결국 사건 당사자 본인이 아닌 그 가족 등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나, 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측이 부담하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sup>7)</sup>

만약 사건수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소송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면 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 각하판결의 경우에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기각판결의 경우라면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2.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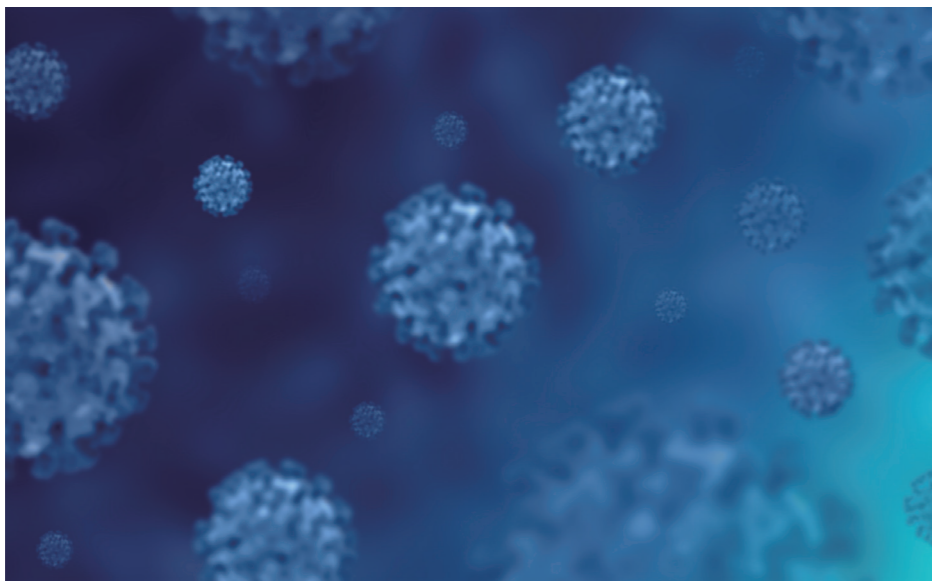
우리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 수여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당

4)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물론 이 경우에도 동일인이 재차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라면 현재 수용 중인 자들에 포함함은 당연하다.

6) 변호사법 제35조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굳이 피고 측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가배상 사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특성이 있어 원고가 많게는 80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 실무상 소송위임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자 본인이 서면 기타 구두로 자유롭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 계속 중 소송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제소 단계에서의 이러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고 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 입증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대리권 수여의 의사가 객관적·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의사가 묵시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3. 구체적 사안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피고 측은 꾸준히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소송 수임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자신의 카페나 블로그에 소송모집 관련 글을 올렸으며 댓글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수용시설과 수용번호 등 인적 사항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원고 측은 수용시설 및 수용번호는 당사자 본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이므로 소송위임이 당연히 증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판례의 일반적인 법리는 소송위임 여부에 관한 입증이 적어도 그 의사를 묵시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면 ‘그 의사를 묵시적으로 추단할 수 있

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외국인들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그 외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sup>8)9)</sup> 법원은 외국인들에 대하여 단순히 친·인척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반면, 내국인들에 대하여는 본인의 관여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이 제출되어 소송대리권 없이 소송을 수행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4. 소결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례는 본인의 관여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소송위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민사소송에서 소송위임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코로나19 사건의 경우에는 수용자들이 집단으로 소를 제기하는 특성상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위 사건에서도 특정인들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경우 원고 측 법률대리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무분별한 소 제기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 III. 원고 측 주장

### 1.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주장 관련

원고 측은 수용시설 내에서의 최초 감염자가 교정직 공무원이었다는 점,<sup>11)</sup> 위 직원들이 수용자들과 접촉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2626 사건

9) 원고 측 81인 중 외국인인 총 6명이었으며 그중 5명에 대하여 각하판결이,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 내국인으로 구별하는 것이 정확한 구분은 아니다(기각판결이 선고된 1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증이 제출되었고, 실주거지 주소도 제출된 사정이 있다).

10) 실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당사자 1인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다수의 인원을 모집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중 몇 명에 대하여서라도 소송비용을 원고 측 법률대리인이 부담케 하는 것은 무분별한 소의 제기를 방지할 방법이 될 수 있다.

11) 가장 이슈가 크게 되었던 동부구치소 직원 중 2명이 20여 일 간격으로 각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다는 점, 신규 수용자가 입소할 때 유증상자에 대하여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고 신규 수용자들을 2주간 격리하면서 최초 1주간만 독거 격리하고 나머지 1주간은 신규 수용자들끼리 다인실에 혼거 격리하였던 점을 주된 근거로 교정시설 내로 코로나19가 유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를 미지급하고 마스크 착용 상태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였으며 초기 확진자 발생 사실을 미공개하였고 과밀 수용 상태를 방치하고 뒤늦게 이송 조치를 함으로써 인하여 집단 감염이 더욱 확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2. 치료 소홀 주장 관련

원고 측은 교정시설에서 의사와의 대면 진료를 가급적 자제시키고 인터폰 등을 통해 진료를 한 점을 근거로 자신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생활치료센터의 실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았고 아침 도시락과 점심 도시락을 정오 무렵에서야 거의 동시에 배식하였으며 배식이 된 도시락도 차갑게 식었다는 점, 당시 몇몇 수용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 3. 접견 및 편지 수수 금지 주장 관련

원고 측은 수용자들의 외부인과의 접견을 금지한 사실, 생활치료센터가 격리 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들의 외부인과의 접견을 금지한 사실, 특정기간 동안 코로나 확진자들의 편지 수신 및 발신을 금지한 사실을 들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관련

원고 측은 당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식적으로 고지해주지 않은 사실을 들어 수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5. 소결

원고 측이 가장 주목한 점은 교정직 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교정시설 내부로 감염병이 유입되었고, 교정직 공무원들과 수용자들이 접촉하는 과정 및 수용자

들이 혼거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 중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지속적으로 위의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 측에 자료 제출 요구, 법원에 대한 구석명신청을 하였다. 교정과 관련된 대부분 정보를 교정본부에서 독점하고 있고 수용자들은 그 특성상 정보를 취합하여 변호사에게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 IV. 피고 측 주장

### 1.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주장 관련

피고 측에서는 최초 감염자인 교정직 공무원은 다음날부터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교정시설의 제한된 공간 및 구조상 다수의 신규 수용자를 전부 장기간 독거 격리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 신규 수용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코로나 검사는 예산상 제약으로 어려웠던 점, 무증상 수용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에 바로 전수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코로나 대응 지침 및 방역 당국의 판단 등에 따라 먼저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직원들과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발열 체크 등을 실시하였던 점, 초과수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그 수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다.<sup>12)</sup>

### 2. 치료 소홀 주장 관련

피고 측에서는 인터폰 등을 통해 진료하고 응급상황 등 필요한 때에만 대면 진료를 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등에 근거한 것이며, 제한된 수용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집단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2) 실제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의 전체적인 수용정원 초과율은 약 16.9%에 그쳤으며, 그 각 수용 거실의 1인당 수용 면적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수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등 참조).

또한, 생활치료센터 온도는 섭씨 20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몇몇 수용자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3. 접견 및 편지 수수 금지 주장 관련

피고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단서 제4호<sup>13)</sup>에 의하여 적법하게 접견이 제한된 것이며 동법 제43조 제1항 단서 제3호<sup>14)</sup>에 따라 편지 수수 등이 금지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V. 법원의 판단

### 1. 국가배상 관련 일반 법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sup>15)</sup>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 확보 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sup>16)</sup>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sup>17)</sup>

### 2. 법원의 판단<sup>18)</sup>

#### 가.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관련

법원에서는 피고 측 항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당시의 방역 당국의 판단 등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고, 국내에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한 2020.1.경부터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여러 대응계획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14) 제43조(편지 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15) 대법원 2021.6.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등 참조

16)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등 참조

17)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

18) 코로나19 사건 관련하여 다수의 언론보도가 되는 등 가장 논쟁거리가 되었던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판례를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8.27. 선고 2021가단5239779).



및 지침을 마련하였으며,<sup>19)</sup> 교정시설이라는 시간적·공간적 한계 및 예산상 제약을 고려하면 당시의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 치료 소홀 주장 관련

법원은 서울 동부구치소의 조치가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선을 통제하거나 분리하고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등에 근거한 것이며, 원고들의 건강이 위와 같은 치료방식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온도는 항상 섭씨 20도 내외로 유지되었으며 그것이 수용자들에게 걱정하지 않은 온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수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여도 교도관이나 간호사들이 찾아오지 않은 사실 역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접견 및 편지 수수 금지 주장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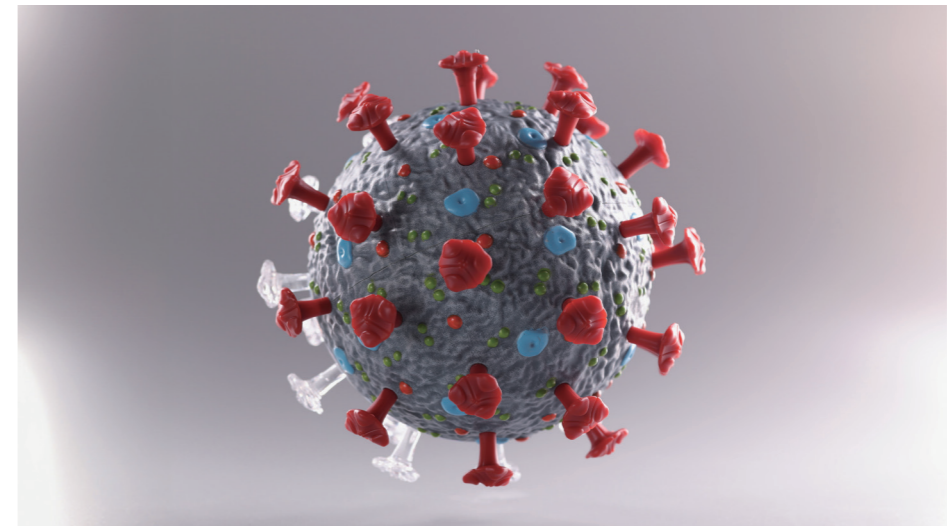
법원은 수용자들의 편지 수신을 금지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접견 및 편지 발신과 관련하여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비교적 짧은 기간<sup>20)</sup>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 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관련

법원은 비공식적으로라도 그 검사 결과를 알려준 사실에 대해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는 없었다고 보았다.

19) 2020.11.25.경 마련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에서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를 3명 이내의 인원이 감염된 1단계, 4명~30명의 인원이 감염된 2단계, 31명 이상이 감염된 3단계로 나눈 후 3단계의 경우 '격리 수용동 2개 이상 운영', '코호트 격리', '격리 수용동 추가 확보를 위한 조절 이송', '필요 최소인원 고정 근무' 등 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20) 서울 동부구치소와 이 사건 생활치료센터가 2020.12. 하순경부터 2021.1.14.경까지 코로나 확진자들의 편지 발신을 금지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2주~3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 3. 소결

원고 측에서는 소송 진행 중에 계속하여 법원에 구석명신청을 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밀접 접촉자, 비접촉자, 확진자 분류기준, 수용 거실 및 이동 경로, 동일 거실 수용자 및 감염 여부, 각 수용동의 분류 및 지정, 해제 시기에 관하여 석명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는 석명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는 원고 측에서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과 입증을 촉구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과도하게 요청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법원에서는 수용 거실 지정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구석명신청에 대하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선행하는 다른 재판의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재판부도 있었고 원고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며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다. 원고 측에서는 수용시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교정본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으나, 법원은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라 피고 측이 이에 적극적으로까지 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국가배상책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법무부가 수용자들에 대하여 방역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였다고 본 결정적인 이유는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시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랐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VI. 결론

코로나19 국가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실무상 원고 측의 소송위임 준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정시설에서 감염 당시의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배상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실제 아직은 코로나19 국가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측이 패소한 사안이 없어 보인다. 이는 교정시설에서 당시의 방역 대책을 적절히 잘 따르기 위하여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 측에서 이렇다고 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만약 원고 측에서 구체적·객관적으로 교정시설 내에서의 집단감염병의 감염 및 확산 경위에 대한 입증을 명확히 해낸다면 소송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렇기에 더욱이 합리적인 원칙에 입각한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sup>21)</sup>

판례는 일관되게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 확보 의무의 내용과 정

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다.<sup>22)</sup>

즉, 교정시설의 관리자는 수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나 그 내용과 정도는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국가배상 사건과 관련한 개별적인 사안에서 법원은 교정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당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랐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향후 수용시설 내 감염병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청구되었을 때 위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용시설 내부에서 집단감염병이 확산되었을 때 수용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나 분리수용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무원이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는 감염병 유행 당시의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를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밀 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지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혹은 과밀 수용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미래에도 위와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우려가 있다.<sup>23)</sup> 즉, 헌법재판소의 과밀 수용 위헌확인 결정일인 2016.12.29.로부터 7년이 넘게 지난 2024년 현재 혹은 그 이후에 과밀 수용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였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다면 집단 감염으로 인한 국가배상에서의 국가의 과실은 과거보다 더욱 크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sup>24)</sup>

21) 국내에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한 2020.1.경부터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여러 대응계획 및 지침을 마련한 것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필요하다.

22)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등 참조

23) 헌법재판소 2016.12.29.자 2013헌마142 결정[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보충의견에서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제곱미터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4) 헌법재판소 2016.12.29.자 2013헌마142 결정에서 과밀수용의 문제점 중 하나로 '교정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게 되어 수형자간에 질병이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를 지적한 바 있다.

#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관련 딜레마와 시사점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목차

- I. 서론
- II.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배경과 실태
- III.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관련 딜레마
- IV. 시사점 및 결론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분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 주제어 : 미국 소년범, 미국 소년범 무관용주의,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소년범 처벌, 소년형사법원



## 1. 서론

2023년 10월 논산의 중학생에 의한 40대 여성 납치 및 성폭행 사건은 소년범죄가 성인과 또래 집단 등 대상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더 흉포화 양상을 보인 경우로 시민들의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법률신문, 2023. 11. 11.). 이에 따라 현행법상 소년사범에 대한 관대한 형사정책이 소년범죄의 흉악성에 영향을 준다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도 성인범에 준하는 구금형을 적용하는 등 무관용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중앙일보, 2023. 11. 1.).

실제로 2022년에 성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2%가 소년범 처벌 강화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화에 찬성하였다(중앙일보, 2022. 11. 26.). 법무부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를 추진하였으나 법제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반대에 직면해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조선일보, 2022. 10. 27.). 학계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화가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무엇보다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사법적인 관점이라는 지적이 있다(원혜욱, 2022).

반대로 2021년 일본이 18~19세의 소년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할 것과 같이 보다 엄격하게 소년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도 있다(홍태석, 2022; 김종두, 2023), 즉 1953년 이후 70여 년이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묶어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년범 처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미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 중이다. 즉 미국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소년범에 대해 무관용주의적((Zero tolerance) 소년사범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무관용주의적 접근 방식이 소년범죄를 억제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반대로 청소년 범죄자의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비윤리적 사법처우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Woods, 2021). 특히 각 주정부의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의 정신에 반한다는 판결로 맞서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Austin, 2021).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무관용주의적 소년범 처벌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소년범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II.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배경과 실태

### 1.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배경

무관용주의 정책(Zero tolerance policies)은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1981~1993)의 마약과의 전쟁 캠페인(U.S. drug interdiction) 중에 시작된 연방정부의 마약 규제정책으로 착안 되었다(Vossekuil, Fein, Reddy, Borum, & Modzeleski, 2002).

무관용주의 정책에 따라 불법 약물의 소지, 수입 또는 수출은 금지되며, 모든 민사 및 형사 제재를 받게 되었다. 즉, 무관용주의 정책은 마약통제를 기존의 마약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마약 사용자를 표적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불법 약물 사용자가 약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다양한 약물범죄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약물 사용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그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허경미, 2018).

무관용주의 정책은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매와 수요자들을 처벌하면서 출발했지만, 국가마약정책위원회는 마약 없는 미국에 관한 백악관회의와 함께 1988년에 모든 연방마약단속기관이 미국의 모든 입국 지점에서 무관용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United States Congress, 1988). 이에 따라 미국 해안경비대와 미국 관세청은 해상과 모든 국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마약 소지 사례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정기 순찰과 검사 과정에서 대마초나 불법약물이 발견되면 선박이나 자동차가 압수되고, 승객이나 선박주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범죄 혹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구금되거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무관용주의 정책은 사업장에서도 적용되었다. 즉, 사업주는 직원, 채용예정자에게 약물테

스트를 하고, 약물사용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그런데 1993년에 제정된 삼진아웃법(Three-strikes-and-you're-out” laws)은 무관용주의 정책을 마약범에서 폭력범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 법은 마약범죄를 포함한 폭력범의 경우 2회 전과가 있는 경우, 3회부터는 구금형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종신형에 이르기까지 처벌토록 하였다(Clark & Henry, 1997).

또한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3월 31일 비행 청소년에 대한 무관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총기금지법(Gun-Free Schools Act of 1994: GFSA)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비행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제재와 법집행기관의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였다(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2015; Skiba, 2014).

학교총기금지법은 연방보조금을 받는 모든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었다(Gun-Free Schools Act of 1994, sec. 8921(3)(d)). 즉, 공립학교의 경우에만 비행 청소년에 대한 무관용주의 정책이 적용되고, 사립학교에는 학교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이 총기를 가지고 등교하는 경우 해당 지방교육기관의 최고관리책임자가 재량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한 학교장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정학 처분을 명하며(Gun-Free Schools Act of 1994, sec. 8921(3)(d)), 학교장은 직접 총기휴대 학생을 형사사법기관 및 소년원 등에 이송할 수도 있으며(Gun-Free Schools Act of 1994, sec. 8922(a)), 장애 학생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였다(Gun-Free Schools Act of 1994, sec. 8921(3)(c)). 그런데 학교에서의 무관용주의 정책은 학교 내외에서의 다툼이나 교사에 대한 반항, 잦은 결석 및 과제물 미제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감기약 등을 가져오는 경우 등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학교장은 학교경찰에 이러한 행위들을 신고하고,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소년원에 이송되거나 수사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공식적인 비행경력 또는 범죄경력 청소년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Cornell, 2020).

청소년에 대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1999년 4월 20일에 발생한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Columbine High School Massacre) 사건으로 더욱 강화되었다(FBI, 1999).<sup>2)</sup> 이 사건은 학교총기금지법을 강화하여 소년사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Vossekuil, Fein, Reddy, Borum, & Modzeleski, 2002).

1) 직장에서의 약물 테스트 결과 약물 사용자라고 밝혀질 경우 당사자를 해고하거나 최초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미수 정헌법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소송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정기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을 공공기관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약물사용자에 대한 무관용정책을 지지했다. U.S. Supreme Court, in *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 v. Beazer*, 440 U.S. 568, 99 S.Ct. 1355, 59 L.Ed.2d 587 (1979).

2) 콜로라도 주 리틀턴의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999년 4월 20일 이 학교 학생인 Eric Harris와 Dylan Klebold가 총기를 난사, 학생 12명, 교사 1명을 살해하고 2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둘은 현장에서 자살했다(FBI, 1999).



## 2. 미국의 소년범 사법처우 실태

### (1) 소년범 현황

미국 청소년사법및범죄예방사무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은 소년법원 데이터 아카이브(National Juvenile Court Data Archive)에 17개 주의 900여 개 카운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0년에 태어나 소년법원에 기소된 적이 있는 청소년 161,057명을 대상으로 소년범 실태 조사를 발표하였다(Puzzanchera, 2022).

이에 따르면 소년법원에 기소된 소년범죄는 중범죄에 속하는 강력범죄와 비폭력범죄 그리고 경미범죄 등으로 구분된다(Puzzanchera, 2022, 14). 중범죄의 강력범에는 살인, 상해, 성폭행, 강도, 특수폭행 등이, 비폭력 범죄에는 절도, 침입절도, 자동차 절도, 방화, 마약이나 무기거래 등이 포함된다. 경미범죄에는 단순 폭행, 단순절도, 단순약물범죄, 무질서한 행위, 장물범죄, 공공기물파손행위 뿐만 아니라 지위비행(가출, 통행금지 위반, 통제불능, 음주, 무단결석)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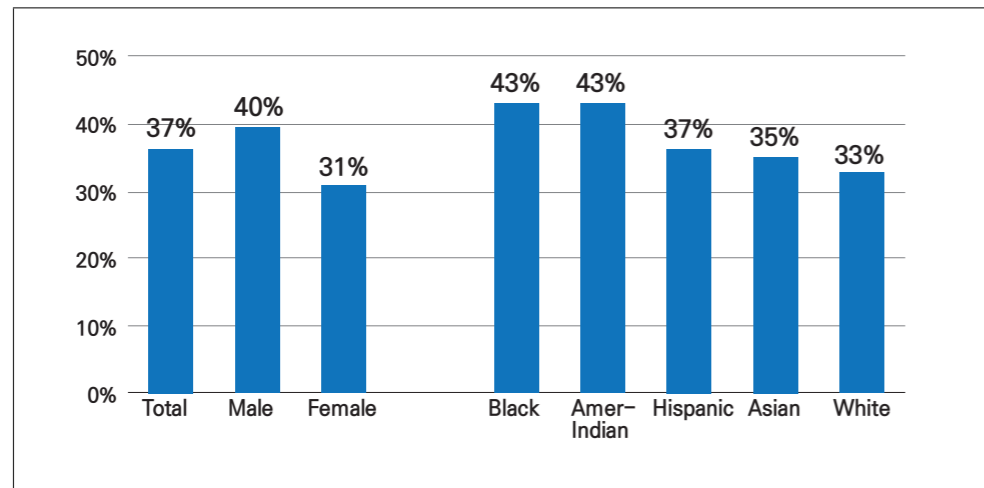
최초 소년법원에 기소되어 판결 심리 등 정식 절차가 진행된 소년범은 63,0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41% 24,944명이 확정판결을 받았다(Puzzanchera, 2022, 15-16). 이들 중 54%는 기소 당시 15세 이상이었고, 4분의 3은 남자였다. 인종별로는 백인 41%, 흑인 32%, 히스패닉 22%였다. 비행 유형별로는 폭력범 36%, 재산범 29%, 약물 13%, 공공질서 11%, 지위비행 10%로 나타났다. 4회 이상 기소된 상습적 비행 청소년은 14%이고, 이 중 최소 1회 강력범죄 기소 전과를 가진 경우는 전체 기소 청소년 중 4%를 차지하였다. 4회 미만 기소

된 비상습적 비행 청소년은 86%이고, 이 중 최소 1회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는 전체 기소 청소년 중 8%를 차지하였다.

**(2) 소년범 재범 현황**

소년법원 기소 청소년의 재범 여부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37%가 성년이 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소년법원에 다시 기소되었다(Puzzanchera, 2022, 8). 나머지 101,739명 63%는 더 이상 재범 기록이 없다. 2회 이상 기소된 청소년은 성별로는 남자청소년 71%, 여자청소년 29%이었다. 최초로 기소된 청소년의 인종별로는 백인 39%, 흑인 35%, 히스패닉 22%로 그 뒤를 이었다. 거의 4명 중 1명 24%의 청소년이 최초 기소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며, 10명 중 거의 4명 39%가 13세 또는 14세이었다.

〈그림 1〉 2회 이상 소년법원 기소 현황



자료: Puzzanchera, 2022, 8.

그런데 2회 이상 소년법원에 기소되는 경우는 전체 37%이고, 남자 청소년 41%, 여자 청소년 30%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흑인 및 아메리칸 인디언이 각각 43%, 히스패닉 37%, 아시안 35%, 백인 33%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재기소되는 경우 지위비행 17%, 폭력범죄 27%, 재산범죄 31%, 약물범죄 11%, 공공질서위반 13% 등으로 83%는 범죄를 행하였다. 재기소되는 청소년의 거주지역은 도시 89%, 농촌 10% 등이며, 생활수준은 지속적 빈곤상태(persistent poverty)가 39%로 나타났다.

**(3) 소년범의 구금 처우 현황**

미국의 전국 소년법원에 의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되거나 형의 선고를 받



아 구금하는 등의 처분을 집행하는 시설배치(Residential placement)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다. 시설들은 공공기관(주정부, 지방정부)이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의 위탁으로 민간교정회사영리 혹은 비영리로 운영한다(Puzzanchera, Hockenberry, & Sickmund, 2022, 178-179). 시설 중 구금센터(Detention center)는 법원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대기하거나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임시보호하는 시설이며, 훈련소/장기보안시설(Training school/long-term secure facility)은 구금형 판결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훈련학교, 청소년 교정시설, 청소년개발센터 등으로 불린다.

분류센터(Reception or diagnostic center)는 법원에서 구금형을 선고받은 청소년을 적절한 교정시설에 배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선별하는 단기보호시설이다. 그룹홈/중간주택(Group home/halfway house)은 법원에서 장기적으로 중간주택에 머물며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을 갖는 등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명령을 받은 비행청소년이 머무는 장기보호시설이다. 주거형 치료센터(Residential treatment center)는 약물남용, 성범죄자, 정신장애 범죄 청소년들에게 주정부의 비용을 지원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는 보호시설이다. 목장, 임업 캠프, 황야 또는 해양 프로그램 또는 농장(Ranch, forestry camp, wilderness or marine program or farm)은 비행 청소년의 집과 먼 지역의 시설에서 머물며, 목장이나 임업 등의 체험과 작업을 통하여 행동습관을 교정하는 주거형 시설이다. 가출·노숙자 쉼터(Runaway and homeless shelter)는 가출이나 노숙 청소년에게 일시적으로 머물 곳을 제공하며, 법원의 처분에 따라 장기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년범 등이 어느 시설에 입소하는 가는 형사사법기관이 대상소년을 어떻게 분류

하고 처분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소년범이 성인 형사법원에 기소된 경우(Detained youth)와 소년법원에 기소된 경우(Committed youth)에 따라 이들의 시설 입소도 그 경로가 차별화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처우시설에 입소한 소년 35,485명 중 구금형 시설 입소자는 14,344명 40.4%, 비구금형 시설 입소자는 21,141명, 57.6%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죄 및 비행은 <표 1>과 같다.

<표 1> 소년사범의 시설별 수용 현황

구분	구금형 시설	비구금형 시설
계(%)	100	100
대인범죄 <sup>3)</sup>	45	43
재산범죄	20	21
약물범죄	3	5
공공질서범죄	13	14
준수사항 위반	16	12
지위비행	2	5

자료: Puzanchera, Hockenberry, & Sickmund, 2022, 186. 재구성.

그런데 2019년 구금형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의 81%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9%는 장기보안시설에, 6%는 주거치료센터에 수감되었다. 비구금형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의 38%는 장기보안시설에, 33%는 주거치료센터에 배치되었다. 그룹 흡과 구치소는 각각 11%를 수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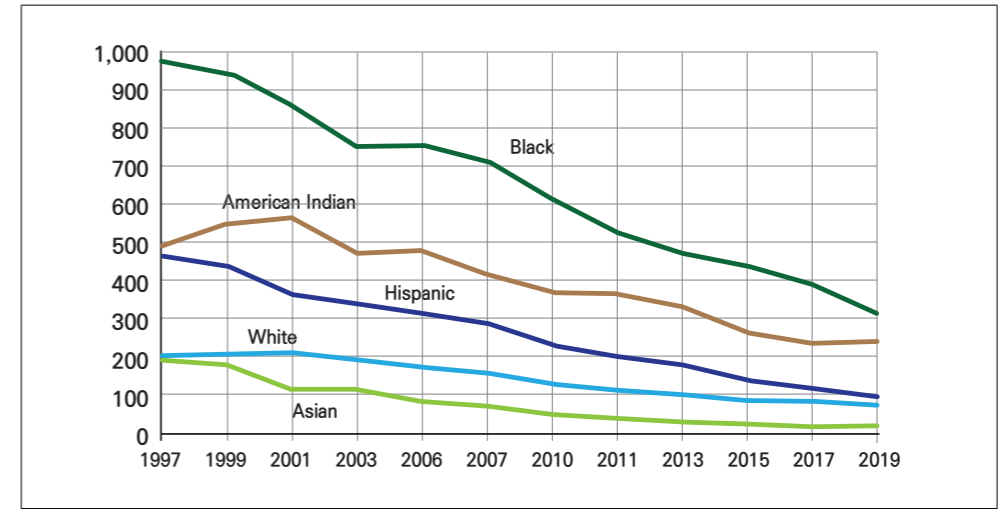
#### (4) 소년범의 인종별 차이

1997년 이후 모든 인종 그룹의 시설처우 선고 비율은 감소했지만 흑인, 인디언, 히스패닉의 비율은 여전히 백인 청소년의 비율보다 높다(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9).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 중 청소년의 인종별 비율은 백인 52%, 흑인 14%, 히스패닉 25%, 인디언 1%, 아시안 5%, 혼혈 4% 등이다. 그런데 2019년을 기준으로 교정 처우 시설에 수용된 청소년의 인종별 비중은 흑인 41%, 백인 33%, 히스패닉 20%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미국 전체 10~20세 흑인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그림 2>와 같이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2019년까지 이어져 오는 현상으로 전체 미국 인종별 소년인구 비중에 비해 흑인 청소년의 시설처우 비중은 항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3) 대인범죄에는 살인, 성폭력, 강도, 상해, 폭행 등이, 재산범죄에는 강도, 절도, 자동차절도, 손괴, 방화 등이, 약물범죄에는 마약류범죄, 기타 약물사범 등이, 공공질서범죄에는 무기거래, 기타 공공질서범 등을 준수사항 위반에는 보호관찰, 가석방, 유효한 법원 명령 위반 등이 포함된다.

<그림 2> 구금형 시설 소년범의 인종별 현황



자료: Puzanchera, Hockenberry, & Sickmund, 2022, 192.

이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구금형 시설 소년범의 인종별 범죄 현황

구분	계(%)	백인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아시안	혼혈
계	100	33	41	20	2	1	2
대인범죄	100	30	44	21	2	1	2
재산범죄	100	32	45	17	2	1	2
약물범죄	100	46	25	23	2	1	3
공공질서범죄	100	34	40	21	2	1	2
준수사항위반	100	33	36	25	2	1	3
지위비행	100	59	23	9	2	1	4

자료: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3.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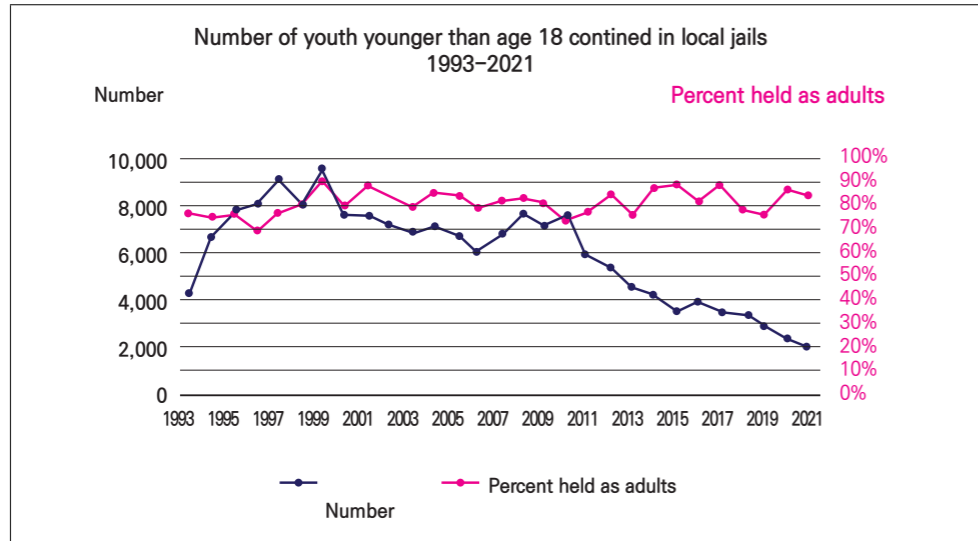
#### (5) 소년범의 성인 교도소 구금

1993년을 기준으로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18세 미만 소년범은 일일 약 4,300명이던 것이 1999년 최고 9,500명으로 증가한 후 2006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2010년까지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0년 이후 이 수치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하여 2021년을 기준으로 2,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1993년에 비해서는 53% 정도 낮아진 것이지만, 미국 전체 교도소 수용인구의 약 0.5% 정도에 해당한다.

그런데 소년범들이 성인 교도소에 수용된 것은 최초에 이들이 형사법원에 기소되었거나, 소년법원에 기소되었지만, 법원이 형사법원으로 이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범죄 당시 혹은 이첩 당시 연령은 18세 미만으로, 18세 미만이라도 성인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둔 개별 주법에 따른 결과로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Dragomir, & Tadros, 2020).

〈그림 3〉 성인 교정시설에 구금된 소년범 현황



자료: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3.

성인 교도소에 구금되는 소년범은 학교교육, 정서 지원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의 참여기회가 등에 제약이 있다(Wolcott, & Steven, 2017). 그리고 성인 수용자들이나 교도관 등으로부터 폭행, 성적 학대 등을 당하는 경우가 소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소년범 보다 더 많고, 특히 이로 인한 정신장애 위험에 더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Liwanga, 2021).

### III.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관련 딜레마

#### 1. 소년범 처벌을 둘러싼 충돌과 갈등

미국의 여러 주정부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적 처벌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수정헌법의 인권 이념에 반한다는 판결로 이어져 그 갈등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 역시 무관용주의적 소년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소년 형사정책에 대한 법원과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Moyer, Warren, & King, 2020). 대표적인 판결례를 살펴본다.

##### (1) 정신장애 소년범에 대한 사형 판결

연방대법원은 2002년 6월 20일 앳킨스 대 버지니아 판결(Atkins v. Virginia, 536 US 304

(2002))에서 정신장애 소년범의 사형 판결은 수정헌법 제8조의 잔혹한 형벌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버지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sup>4)</sup>

연방대법원은 “정신장애 소년범에 대한 사형이 범죄의 억제 또는 피해자나 일반인의 응보 정서를 충족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인식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정의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수정헌법 제8조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장애 여부는 배심원이 아니라 전문의사의 의학적이고, 객관적 임상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수정헌법은 정신지체 범죄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18세 미만의 정신장애 소년범에게 사형판결을 내리면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한 진단을 정신신경 의료진이 아닌 배심원의 판정에 맡긴 점을 쟁점으로 삼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앳킨스가 범행당시 18세 미만인 점을 특별히 쟁점화하지 않음으로써 소년범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Johnson, Blume, & Van Winkle, 2022).

##### (2) 소년범에 대한 사형 판결

연방대법원은 2005년 3월 1일 로퍼 대 시몬스 판결(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에서 범행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피고 크리스토퍼 시몬스(Christopher Simmons)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에 대해 미주리주 대법원이 이를 취소한 판결은 미 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부합한다며 미주리주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sup>5)</sup> 즉, 시몬스에 대한 사형 판결은 수정헌법 제8조의 잔혹한 형벌 금지 규정과 미국 시민권 및 생명권 등의 박탈 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여러 주 정부에서 소년범 사형을 폐지했고, 이를 다시 복원한 주 정부

4) Daryl Renard Atkins는 1996년 8월에 공범과 함께 납치, 무장 강도, 사형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버지니아주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18세이었던 공범과 앳킨스는 둘 다 상대방이 총을 발사했다고 증언했다. 공범의 증언은 배심원단에 의해 인정되었지만, 앳킨스의 주장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앳킨스의 변호사는 앳킨스의 의료기록, 학교성적 등을 통해 그의 IQ가 59에 불과한 정신장애자라고 주장하였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정신장애자라도 살인 등에 대한 형벌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supreme.justia, Atkins v. Virginia, 536 US 304(2002),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36/304/> 2024.2.20., 검색.

5) 17세인 Christopher Simmons는 1993년 9월에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18세가 된 후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시몬스는 항소했지만 주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 후 Atkins v. Virginia, 536 US 304 사건에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형 판결이 수정헌법 제8조 및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자, 시몬스 측은 이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17세였던 시몬스도 정신장애에 준할 정도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며, 미주리주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미주리주 대법원은 시몬스의 사형 선고를 취소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미주리주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supreme.justia, 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43/551/> 2024.2.20., 검색.





는 없고,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주 정부도 18세 미만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미주리주 대법원의 사형 선고 취소는 정신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의 발달적 특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 것이라며 이를 명확히 지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Austin, 2021).

### (3) 비살인 소년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

연방대법원은 2010년 5월 17일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판결(Graham v. Florida, 560 U.S. 48 (2010))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 기회 없는 종신형은 수정헌법 제8조의 이념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supreme.justia, Graham v. Florida, 560 U.S. 48 (2010)).

16세의 테런스 그레이엄(Terrance Graham)은 2003년 7월에 강도 혐의 등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플로리다주 법은 소년범을 성인법원 혹은 소년법원에의 기소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두었다(Fla. Stat. §985.227(1)(b) (2003)). 그레이엄은 성인법원에 기소되었고, 유죄인정(Plea agreement)을 통해 구금형 1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가 6개월간 구금 후 석방되었다. 석방 후 6개월이 안 된 시점인 2004년 12월에 17세인 그레이엄은 다시 강도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19세가 된 그레이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이는 최종적으로 주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다. 당시 플로리다주는 가석방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레이엄은 플로리다주지사의 사면이 있어야만 석방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살인이 아닌 사건으로 행위 당시 17세인 소년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 것은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미국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없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위법 행위에 따라 차등화되고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그레이엄이 16세 때 행한 강도 사건 당시 소년범인 그레이엄을 성인법원에 기소함으로써 소년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플로리다주 법은 비록 5세라도 검사의 재량에 따라 성인법원에 기소가 가능할 수 있다. 소년범을 성인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8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해 무관용적인 플로리다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Johnson, Blume, & Van Winkle, 2022).

### (4) 살인 소년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

연방대법원은 2012년 6월 25일 밀러 대 앨라배마 판결(Miller v. Alabama, 132 S. Ct. 2455 (2012))에서 소년 살인범에게 자동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했다.<sup>6)</sup>

그런데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어 앞서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판결(Graham v. Florida, 560 U.S. 48 (2010))과는 결을 달리한다.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판결의 경우 살인사건이 아니었지만, 밀러 대 앨라배마 판결은 살인사건이라는 차이가 있다. 연방대법원 역시 모든 소년범에 대한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런 차이점을 반영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청소년의 발달 정도를 고려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2013년 3월 11일 제107차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소년범의 성인법원에의 기소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사형 선고 등은 인권침해라며 미국의 소년형사사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UN Human Rights Committee, 2013, 9).

## 2. 소년범 개인별 발달 상황과 환경의 비교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소년범 개개인의 발달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Cornell, 2020). 즉, 소년범에 대한 개별화된 평

6) 앨라배마 출신의 14세 소년 에반 밀러(Evan Miller)는 친구 콜비 스미스(Colby Smith)와 함께 트레일러에 불을 질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앨라배마 주대법원으로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스미스는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자,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supreme.justia, Miller v. Alabama, 567 U.S. 460 (2012),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67/460>, 2024.2.20., 검색.

가(Individualized assessment) 없이 18세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기회가 없는 종신형에 처하거나, 정신장애에 대한 의학적 판정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등 비인권적인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특히 비행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진단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관용주의라는 위협적 압박을 통하여 청소년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정책은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Austin, 2021).

앞서 미국 소년법원 데이터 아카이브에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표본 대상 중 2000년에 태어난 161,057명 중 12.5%는 소년법원에 기소된 경력이 있지만, 이들 중 63%는 더 이상 범죄경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년법에 대한 개별적 처우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소년법을 거주형 시설(Residential facility)로 배치하여 가족과 분리시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연대적 책임을 부과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가족분리정책(Family separation policy)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년법의 정서적 불안과 불균형적인 영양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유사한 조치가 반복되면 결국 가족과 주변인들로부터 고립됨으로써 가정과 학교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가족분리정책이 흑인, 인디언 및 히스패닉 등 법률적 그리고 사회적 보호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소년법들의 재사회화를 더욱 방해하고, 재범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다(Dragomir, & Tadros, 2020).

나아가 최초 학교총기금지법(1994)이 소년법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 가정이나 아시안 가정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학비를 내야 하는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비중이 높아 학교나 경찰 등의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는 것이다(Swanson, 2020).

### 3. 형사사법 절차상 차별과 불공정한 처우 관행

2019년에 시설처우를 명령받은 소년법의 81%가 소년구치소에, 9%는 장기보안시설에 수용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학교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대이지만, 시설의 운영주체가 달라 교육 프로그램과 그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Belkin, 2020).

나아가 구금 청소년의 인종별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이다. 즉, <그림 2>와 같이 흑인 청소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형사사법 절차상 무관용주의가 흑인 소년법에게 더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9년 미국의 10세~20세 전체 소년인구 중 흑인 비중은 14%에 불과하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흑인 소년법 비중은 41%에 해당한다. 반면에 전체 소년인구 중 백인 비중은 52%이나 교정시설의 백인 소년법 비중은 33% 정도에 불과해 흑인 소년법에 대한 구금처우 비중이 차별적으로 높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흑인 소년법은 재산범죄 45%, 대인범죄 44%이나 백인 소년법



은 재산범죄 32%, 대인범죄 30%로 흑인 소년법들이 형사사법 절차상 법률적 변호 및 기타 관련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흑인 소년법들은 반복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의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상승적 범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구금형이 선고되는 악순환 경로에 빠져드는 것이다(Dragomir, 2020). 한편으로는 흑인 청소년들이 학교총기금지법상 무관용주의가 적용되는 공립학교에 다니는 비중이 높은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Swanson, 2020).

### 4. 소년법의 성인 교정시설에의 수용 문제

소년법을 성인 교정시설에 구금함으로써 이들을 다양한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도 지적된다. 즉, 연방대법원은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판결(2010)에서 범행 당시 16세인 그레이엄을 성인 형사법원에 기소하여 유죄인정(Plea agreement)을 통해 구금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재범죄를 행한 그레이엄을 다시 성인 형사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밀러 대 엘라배마 판결(2012)을 통해 18세 미만 소년법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 등을 통해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미시시피주 등은 기존 18세 미만에 대한 판결에 소급 적용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와이오밍, 플로리다주 등은 18세 미만에 대한 형사법원 기소와 종신형 등의 기존 판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Kirby, 2014).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성인교정시설에 수용된 18세 미만 비행 소년범 비중은 0.5%이다.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이 강화되던 1990년 초기부터 18세 미만 소년범의 성인 교정시설 수용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소년범에 대한 개별적 처우가 이뤄지지 않고, 성인 수용자 및 교도관에 의한 폭행, 성폭력 및 노동력 착취 등의 인권침해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Ahlin, & Hummer, 2019). 특히 과밀수용이 심각한 주정부 교도소의 경우 소년범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학교 교육과정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교정처우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제기된다(Liwanga, 2021).

### 5. 정치적 이념에 따른 소년범 처벌의 편향성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정치적 이념이 소년범 사건 판결시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있다(Armaly, 2020). 엠킨스 대 버지니아 판결(2002), 로퍼 대 시몬스 판결(2005), 그레이엄 대 플로리다 판결(2010) 및 밀러 대 앨라배마(2012)의 판결 등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 형사법원에의 기소, 사형판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수정헌법 제8조 및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대체로 자유주의적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궈낸 결과이다.

그런데 2021년 4월 22일 연방대법원은 존스 대 미시시피 판결(2021)을 통하여 법원이 소년범에 대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때 반드시 영구적인 교정 불가능성(Permanent incorrigibility)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supreme.justia, Jones v. Mississippi, 593 U.S. 18-1259 (2021)). 이에 따라 각 법원은 소년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이 보수주의적인 공화당 성향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됨으로써 파생된 결과로 “암울한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Sinclair, 2023).

## IV. 시사점 및 결론

미국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적 형사정책은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한국 사회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제재가 자칫 비행 청소년을 범죄인화(Criminalization)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특정 인종의 경우 반복적인 소년법원 기소와 재범죄율, 그리고 구금율이 다른 인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시

설 처우 즉, 장기 소년원 보호처분이나 교도소 수용 등의 가족분리 등의 무관용주의 정책은 소년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가족과 분리된 시설처우나 교정시설 등에의 구금처우는 오히려 고립, 단절, 소외를 가져오고 또래 정상집단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결핍되며, 범죄문화에 더욱 노출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셋째, 검사의 선의주의에 따른 가정법원 소년부 혹은 형사법원에로의 기소 등 지나치게 검사의 재량을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18세 미만 범죄소년을 일반 성인법원에 기소하는 것처럼 현행 소년법 제48조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소년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시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다시 소년부에 기소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로 대상 청소년의 분류심사원 수용의 장기화 등의 문제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정숙희, 2018). 넷째, 소년사건을 재판하는 형사법원의 전문성 한계를 들 수 있다. 일반 법원의 판사는 소년의 발달과정과 성인과의 차별성을 고려하기 어렵고,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이는 소년 형사법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문선주, 김윤정, & 서용, 2019).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소년법원 데이터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위비행이나 폭력, 재산, 공공질서 범죄 소년의 소년법원 혹은 형사법원에의 기소와 소년구치소 등의 장기보호시설을 포함한 시설내처우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종은 흑인이고,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며, 대부분 빈곤층이라는 특징을 찾아냈다.

이는 청소년이 일정한 비행적 환경이나 기회, 문화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합리적인 자기통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생들의 또래 친구의 집단 괴롭힘이나 폭력, 따돌림 등은 전형적인 비행 하위문화의 양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 비행 하위문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비행 청소년에 대해 무관용주의적 제재를 반복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소년법 무관용정책이 정점에 달하던 2000년에 구금 소년범이 일평균 108,802명에 달하였다가 2020년에는 25,014명으로 77%정도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소년보호사건은 34%, 소년형사사건은 43% 정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 정책에 필요한 교정시설이나 교도관 인력 등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소년범죄 예방으로의 정책 다이버전이 더 시급하고 합리적이다. 일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중요하다.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의 정당별 구성 비중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처벌 판결례가 달라진다는 비난에 직면한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종두, (2023),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에듀테인먼트연구, 5(3), 19-34.  
 법률신문, "논산 중학생 성폭행범' 구속 기소, 범행 치밀하게 계획해", 2023.11.1., <https://han.gl/rCW49>  
 문선주/김윤정/서용성, (2019),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9(3).  
 정숙희, (2018), '소년형사범의 처분기준의 객관화와 재량통제방안. 저스티스, (167), 178-206.  
 원혜옥, (2022),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35(2), 167-192.  
 한민경, (2022),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인식에의 영향요인-소년사법 실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5(2), 257-284.  
 허경미, (2018), '학교폭력의 무관용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제언. 경찰학논총, 13(2), 223-254.  
 홍태석, (2022), '엄벌화의 길로 들어선 일본 개정 소년법-그 주요내용과 우리의 개정방향. 법이론실무연구, 11(1), 47-76.

■ 외국문헌

Ahlin, E. M., & Hummer, D. (2019), 'Sexual victimization of juveniles incarcerated in jails and prisons: An exploratory study of prevalence and risk factors. Victims & Offenders, 14(7), 793-810.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2014), 'Overcrowding and Overuse of Imprisonmen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Submission to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5.; Skiba, Russell J, "The Failure of Zero Tolerance", Reclaiming Children and Youth, 22.4, 27-33.  
 Armaly, M. T., (2020), 'Who Can Impact the US Supreme Court's Legitimacy?. Justice System Journal, 41(1), 22-36.  
 Austin, N. M., (2021), 'Roper's Unfinished Business: A New Approach to Young Offender Death Penalty Eligibility. Buff. L. Rev., 69, 1195-1235.  
 Belkin, L. D., (2020), 'Challenges with school re-entry for incarcerated youth and inadequacies of collaborative service provision by schools and agencies. Handbook on promoting social justice in education, 2487-2523.  
 Cerrone, (1999), "The Gun-Free Schools Act of 1994: Zero tolerance takes aim at procedural due process", Pace L. Rev, 20, 131-188.  
 Clark, J., & Henry, D. A., (1997), "Three Strikes and You're Out": A Review of State Legislation.  
 Cornell, D. G., (2020), 'Threat assessment as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strategy. Criminology & Public Policy, 19(1), 235-252.  
 Cornell, D. G., Mayer, M. J., & Sulkowski, M. L., (2020), 'History and future of school safety research. School psychology review, 50(2-3), 143-157.  
 Dragomir, R. R., & Tadros, E., (2020), 'Exploring the impacts of racial disparity within the American juvenile justice system. Juvenile and Family Court Journal, 71(2), 61-73.  
 FBI, (1999), 'Columbine High School, <https://han.gl/R7nlw>.  
 Kirby, M., 'juvenile sentencing laws and court decisions after miller v. alabama, <https://han.gl/5nPrJ>.  
 Johnson, S. L., Blume, J. H., & Van Winkle, B., (2022), 'Atkins v. Virginia at Twenty: Still Adaptive Deficits, Still in the Developmental Period. Wash. & Lee J. Civ. Rts. & Soc. Just., 29, 55-117.  
 Liwanga, R. C., & Ibe, P., (2021), 'Transfer of child offenders to adult criminal courts in the USA: An unnecessary exercise, unconstitutional practice, international law violation, or all of the above?. Ga. J. Int'l & Comp. L., 49, 101-128.

Moyer, J. S., Warren, M. R., & King, A. R., (2020), "Our stories are powerful": The use of youth storytelling in policy advocacy to combat the school-to-prison pipeline. Harvard Educational Review, 90(2), 172-194.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2), 'Highlights from the 2020 juvenile residential facility census, <https://han.gl/9QP8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3), <https://han.gl/PVS8b>.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23), 'Juvenile in Correction, <https://han.gl/5bkdN>.  
 Puzzanchera, C., (2022), 'Patterns of Juvenile Court Referrals of Youth Born in 2000, Juvenile Justice Statistics, Puzzanchera, C., Hockenberry, S., & Sickmund, M., (2022), 'Youth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2022 national report, National Center for Juvenile Justice, Pittsburgh, PA.  
 Sinclair, B., (2023), 'How The Supreme Court Changed Juvenile Justice, <https://han.gl/GqmG9>.  
 supreme.justia, 'Atkins v. Virginia, 536 US 304(2002), <https://han.gl/csr39>.  
 supreme.justia, '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 <https://han.gl/uHH78>.  
 supreme.justia, 'Graham v. Florida, 560 U.S. 48 (2010), <https://han.gl/SwSKt>.  
 supreme.justia, 'Miller v. Alabama, 567 U.S. 460 (2012), <https://han.gl/mjNdM>.  
 supreme.justia, 'Jones v. Mississippi, 593 U.S. 18-1259 (2021), <https://han.gl/wRCml>.  
 Swanson, J. W., (2020), 'The color of risk protection orders: gun violence, gun laws, and racial justice. Injury epidemiology, 7(1), 1-6.  
 UN Human Rights Committee, (2013), 'Human Rights Committee Country Report United States Independent Information for the 107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HRC).  
 United States Congress, (1988), 'House Committee on Merchant Marine and Fisheries, Subcommittee on Coast Guard and Navigation, "Zero Tolerance" drug policy and confiscation of property: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Coast Guard and Navigation of the Committee on Merchant Marine and Fisheries (House of Representatives, 100th Congress, 2nd sess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nited State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21), 'National Prisoner Statistics, [United States], 1978-2019.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https://han.gl/54Ufv>.  
 U.S. Supreme Court, in '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 v. Beazer, 440 U.S. 568, 99 S.Ct. 1355, 59 L.Ed.2d 587 (1979).  
 Vossekul, B., Fein, R. A., Reddy, M., Borum, R., & Modzeleski, W., (2002), 'The final report and findings of the Safe School Initiative. Washington, DC: US Secret Service and Department of Education, 29-32.  
 Wolcott, D., & Steven, S., (2017), 'Punishing Serious Juvenile Offenders: Crime, Racial Disparity, and the Incarceration of Adolescents in Adult Prison in Late Nineteenth-and Early Twentieth-Century Pennsylvania 1. In Beyond Empiricism (39-68). Routledge.  
 Woods, L. V., (2021), 'Juvenile Detention Alternatives Initiative, Zero-Tolerance Discipline, and the School-to Prison Pipeline. Journal of Sustainable Social Change, 13(1), 1-14.

■ 기타자료

중앙일보, "나이스! 여학생 2명 집단폭행...가해 10여명 대부분 '촉법소년'", 2023.11.1., <https://han.gl/53BUL>.  
 중앙일보,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2022.11.26., <https://han.gl/Oz2Lv>.  
 조선일보,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하향' 추진... 인권위·청소년단체 반대", 2022.10.27., <https://han.gl/mfl0n>.



2024년 추석 연휴 복무기강 확립



- 추진 배경** 연휴 기간 공직기강 확립 및 수용관리 강화로 교정 사고 예방
- 주요 내용**
- 출·퇴근 시간 엄수, 음주운전·도박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을 빙자한 금품수수 금지
  - 연휴 기간 중 접견 미시행 및 기관 실정에 따라 운동 실시
  - 비상연락 및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 등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현판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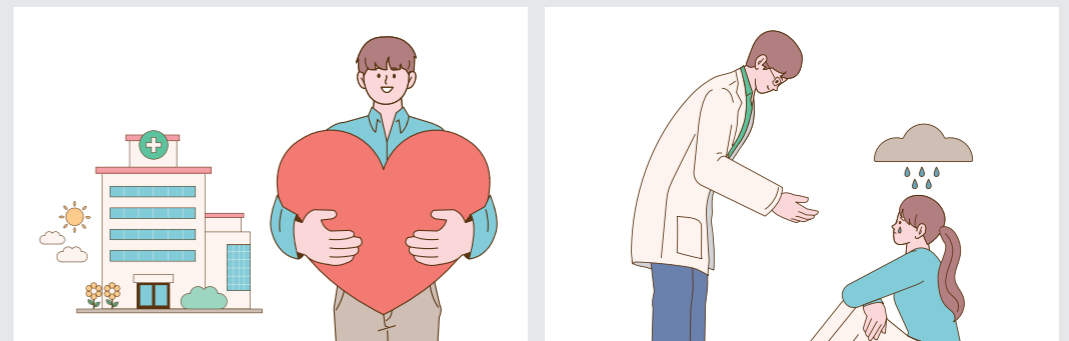
- 일시·장소** 9. 4.(수) 16:00,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 주요 내용**
- 현판식 제막, 기념 촬영 및 장관 말씀
  - 종합상황실 각종 시스템 설명 및 시연 등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일시·장소** 9. 4.(수) 14:00, 법무부 8층 대회의실
- 주요 내용**
- 모범수형자 외부기업 등 통근작업 확대를 통한 실질적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발표 및 질의응답
  - 회의 안건 토의 및 자문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실시



- 대상자** 全 교정공무원(16,000여 명)
- 검사 내용** 우울, 불안, 외상후증후군, 회복탄력성, 직무 자부심 등 전반적인 정서적 안녕감



## [ 서울지방교정청 ]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 제53회 교정작품 전시회 출품작 심사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9월 26일 안양교도소 체육관에서 제 53회 교정작품 전시회 출품작 심사를 개최하여, 올해 출품작 들을 심사했다. 최제영 청장은 이날 직원들의 협력을 당부하 며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 추석맞이 이웃사랑 실천

서울구치소는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녹향원·마리아의 집·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 의 성금을 잇달아 전달하며 추석명절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 섰다. 서울구치소는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해 훈 훈함을 더했다.

### 안양교도소 / 교도 현민준

#### 청소년 마을 축제 참여

안양교도소는 9월 7일 안양시 호계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 관하는 청소년 마을 축제에 참여했다. 안양교도소는 체합 및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고, 이를 통해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계기를 가졌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 추석맞이 사랑 나눔

수원구치소는 9월 12일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복지시설 6곳, 결손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생필품 및

기부금을 전달했다. 수원구치소 직원 일동은 “직원들의 작지 만 따뜻한 마음이 삭막한 교정시설의 담장을 넘어 소외된 이 윗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 다”고 말했다.

###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 교정시설 중사자 결핵예방 교육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9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중사 자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구치소 내 감 염병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 교정협의회 수용자를 위한 빙과 및 기부금 전달

인천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를 위한 빙과 3,000개와 100만 원을 기증했다. 교정협의회장은 “연일 폭염이 지속되 는 날씨에 더위를 이기는 데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고, 추석을 맞아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원했다.” 고 밝혔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이준구

#### 추석맞이 수용자 합동차레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9월 14일 추석을 맞이하여 취업 수형자 등 을 대상으로 소내 대강당에서 “추석맞이 수용자 합동차레” 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취업 수형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합동차레를 지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사 심우현

#### 음주운전 예방 직장교육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9월 9일 대회의실에서 도로교통공 단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음주운전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 했다. 이날 교육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블랙박 스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담아내 경각심을 높였다.

###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 9월 월례회 및 교정사고 방지 포상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9월 9일 소강당에서 월례회 및 교정사고 방지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월례회에서 교정사고를 방지한 유 공 직원들을 포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 보라미봉사단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주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이 9월 11일 가남읍 인근의 농촌 에서 일손 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5명의 수형자들을 포함한 여주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인근 농촌 일손돕기의 일환으로 고추따기 봉사를 실시하며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 사랑의 헌혈 행사 시행

서울남부교도소는 9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헌혈 행사에는 스무 명가량의 직원이 바쁜 일과 중에도 시간을 내 참여했고, 헌혈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 교정동우회 춘천지회 참관 실시

춘천교도소는 9월 24일 교정동우회 춘천지회 채용석 지회 장 등 16명을 초청하여 교정 경험을 교류했다. 이번 참관 은 퇴직한 선배 교도관들이 달라진 현재의 교정시설과 수 용자 처우를 보고, 그들의 값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 해 진행됐다.

### 원주교도소 / 교위 천병훈

#### 스마트폰 사진 촬영 관련 직원 교육

원주교도소는 9월 26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스마트폰 사진 잘 찍기’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원주영상미디어 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촬영기법, 편집

과 보정방법 등 교육을 통해 직원 기본소양을 향상하고자 마 련되었다.

###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강릉교도소는 9월 10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홀로된 여성, 미혼모 등에게 주거 등의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성은모자원 과 마을 노인회 등 강릉 지역 내 소외계층 5곳을 방문하여 직 원들이 모금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영월교도소는 9월 12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 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에 대한 단순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인 수용자와 장애 인 직원을 대할 때의 태도와 관련 규정 등을 인식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9월 25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기관을 방문 하는 민원인들에게 청렴 홍보 전단지 배부 및 홍보했다. 이 번 계기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 서울지방교정청장 현장 방문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이 9월 12일 평택지소 현장을 방문 했다. 이번 방문은 소속기관 직원의 후생 복지 및 근무환경, 수용동 관리 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 은 현황을 보고 받은 후 평택지소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 며 감사함을 표했다.

### 소망교도소 총무과 / 주임교도관 박성호

#### 1박2일 가족사랑캠프 개최

소망교도소는 수용자들의 가족 관계 회복을 통해 재범 없는 사



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9월 5일~6일 1박 2일간 '가족 사랑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6가정이 참여하여 가족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임시 숙소 '카라반'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실질적인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캠프로 진행되었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 대면 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9월 23일 대회의실에서 관리 및 인사 업무 담당자 등 22명을 대상으로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교정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 등을 교육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 교정동우회 선배 초청 강연회 개최

대구교도소는 9월 25일 교정동우회 대구지부 사무국장 이종완 선배님을 모시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정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부산구치소는 9월 4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발달장애 수용자 관리업무를 위한 특성 이해하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부산구치소는 주기적으로 수용자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헌배

##### 수용자 심성변화를 향한 교정협의회회의 노력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 일동은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9월 10일 수용자들에게 사랑의 떡 1,600세트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교정협의회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밝고 건전한 수용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실천

창원교도소는 9월 9일 창원소재지 장애인 생활지원시설 '소망원'을 비롯하여 경로당, 복지시설 등 8곳을 방문하여 위문금 370만 원을 전달했다. 창원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명절마다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위문금을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전달하며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 마약 재활교육실 조성

부산교도소는 9월 11일 마약 재활 통합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위한 전용 교육실 조성 기념식을 가졌다. 전용 교육실 및 상담실 등을 조성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치료의 효과성 증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수용자 인권 및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 실행위원회 개최

포항교도소는 9월 2일 청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 북한 오물풍선 낙하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진주교도소는 진주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물풍선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기관 간 방호역량을 향상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 대구구치소 / 교사 광재원

##### 추석맞이 불우수용자 가족 돕기

대구구치소는 9월 12일 추석을 맞아 불우수용자를 돕기 위해 기부 물품을 제공하고 교정협의회장 조수호 등 13명의 구치소 내 참관을 실시했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교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9월 4일 영양군 '은혜의 집'과 지역사회 결손 가정에 전 직원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 및 제과제빵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 활동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전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사랑의 손길회'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다.

####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 소방 및 긴급대피훈련

안동교도소는 9월 4일 소방 및 긴급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화재로 인해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등의 대체훈련을 실시하였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 소방 훈련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9월 10일 소방 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여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과 협조로 30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영성 소장은 "오늘 훈련을 계기로 전 직원들이 화재를 비롯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

##### 체포·제압술 직원 교육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9월 19일 직원을 대상으로 체포·제압술 교육을 실시했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수용자가 직원 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직원의 역량 강화 및 신체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채원기

#####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를 실시했다. 최우수작에는 김석찬 교위의 "부패는 로그아웃, 청렴은 로그인", 우수작에는 이승훈 교정관의 "부패없는 청렴교정 위풍당당 경북3교"가 선정되었다.

####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 교정협의회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재능기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9월 10일 여성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 재능기부를 했다. 김영숙 교정위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를 실천하여 여성 수용자들이 자존감을 찾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선영

##### 추석맞이 소외된 이웃 방문

경주교도소는 추석을 맞아 직원들의 성금으로 독거노인 등 평소 후원하고 있는 5가정을 방문하여 후원금과 추석 선물을 전달하여 소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은옥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 출소예정 수형자 채용면접 실시

통영구치소는 9월 24일 출소예정 수형자의 채용 사전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채용면접에서는 (주)퍼스트이엔지 등 3개 업체 채용담당자가 참여하여 직접 수형자 간 1대1 면접 및 상담을 하였다.

###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 외부병원 수용자 도주 방지 훈련 실시

밀양구치소는 9월 25일 밀양시 윤병원 주차장에서 수용자 도주 방지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의 훈련은 밀양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이뤘 합동으로 진행된 것으로, 실제 수용자가 도주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여 현실감 있게 훈련하였다.

###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산책로 조성

상주교도소는 9월 2일 청렴한 공직생활을 다짐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청렴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청렴산책로 조성을 기념하는 커팅식을 실시했다. 청렴 상징 공간인 산책로 내에는 청백리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표지판이 마련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거창구치소 / 교도 전용일

####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거창구치소는 9월 25일 '6급 이하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 인식확산 및 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 기록물관리 업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9월 5일 대회의실에서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지방교정청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수용기록 담당자 총 15명이

참석하여 진행한 교육으로, 주요 기록물의 관리 방법을 공유하여 업무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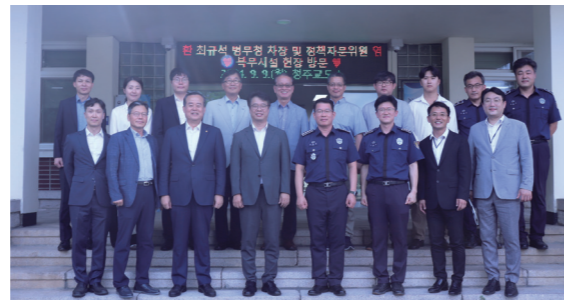
####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대전교도소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심신케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소내 야외쉼터 등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리상담 및 피지컬 케어 등을 실시하였고 커피트럭도 함께 마련하여 직원들의 많은 호응속에서 진행 되었다.

### 청주교도소 / 교사 신동우

#### 최규석 병무청 차장, 대체 복무 현장 방문

병무청 최규석 차장은 9월 9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하여 대체 복무요원의 생활관 등 제반 복무여건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 외부기관 수용자 정기 건강검진 실시

천안교도소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외부기관 수용자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수용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되었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캠페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9월 13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직접 만든 팸플렛과 간식꾸러미를 나눠주며, 추석 연휴 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행사였다. 앞으로도 청주여자교도소는 음주운전 근절과 공무

원 청렴 문화 실천에 기여할 계획이다.



###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 추석 명절 사랑의 손잡기 운동 실시

공주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공주교도소 주변에 있는 불우 이웃을 찾아 위문했다. 불우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전 직원이 마련한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 추석맞이 사랑나눔 운동을 실시했다.

###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충주구치소는 9월 5일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다은 봉사단'은 충주시 산척면에 위치한 '오은셋별원'과 2014년부터 인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 직원 교육 실시

홍성교도소는 9월 3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자살에 대한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고위험자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 추석 맞이 공동생활가정 위문

천안개방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지역 소재 공동생활가정 3곳을 위문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꾸준히 위문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 소외된 이웃 돕기

서산지소는 9월 13일 인근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모든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전달해드렸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 논산지소 총무계 / 교도 전용배

#### 추석 맞이 수용자 격려품 전달식

논산지소에서 9월 12일 수용자 기부품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기부는 2024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논산지소의 교정위원 및 교정협의회 회장, 교화분과 등 각 분과로부터 이루어졌고, 백설기, 돈육 등 다양한 물품이 전달되었다.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 완강기 사용법 교육

광주지방교정청은 9월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하영훈 청장은 "사용법이 어렵지 않은 만큼, 비상시 생명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 행복 나눔 '헌혈 이어가기' 행사 진행

광주교도소는 9월 4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헌혈 행사는 광주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진행되었다.

###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 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사랑의 떡 나눔 행사

전주교도소는 9월 12일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후원 아래 사랑의 떡 기부행사를 진행했다.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정 교화 및 원만한 수용 생활을 위해 떡 1,300명분 약 520만 원 상당을 전주교도소에 기증했다.



###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순천교도소는 9월 1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6곳에 각 50만 원씩 위문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모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마련하여 전달하였다.

###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 운영 실태 점검

광주지방교정청장은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기관 운영 및 직원 복무를 점검하기 위해 목포교도소를 방문하였다. 하영훈 청장은 기관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내·외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현장에서 말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 익산시청 문화관광사업과, 군산교도소 참관

군산교도소는 9월 11일 익산시청 문화관광사업과장 등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국내 유일의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이 관광객들에게 실감 나는 교도소

체험을 제공하고 관광명소로 각광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진행되었다.

### 제주교도소 / 교도 부혁진

#### 추석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제주교도소는 9월 12일~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아가의 집, 창암재활원, 무지개마을 등 지역 관내 사회복지·아동 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제주교도소 전 직원이 결성한 '한라교정봉사회'에서 위문금 300만 원을 모금하여 진행했다.

###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 공직자 양성평등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9월 1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외부 강사 초빙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 최국진 소장은 "이번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더욱 더 향상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 무연분묘 벌초 봉사

해남교도소 총무과장은 지난 9월 2일 추석을 앞두고 해남교도소 신축공사 당시 개장된 유골 70여 기가 매장되어 있는 곳을 찾았다. 이날 해남교도소 총무과장은 벌초 및 합동 다례에 참여하며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였다.



### 정읍교도소 / 교도 박준현

#### 뉴라이프 선교회 기부

정읍교도소는 9월 10일 추석을 맞아 정읍시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2곳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위문금품 등 따뜻함을 전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사랑의 손잡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따뜻한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 모범 공무원

### 수원구치소 교위 김지현



김지현 교위는 24년간 교정 공무원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청렴·성실하게 수행했다. 현재 수원구치소 수용기록과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정기관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수용자 교정 교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부산교도소 교위 안상규



안상규 교위는 2023년 7월부터 부산교도소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평소 방문 민원인 상담 시 수용자의 각종 처우와 교정 관련 등 민원인의 의문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총 6회에 걸쳐 친절 평가 카드를 접수하는 등 민원 서비스 향상 및 부산구치소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했다.

### 청주여자교도소 교도 최시은



최시은 교도는 수용자 독감 예방 접종의 계획수립 등 관련 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환절기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독감을 예방하고,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노인 수용자의 폐렴 감염 및 동반되는 합병증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수용자 사망 등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 해남교도소 교도 오동현



오동현 교도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 및 성실한 복무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 보관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민원인들에게 항상 친절한 자세로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직원들과의 업무 협조시에도 늘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등 공적이 인정되었다.



# 숨은 그림 찾기



## 최대한 집중해야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익숙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물건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뇌 발달과 함께 창의력을 키우기에 좋은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해 보세요.



아래 그림을 찾아보세요!

- 다람쥐
- 종이배
- 고슴도치
- 부엉이
- 여우
- 비구름
- 달팽이
- 우산
- 물조리개
- 찻잔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커피 기프티콘 5천 원권 발송

# 2024 수출 붐업코리아 WEEK

## 2024. 10월 3,4주

